

언론중재

2003년 봄호

특집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의견보호의 법리와 의견의 범위
- 국내판결에 나타난 의견표명의 면책 한계
-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연구논문/제16대 대통령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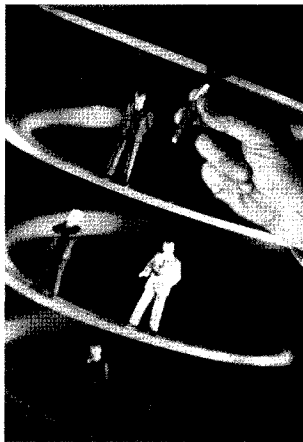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3. 봄

차 례



기간/2003년 봄호 • 제23권 • 제1호/통권86호
인쇄/2003년 3월 25일 • 발행/2003년 3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최 정
인쇄인/이 병 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 편집/태성안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표지디자인/현춘수

특 집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 4 • 의견보호의 법리와 의견의 범위 • 장영수
- 16 • 국내판결에 나타난 의견표명의
면책 한계 • 전태구
- 28 •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이승선

연구논문

- 45 • 제16대 대통령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영목

통계보고

- 60 • 2002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보도와 인권

- 86 •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현황과 과제 • 장아용

위원칼럼

- 92 • 입장이 관점을 만든다 • 윤재운

해외동향

- 94

자 료

- 100 • 언론중재신청사례
- 122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38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2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 158

위원회소식

- 162

중재위원명단

- 164

언론법제관련문헌

- 166

지상중계

- 168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특 집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의견보호의 법리와 의견의 범위

I. 서 : 현대사회의 특성과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의의 및 비중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크다. 현대사회를 정보화사회로 규정하면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을 위한 각종 기술의 발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이 강조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까지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이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힘을 얻는다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은 그 자체로서 인간이 자기를 표현하고 삶을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국민적 공감대는 민주적 정치과정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좁게 이해되던 언론의 자유가 오늘날에는 의사소통의 전체과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등도 이러한 의사소통과 직접 관련된 기본권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단순히 몇 개 기본권의 문제로만 정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의미와 파급효과 크다. 물론 오늘날에는 국가질서의 모든 문제들이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치과정의 정당성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다양한 매체들(특히 대중매체들)의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또 통제되는 국가기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의미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의사소통의 보호범위

장 영 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 ☐ 독일 Frankfurt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 ☐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안양법학회 이사
- ☐ 저서 :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헌법해 - 헌법종론』, 『헌법해 - 기본권론』

의사의 표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요소

와 한계를 규범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고, 경험적인 현실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다. 의사소통의 특정한 부분(예컨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획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 구조를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삶 자체가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 자체가 의사소통이라고 넓게 이해한다면, 의사소통과정을 전체적으로 개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영역으로 나누어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실적인 영역에서의 현실분석과 규범적인 영역에서의 평가 및 방향제시는 일정한 범위에서 상호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엄밀한 구분은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의사소통의 여러 단계들을 나누어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즉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구조를 “의사의 표현 → 의사의 매개 → 의사의 수령”이라는 일정한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그 각각의 단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당연히 의사의 표현이다. 의사의 표현은 - 표현되기 이전 단계에서 개인의 내면적 영역에서 의사를 형성하는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생각하면 -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첫 단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표현되지 않은 의사는 소통될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의 매개와 수령 또한 의사의 표현을 전제로 이를 효율적

으로 전달함으로써 실질화 시킨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알권리 또는 언론매체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비중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의사표현의 자유가 전체 의사소통과정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II. 의사소통의 구조와 의사표현의 자유

1.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그 변화¹⁾

의사소통의 구조 및 그 가운데 중심축이 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매우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내지 의사소통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라고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발적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이를 수렴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국가질서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 널리 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과 같이 정리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인권 가운데서 언론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자유로 분류되며, 이

1) 언론의 자유의 역사적 발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장영수, “언론자유 실현구조에 관한 서설”, 『언론중재』 1994년 여름호, 19-35(19이하)쪽 참조.

른바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인 신앙, 양심 및 사상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근대적 인권의 발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언론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동시에 신앙,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였던 것이다.²⁾

언론의 자유 내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기득권 계층에 의해 강력한 탄압을 받았다. 인쇄소는 허가제가 되었고, 출판물은 사전검열 되었고, 각종 중과세가 이러한 억압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에 대응하여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진리생존설', '사상의 자유시장론' 등을 통해 사상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특히 기존질서에 비판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이러한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을 요구함으로써 근대적 인권으로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근대 초 인권으로 인정되었던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되었으며, 그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 내지는 사전검열제가 부정되어 제한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음을 의미

할 뿐, 발표된 내용에 대해 사후적 통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³⁾

하지만 언론의 자유 내지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적 자유가 다른 자유의 실질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호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었다.⁴⁾

2. 새로운 언론자유와 의사소통의 구조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그것도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었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표현을 통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2) 이러한 언론자유 발달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이 활판인쇄술의 발달과 이에 기초한 출판물의 보급이었다. 출판물의 보급은 소수의 상류층에 국한되어 있던 지적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자유사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자유사상가들은 종래처럼 자신들의 혁신적 사상(특히 기존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사상)이 지배층에 의해 관용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 속에서 그들의 유력한 지지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또한 역으로 이들의 사상은 대중의 구심점이 되어 대중의 결속된 힘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3) 이것은 예컨대 1789년 미국에서 제정된 외국인과 선동방지에 관한 법률(The Alien and Sedition Laws)등에 의하여 기존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난을 계속 금지시키는 근거로 내세워졌다.

4) 그것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종래의 단순한 사전억제의 금지를 넘어서 '권한남용의 이론', '악의의 경향의 이론', '정신적 자유의 우월적 지위의 이론',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이익교량론'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언론자유 발달에 관해서는 E.G.Hudon(박권상/고명식 역), 『근대국가와 언론자유』, 1965; 안용교, "표현의 자유의 원리", 『방산 구병삭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1991, 191-212쪽; 문홍주, 『기본적 인권연구』, 제3판, 1991; 김기영, "미국법 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사법심사", 『인권과 정의』 276(1999.8), 116-12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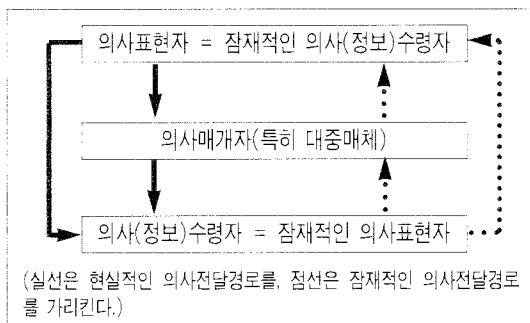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포괄적인 의사소통의 자유로 이해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수정한다. 언론자유가 확보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형성하며,⁵⁾ 자아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언론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포괄적인 의사소통의 자유로 이해된다.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 끌어들여 전파되도록 하는 것도 언론자유の内容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의 상대방도 수동적인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일정한 의사수령자의 권리(정보청구권 내지 알권리)를 갖는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특정인이 의사를 표현하고 또 일정한 매체가 이를 매개 전달하는 단계를 거쳐 다른 특정인에 의하여 그 의사가 수령됨으로써 비로소 완결되는 **의사소통의 전체과정의 보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는 한 순간의 의사표현자가 다음 순간에는 의사수령자가 되기도 하며, 앞서의 의사수령자가 현재의 의사표현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① 의사표현자의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 ② 의사수령자의 정보의 자유 내지 알권리, ③ 신문, 방송, 기타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매체들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언론자유는 의사

표현자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의사수령자의 권리이기도 하며, 나아가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 의사매개자(특히 대중매체)에게도 미치는 기본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3. 의사소통의 중심축으로서의 의사표현의 자유

이처럼 오늘날의 언론자유가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이 아닌 알권리와 매체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 넓게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그 핵심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일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의 표현은 의사소통과정의 첫 단추일 뿐만 아니라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메커니즘은 개인이 세계와 교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세계 속의 존재로서의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성과 감성 등의 능력을 통해 세계와 교감하면서 자신의 인식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5) 개인이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는 행동과 정보라는 두가지 요소가 결정적이다. 행동과 정보라는 두 개념은 각 개념에 있어서 문제되는 개념정의의 곤란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별된다. 그러나 삶의 자율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양자의 구별보다도 양자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모든 행동이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수집도 하나의 행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정보가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해 자신의 능력 자체를 성장시킴으로써 세계 속에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세계와의 교감은 세계를 인식하고, 그 안의 삶을 학습하는 것, 즉 정보를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자신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세계의 모습, 세계의 질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되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고, 관찰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다.

따라서 의사의 표현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의 과정은 그 자체로서 인격형성의 과정이며, 삶의 다양한 모습의 반영이다. 아니 삶 그 자체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의사표현은 개인의 인격의 표현이며,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정신적 자유로 분류하면서 사회경제적 자유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의사의 표현만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표현된 의사의 매개와 수령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은 의사는 매개될 수 없으며, 수령될 수도 없다. 더구나 알권리와 매체의 자유는 표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권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오늘날 알권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의사의 표현 내지 정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도 적지 않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양과 질을 자발적 의사표현의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다. 의사의 표현과 수령은 경제에 있어 생산과 소비의 관계로 이해되기는 곤란한 것이다.

이처럼 의사의 표현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예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⁶⁾

III. 의사표현에 있어서 사실의 진술과 의견의 표명

1. 의사표현의 방식과 내용

의사의 소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언어를 이용한 것이지만, 그밖에도 의사소통의 방법은 다양하다.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예술작품의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소리나 기호, 몸짓을 통해 의사가 전달될 수도 있다. 심지어 영화시중의 미소처럼 눈빛과 미소만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의사소통방법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⁷⁾

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전달

6)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맥락에서 알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장영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언론자유에의 구체화 - 대한민국 언론자유에의 현재와 새로운 과제 -", 『안암법학』 제13집, 2001년 11월, 53-90(78)쪽 참조.

7) 예컨대 일반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학문적인 의사표현이나 예술적 의사표현은 헌법 제22조에 의하여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의사표현의 방식 자체가 다른 중요한 법익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예컨대 국기를 찢는 행위)에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의견의 표명은 개인의 양심 내지
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보호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건 절대적·무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며, 보다 중대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결코 사전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전적인 검열이나 허가를 통해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현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의사표현을 억압함으로써 새로운 의사,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 이 언론자유 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후적인 제한의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법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된다.⁸⁾

2.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표명의 구별과 그 의미

이처럼 의사표현의 자유는 그 표현방식이란 내용을 묻기 이전에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한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듯이 의사표현의 방식이나 내용이 그 보호의 강도 및 방법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누구나 인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된 의사와 불법적인(내지 불법의 의심이 가는) 방법으로 표현된 의사의 보호가 항상 같을 수는 없으며, 진실에 부합되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늘 같게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의 표명은 - 양자 모두 정상적인 의사표현의 방식과 내용에 포섭될 수 있지만 - 달리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참과 거짓을 확인하기 쉽다. 또한 사실 자체의 묘사에 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이 사상이나 양심에 대한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의견의 표명은 개인의 양심 내지 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명예훼손 등에 관한 실정법 규정들에서도 이미 전제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구성요건 자체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정기간행물법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항, 제82조의3 제2항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정법 규정에 따라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이 부과되는 반면에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는 명백한 모욕, 비방, 조롱 등을 제외하고는 두텁게 보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의 구별이 그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 아니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세계관 내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

8) 앞서 언급된 언론자유 의 제한과 관련된 특별한 기준들(정신적 자유의 우월적 지위, 이중기준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은 바로 이와 같은 고려에서 창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에 일정한 의견의 표명이 내포되어 있다고 (또는 역으로 의견표명에 일정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특별한 구조

이처럼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의 표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방법은 매우 미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⁹⁾ 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또는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¹⁰⁾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견의 표명 내지 논평이 문제될 경우에는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¹¹⁾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의견의 표명 자체가 아니라 그

에 전제된 사실을 문제삼을 경우,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구조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을 전제하지 않은 의견표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결국 표명되는 의견의 내용보다 그에 전제되는 사실의 진실성이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의견의 표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거짓된 사실에 기초한 의견표명까지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는 사실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진술의 보호와 의견표명의 보호를 구별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표명을 사실에 대한 진술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이유와 보호의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IV.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범위

1. 의견표명의 의의와 범위

의견의 표명이란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의견표명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나, 단순하고 막연하게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이해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요구

9)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10)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12840 판결.

11)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1356 판결.

사실에 대한 진술과 구별되는 의견표명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의견표명을 의미

된다. 따라서 의견의 표명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사실에 대한 진술과 구별되는 의견표명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의견표명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그럴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등으로 소극적 답변을 한 것이 의견표명으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¹²⁾ 그러나 타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도 (예컨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되는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할 경우에는 의견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의견의 표명은 세 가지 개념 징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사실의 묘사나 진술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 또는 주제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의사소통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표명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밀도 끝도 없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논쟁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의견표명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이와 같은 개념징표를 갖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사실에 대한 진술과는 달리 보다 두터운 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의견표명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자신의 인격을

외부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는 - 물론 사실의 진술 속에 의견표명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의 표명은 곧 인격의 표현이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다.¹³⁾

근대 인권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본권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 내지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의사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의사표현의 중추적 요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물론 의사표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격의 발현**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요청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견표명은 - 그것이 의사표현의 중추적인 요소로 인정되는 만큼 - 동시에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 요소**이며, **사상의 전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는 -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의 진술과는 달리 - 보다 강력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3. 의견표명의 보호에 관한 독일과 미국의 경향

12) 물론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13) 의견표명이 문제되는 주제에 대한 중립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조차도, 그것이 의견표명자의 사상 내지 양심을, 나아가 그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고, 의견표명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경향은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50년대까지 사실의 주장이나 전달(Tatsachenbehauptung oder -mittlung)은 의사의 표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의사와 사실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법학의 전통. 그리고 의사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의견의 표명과 엄격하게 구별하였던 것이다.¹⁴⁾

그러나 사실의 주장이나 전달 자체에 일정한 가치적 판단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과 의사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최근의 경향은 사실의 주장이나 전달도 의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양자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의사의 표현이라고 본 바 있으며,¹⁵⁾ 사실의 주장이나 전달이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를 의사형성으로 보는 견해를 수용하기도 하였다.¹⁶⁾

물론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의 진실성을 기준으로 통제될 수 있지만, 의견표명의 경우에도 모욕적인 문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표현 내지 비판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다.¹⁷⁾

미국의 경우도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내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였던 것이다.¹⁸⁾

이러한 현재의 판례는 과거 영미법의 전통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의견표명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단지 공정한 논평의 법리(fair comment rule)에 의하여 공적 사항에 대한 공정한 비판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1974년 거츠 판결¹⁹⁾에서 의견의 면책을 인정한 이래 공적 사항에 대한 공정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 인간의 사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도 면책될 수 있게 된 것이다.²⁰⁾

14)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계희열, 『헌법학(중)』, 2002, 396쪽 이하; 박용상, 『표현의 자유』, 2002, 157쪽 이하와 165쪽 이하 참조.

15) BVerfGE 61, 1(9).

16) BVerfGE 54, 208(219); 65, 1(41); 85, 1(15f.).

17) 독일 Hamburg고등법원 1990.1.4. 판결 3U 129/89사건, 『언론중재』, 1990년 겨울호, 132-135쪽 참조.

18) 따라서 표현행위를 주제 여하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단지 음란물 등과 같이 특수한 성질을 갖는, 또는 특수한 상황의 표현에 대해서만 내용의 규제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박용상, 『표현의 자유』, 2002, 156쪽 이하 참조.

19)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39 (1974).

20) 이에 관하여는 박용상, 『표현의 자유』, 2002, 162쪽 이하 참조.

사적인 의견도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공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은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V. 공적 문제와 의견표명

1. 사적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과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의 구별

의견의 표명은 - 이상 정리한 것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처럼 - 현대의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는 사실에 대한 진술과의 구별만으로 충분히 해명되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의견의 표명은 가치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인지가 그 표명되는 의견에 대한 보호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된 것처럼 영미에서는 공정논평의 법리에 따라 의견표명의 경우도 공적 사안에 대한 공정한 논평의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오늘날에는 사적 의견표명도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도 - 그

진실성과 공익목적성을 조건으로 - 명예훼손 등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적인 의견도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공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은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²¹⁾ 특히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것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공적 문제의 범위

문제는 공적 사안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 마치 순수한 사실의 진술과 일정한 의견 내지 가치평가를 내포하고 있는 사실의 진술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공적 사안의 이론, 공적 인물의 이론 등이 발전되었고, 그에 따라 공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넓게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문제에 대한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는 면책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의 한계선이 어디인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단순히 공적 활동

21)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과 사생활²²⁾이라는 기준으로 공적 사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곤란하다.²³⁾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적 사안인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판단되어야 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²⁴⁾에서 나타나듯이 ① 문제되는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인지 아닌지, ② 문제되는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③ 문제되는 표현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표현자가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²⁵⁾ 표현자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표현자와 그 대상자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3. 공적 문제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방법과 범위

공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특별히 보호하

는 것은 공적 사안과 사적 사안의 성질상의 차이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적 사안, 즉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인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에 이를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인격발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최대한 인정되어야 하고, 사생활에 간섭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반면에 공적 사안은 특정 개인의 사적 생활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안, 즉 다수의 공동체구성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보호보다는 공적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유가 더욱 중요시되고, 이에 기여하는 각종 표현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넓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일반적 태도는 사실에 대한 진술의 문제와 의견표명의 문제를 구별하는 가운데, 공적 사안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로

22) 사생활에 관하여는 장영수, 『기본권론』, 2003, 286쪽 이하 참조.

23) 예컨대 공적 인물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도 그것이 그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공적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이라면 공적 사안으로 취급될 수 없을 것이다.

24) 각주 21의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25) “일정한 입장에 있는 인물에 관한 행위가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인바, 잡지발행인이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변호사로서의 분분을 망각한 악덕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발행인으로서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잡지에 이 수기를 게재하여 반포하였다면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잡지발행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의견의 표명을 막는것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며, 결국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것

취급하는 것이었다. 즉 의견의 표명은 그 자체로서 거짓된 사실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것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된다는 증명을 통해 면책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옳다. 하지만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의견의 표명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도식적 설명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어떠한 의견의 표명이 모욕이나 조롱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표현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인을 희화화(戲畵化)한 캐리캐처 등도 일종의 의사표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과연 그러한 표현물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 : 의사소통의 구조에 비추어 본 의견표명의 실질적 보호의 방향

오늘날 의사소통 및 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 특히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면서 대두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충분히 해명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비록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이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양자의 구별 자체부터도 결코 간단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표명의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의견표명 및 이를

포함한 의사소통의 전체적 구조를 건전하게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이를 통한 자기실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판례에서 의사표명의 보호문제는 사실에 대한 진술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간단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견의 표명이 사실에 대한 진술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의견표명의 자유를 통해서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막는 것은 곧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며, 결국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자유의 억압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반대할 수 있는 자유이며,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곧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을 통해서만 구체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견표명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의견표명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인 절대적 자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모욕, 조롱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조차도 의견표명의 자유가 갖는 의미가 고려되는 가운데 내려져야 하며, 이에 따라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은 더욱 강력한 보호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의견표명의 보호가 자체목적은 결코 아니지만,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 삶과 국가의 민주적 정치과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

특 집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국내판결에 나타난 의견표명의 면책 한계

전 태 구
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부의 회무 변호사

I. 서론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정치체제라 할 것이므로, 여론 형성의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자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래 목적 내지는 고전적인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언론·출판의 자유는 역시 공적 사안에 관한 의견표명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실적 주장의 공표행위의 보장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보장의 정도도 의견표명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이나 방송법 제91조 제1항이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와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이나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실정법의 태도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과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는가?

미국에서는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판결(1990)¹⁾ 이래 의견특권론이 부인되고 있고, 우리 대법원 역시 의견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그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여, 의견표명에 의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²⁾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을 전제하지 아니한 의견이나 논평의 표명

1) 위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1997, pp471-472 참조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은 혼하지 않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분 자체가 명확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에 있어서 의견표명이라고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원은 어떠한 기준 하에 의견표명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개개의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의견표명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1. 의견표명의 위법성 판단기준

가. 대법원은 1999. 2. 29. 선고 98다31356 판결 및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을 통해 의견 또는 논평 표명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하고 있다. 앞의 판결은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위법성 판단의 특수성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 뒤의 판결은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의견표명의 위법성 판단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나. 대법원은 1999. 2. 29. 선고 98다31356 판결을 통하여 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뒤, ②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고, 의견 또는 논평이 공공의 이해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견 또는 논

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③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④ 사실과 의견 또는 논평의 구별 및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 지의 구별기준으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및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을 통해, ① 표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그 표현행위가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②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하며, ③ 특히 표현행위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개연성이 있는 한 의혹이나 의문의 제기가 가능하고,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하여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

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도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공적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할 수 있되, ④ 아무리 공적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지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판결에 나타난 개별적 사안의 검토

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

(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는 그 공적 존재가 가진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피고가 원고의 투쟁을 “정권타도투쟁”,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그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이라고 표현한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위법성 판단의 법리를 실시하면서, 위 기사 중 원고의 투쟁을 “체제와 국가전복을 궁극목적”으로 한다면, 그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제와 국가전복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표현이고, (중략) (대검발표문, 서울신문 각 기사, 원고의 집담농성이나 시위현장에서 수집된 유인물의 각 기재내용 등은) 원고의 강령 등에 나타난 공식적인 이념과는 같지 않고 하더라도, 원고가 벌인 총파업투쟁의 양태 및 강도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체제를 유지 수호하려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고의 현실투쟁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존중, 유지하려는 태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정치투쟁에 뛰어 들으로써 정치적 논평을 자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이 부분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3)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피고가 1998. 3월호에 “빨갱이는 선으로, 경찰

이념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는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선불리 불법행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목 아래 1994. 1. 28. KBS 1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극장 '인물발굴 2. 대통령에 도전한다- 최능진 수사국장'을 제작한 원고를 주사파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방의 대상이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나 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행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그 방영 당시로 보아 진보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앞에서 본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 논쟁에 있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위 프로그램의 내용에 나타난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

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 2002. 6. 19. 선고 2001가합48472 판결(원고 항소)

피고가 원고의 소액주주운동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노동 및 시민운동가들에 의한 기업통제다"라는 발언을 한 후,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피고의 회원들에게 "원고의 소액주주운동의 목적은 민에 의한 자본의 통제",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은 그 성공한 때가 바로 그 운동을 중지해야 하는 그리고 바로 본색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에서 실시된 법리를 일반론으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간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소액주주운동 및 원고의 활동 방향에 대한 견해('소액주주운동은 자본을 통제하는 민의 활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옹호운동으로의 성격이 주된 것으로 될 때 본질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등)가 이와 같고, 위 부분의 내용이 '소액주주운동'의 목적 내지 의도 및 원고의 정치적 이념 내지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성질상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원고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온 단체로서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고, 소액주주운동도 공적인 관심사로 된 문제로서 그것이 보다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피고는 우익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 보통인은 이를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사회적 저명인사의 행적 등에 관한 의견 또는 논평표명

(1)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사회적 저명인사의 행적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견 또는 논평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그 전제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나 8566 판결(상고)

전 국무총리이자 전국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던 원고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내 이력서에 일제 말 학도병이었고 일본군 소위였다는 대목은 쓰지 않았어요. (중략) 아무튼 8월 15일 나는 소대를 이끌고 상하이 양쯔강 건너편 남통이라는 곳에서 팔로군 1개 사단과 맞닥뜨렸는데 절대적인 수적 열세 때문에 완전히 포위됐어요. 이젠 모두 죽었구나 하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이관사관인 기분으로 칼을 휘두르며 냅다 돌파했는데 다행히 살아남았어요”라는 고백을 하였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피고는 “독립군과 싸운 경력을 가진 분”, “최소한 전범들이 다 자기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용서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안해요”라는 전국대 교수 및 일부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과 “친일행각”, “국무총리와 대하총장을 두루 거친 사회지도층 인사의 친일 고백에서 비롯된 전국대 분규는 이사장 사퇴를 둘러싸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아나운서, 기자의 멘트를 방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고 전범이거나 전범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행위를 친일행각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원고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것을 친일고백이라고 표현하여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친일행위라고 고백하였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줌으로써 저명인사인 원고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친일행각”, “친일고백”, “전범”이라는 표현은 의견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 원고가 일본군 장교출신이라는 점과 독립군이 편입된 팔로군과 전투함으로써 독립군과 싸웠다는 점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부분과 원고가 전범이거나 전범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표현된 부분은 이를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방송이 이루어진 때는 원고에 대한 퇴진 운동이 시작

역사적 사실의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연구서적, 논문 등을 기초하여 의견 또는 논평이 이루어진 경우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어

된 지 한 달 정도 시점으로 그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과연 독립군이 포함된 팔로군과 싸운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학술적 자료를 조사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피고가 원고를 1회 방문하였다가 외출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뷰를 하지 못한 후 바로 원고에 대한 인터뷰를 포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부분과 원고가 전범이거나 전범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을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배척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나 25754 판결(상고)

검사이었던 원고는 피고가 1999. 3. 6. 및 3. 2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과 ‘보복수사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전과조회만 하였으면 조모 씨가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를 구금까지 하면서도 전과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처벌받아 형이 확정된 조모 씨를 또다시 기소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종기소는 명백히 검사인 원고가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모 씨가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검찰은 사과능력 오히려 조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은 ‘불법감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원고가 조모 씨가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을 알지 못한 채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씨를 긴급체포하여 구금한 것을 불법감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방송에서 불법감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미 처벌받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구금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 구금이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법조인이 아닌 기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이종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비록 이종기소가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전과확인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조씨를 기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부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전제사실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다만 조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부분은 아래 사.(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

(1) 역사적 사실의 경우 탐구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진실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연구서적, 논문 등을 기초하여 의견 또는 논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피고가 “4·3 계엄령은 불법”, “이승만 정권 - 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되었고,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이승만의 유족은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기사 중 계엄령의 적법성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지만,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계엄법이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가 표명한 의견부분은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다만 위 기사 중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승만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피고가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통해, 망 김창룡이 김구 암살의 배후 세력인 것처럼 묘사하자, 망 김창룡의 유족이 망 김창룡의 명예 및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

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이 사건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이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김창룡이 암살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다는 점, 안두희 스스로도 1992년 수차에 걸쳐 김창룡이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김창룡 본인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관련자들도 사망하여 백범 암살사건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 2000. 9. 20. 선고 99가합102724 판결(확정)

피고가 ‘4·3 사태’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민병대라 할 수 있는 서북청년단 등에 의해 주민의 10분의 1이 넘는 3만명이나 학살당하였다’고 하면서 제주 4·3 사건 당시 양민을 학살한 주체로 서북청년단을 적시하고, 위 사건을 1572. 8. 24의 카톨릭 교도에 의한 개신교도 학살사건인 이른바 ‘바르톨로뮤 대학살’에 비유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서북청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 내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또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서적, 논문 또는 그

종교적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도의 보장을 받아

사건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과 같은 제한적 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자료에 기초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적시된 사실을 평가할 때 그 믿음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비록 피고가 기사 작성의 토대로 삼았다는 자료만으로 바로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인정은 과도한 억측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논평기사인 점, 그 전제되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점, 피고가 판단근거로 삼은 자료에 상당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종교적 비판행위

(1) 종교적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우리 대법원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가 종교적 대상과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의견 또는 논평의 위법성 판단과는 달리 종합적인 비교 형량에 의한 위법성 판단방법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목사 또는 장로인 피고들이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기도원이 있어서 교인들의 신앙 및 가정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니 출입을 통제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를 마귀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을 설교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 위 기도원에 피고들의 신앙차원에서 볼 때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것인 점, 피고들의 비판으로 원고는 주로 그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등에 피고들의 교리상으로 볼 때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받은 것이어서 그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35 판결

피고 교단이 그 산하단체인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인 원고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총회보고서 및 상담소 사례집에 게재하

여 피고 교단 산하에 배포하자. 원고가 피고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종교적 표현행위에 관한 위 법리를 실시한 후, “비록 공표내용 중에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 아니라 피고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마. 만평을 통한 풍자 또는 은유

(1) 아래의 판결은, 만평의 경우 그 장르의 성격상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풍자적인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만평이 독자들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사실적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만평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피고가 만평을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원고 등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게재하자. 원고는 외환위기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하고 있거나 도피를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한 두 컷의 그림과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을 통해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데에는 작가의 게재동기, 사용된 풍자나 은유기법,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소재가 된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사건 각 만평의 장면은 원고 등이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을 공방 출국장을 빌려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이나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는 의견표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풍자의 기법이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위 사건의 1심 판결³⁾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바. 기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혹”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3) 서울지방법원 1998. 8. 12. 선고 98가합15397판결 참조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해

(1)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그 개연성이 있는 한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 그러나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의혹 제기는 어떠한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두 판결을 통해 살펴본다.

(2) 서울고등법원 2001. 4. 19. 선고 2000나9859 판결(상고)

피고가 1999. 7. 31.자 조선일보 서울지역 가판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조폐공사 과업유도 사건 수사과정 중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강희복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불법 감청을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감청 사실을 은폐하려는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게재하자, 원고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사실은 비록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의혹'이라는 표현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터잡은 것이거나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서울지방법원 2001. 7. 25. 선고 2000가합51563 판결(확정)

피고가 2000. 1. 6.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웃돈 3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절박한 상태의 환자 부모들에게 정해진 치료비 외에 다른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웃돈을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의혹 내지 의문의 제기를 제한하고 확정적인 사실 보도만을 요구한다면 극단적으로 어떤 사안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아무런 보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의 제기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하며, 또한 언론기관으로서 그 상반되는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정당한 의혹 내지 의문제기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의 제기가 단순히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강조하는 등으로 그 상반되는 사실을 암시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혹제기는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진실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과 대등 또는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의혹 내지 의문의 제기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이다.

사.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1) 특정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하거나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특정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발언내용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9892 판결

피고 박홍이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농성사태가 북한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 중앙일보가 이를 그대로 보도하자, 한국통신 노조원들은 피고 박홍과 피고 중앙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 박홍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피고 중앙일보가 원고들이 북한의 조정을 받아 정당과 사찰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 박홍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특정인의 발언을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경우, 특정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에는 언론기관의 명예훼손 책임은 부정된다.

(3) 서울고등법원 2001. 7. 26. 선고 2000나 25747 판결

이 사건과 관련하여⁴⁾, 법원은 “조모 씨의 인터뷰를 방영한 프로그램 방송의 제목으로 ‘한심한 검찰’과 중간에 덧붙인 조모 씨를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는 설명, 끝에 부가한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중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설명 등과 조모 씨의 진술과 상반되는 원고나 참여계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기자의 설명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만을 편집하여 방송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모 씨에 대한 인터뷰 부분에 대한 방영은 조모 씨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들이 조모 씨의 인터뷰를 방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인터뷰 내용인) 사실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표현행위와 사실적시에 의한 표현행위는 달리 취급되고 있으나, 의견 또는 논평에 해

4) 사실관계는 위 2.나.(3)항 참조

의견 또는 논평이 전제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의 대상이 공적 존재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면책의 범위가 확장

당하는 표현행위라 하여 그 자체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순수의견의 경우 그것이 모욕이나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점에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은 그 표현행위가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 대법원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및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을 들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대법원이 들고 있는 기준 자체가 표현행위에 사용된 언어 자체의 문언적 의미 뿐 아니라 그 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행위가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를 확립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개개의 사안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의견 또는 논평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라는 일원적인 기준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에 덧붙여 2000다37524, 37531 판결을 통하여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의견 또는 논평이 전제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그 표현의 대상이 공적인 존재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면책의 범위가 그만큼 확장되며, 특히 공적 존재의 정치이념에 대해서는 개연성만을 가지고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실 증명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의 입증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의견표명은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그 표현이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언론의 자유의 폭이 대폭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특 집

의견표명의 자유와
명예훼손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I. 서 론

1998년 8월 한 신문에 게재된 한총련 명의의 의견광고에 대한 “수사”에 나서 비난을 산 바 있는 검찰은 2002년 10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광고주와 신문사의 광고국장을 “기소”했다. 광고국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¹⁾ 2003년 1월 2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의견광고를 통해 한 단체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²⁾ 10년 전에도 의견광고를 게재해 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최명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백만원이 “선고”되었

이 승 선

복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조.
동 대학원 석·박사

□ 저술: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종사자 책임 연구”,
“광고와 인격권의 갈등에 관한 법적 판단의 특성 연구: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 법리의 문제점 고찰: 방영금지처분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반론권 행사에 있어서 전략적 회피와 역이용의 문제점” 외 다수

1) 서울형사지방법원 2002.12.27. 선고 2002고합1198.

2) 1998년 8월 11일자 한겨레신문 14면에 게재된 한총련 명의의 의견광고는 ‘김대중 정권의 탄압을 뚫고 한총련은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정치·사회·통일 분야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과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총련 광고는 그 자체가 이적표현물이기 때문에 한겨레의 광고계좌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이적단체 편의제공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미디어오늘, 1998.8.26, 159호 7면). : 출판업을 하고 있는 김수복 씨는 2002년 2월 28일 한겨레신문에 노무현 당시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마보, 그를 믿습니다’란 의견광고를 게재했고 중앙선관위는 한겨레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의견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김수복 씨와 한겨레신문 고영재 광고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기자협회보, 2002.10.30, 1163호 2면). 광고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서울지법 형사23부 2002.12.27. 선고 2002고합1198). : 지만원 씨가 대표로 있는 시스템사회운동본부는 동아일보 2002년 8월 16일자와 문화일보 8월 19일자 각 2면에 5단으로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란 제목의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는 ‘좌익세력들이 불을 당기면 광주사태의 확대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판결문에서 ‘5·18정문화 등을 통해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관련 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 2002.8.22, 제356호: 기자협회보, 2002.9.11, 1156호 7면; 중앙일보, 2003.1.29 7면).

의견광고는 일반국민이 손쉽게 접근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공공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

다.³⁾ 의견광고 게재에 따른 민사상의 분쟁도 끊이지 않아 명예나 신용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수 차례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⁴⁾

위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견광고의 핵심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의 표명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액세스권의 하나로 출발한 의견광고는 반론권, 신문투고, 방송참여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등과 더불어 일반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강력한 공공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박창희, 2002: 73-75).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맞게 의견광고의 자유를 광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료로 광고료를 지불하고 신문의 지면이나 방송의 시간을 구매하는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의 언론자유 보호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의견광고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언론소송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광고소

송의 특성을 '포괄적' 이면서도 '집약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법적 문제가 포괄적이라고 함은 의견광고를 게재한 대가로 광고주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으며 의견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권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등 법적인 제재의 범위가 매우 광범하게 걸쳐 있다는 점에서다. 집약적이라 함은 의견광고 자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명료하게 의견을 '적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광고게재로 인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의견만을 피력하는 의견광고의 게재가 드물고 현재 한국의 법원은 신문사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사실과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 점은 오히려 의견광고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⁵⁾

자유로운 의사표출 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이나 불만 등을 가감 없이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

3) 파스티르르는 1989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여 회에 걸쳐 중앙일간지 등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반박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파스티르르에 대한 형사재판은 1심(춘천지법 1991.2.26 선고 90고단108판결)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2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3035판결)은 원심(춘천지법 1992.10.1. 선고 91노193판결)의 양형을 문제삼아 원심의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환송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우유산업에 기여한 점과 광고의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점,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감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여 양형을 줄였다(김수연, 1999: 이승선, 2002).

4) 서울고법 1994.1.11.판결 93나6210; 대법원 1996.4.12.판결 93다40614, 40621; 이승선, 2002: 198-201.

5) 20여 년 전 한국사회에서 언론소송이나 광고소송이 드물었던 시절, 오백섭은 의견광고와 사실광고의 애매한 경계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의견광고는 일반상품광고와 그 내용상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나타난 광고카피에서 양자를 정확히 구분해내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석유·전기, 혹은 주류 등과 같은 상품광고는 겉으로 보기에 냉장고·세탁기·음료수 등의 광고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나 상품이 갖는 공공성이나 이를 둘러싼 논쟁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전자는 다른 광고에 비해 편향된 의견이나 주장을 내포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이런 상품의 광고카피에서 '사실의 진술'과 '의견의 개진'을 구분해 내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오백섭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 의견의 개진이 전혀 없는 가치중립적인 광고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오백섭, 1984: 20).

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의견광고이고 이런 점에서 순기능적인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견광고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는 논란의 핵심적인 대상이다(이구현, 2001: 115).

이 글에서는 의견광고 게재로 인한 법적 문제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첫째, 의견광고의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특성에 비취볼 때, 의견광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둘째, 접근권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견광고의 게재에 대해 매체사는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의견광고의 게재여부와 게재내용에 대해 매체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매체사의 고유한 편집권 행사로 볼 수 있는가? 셋째, 의견광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외국의 판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의견광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와 매체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한국의 관련 판례들에 나타난 특성은 무엇인가?

II. 의견광고의 특성과 편집권

1. 의견광고의 특성과 쟁점

최근의 일부 문헌들은 한국에서 의견광고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찍이 김동철은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의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문제 등에 대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독자나 시청자의 이

해와 공감을 얻어 광고주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여론·행동·태도를 형성하려는 광고'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동철, 1983: 63). 비슷한 시기에 오택섭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회복의 한 방법으로 의견광고의 효용을 설파한 바 있다. 즉, 언론이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할 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해자적인 신문, 방송의 광고지면·시간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힘으로써 명예회복을 꾀하는 것인 바, 이런 광고를 의견광고 또는 쟁점광고라고 규정하였다(오택섭, 1984: 19).

박종렬(1986: 12)은 의견광고를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정치·경제·사회·종교·국제문제 등에 대하여 단체나 기업,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의 유료광고'라고 정의한다. 최영과 김춘식(최영·김춘식, 1998: 354-355)의 연구에서도 의견광고를 '특정한 기업체나 비영리조직체 그리고 개인이 일반 공중 및 이해관계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문제나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특수한 형태의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최경득(2001)과 최진영(2001) 역시 '자신의 주장과 이해 관계의 관철을 위하여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광고의 한 형태'로 의견광고를 파악하고 있다.

의견광고란 문자 그대로 '서로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특수한 광고활동 중의 하나'이다. 광고를 통해 공중들의 정서를 움직여보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Culter and Muehling, 1989: 40, 1991: 49).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

의견광고는 쟁점관련 정보를 전달할 시기와 매체를 통제할 수 있고 광고 게재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민사부는 의견광고를 '일반적으로 광고 제작자의 주의·주장·정견을 광고의 형태로 선전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清水英夫, 1979: 211).

의견광고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 혹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의견광고는 거의 대부분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견광고의 스폰서는 정부, 사회단체, 기업, 개인, 종교기관 등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하다는 점이다. 셋째, 의견광고는 유료로 신문지면이나 방송시간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PR과 구별되며 유료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품광고와도 다르다. 넷째, 소구대상 역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광고는 쟁점관련 정보를 전달할 시기와 매체를 통제할 수 있고 광고게재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보호원과 파스트리 간의 의견광고 공방이 언론매체를 통해 뉴스로 재생산된 경우, 혹은 시스템사회운동본부의 의견광고가 사회적 쟁점을 촉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견광고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의견광고의 이용에는 거액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권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공공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진영과 부담 능력이 없는 진영의 사상적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김동철, 1983: 73).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의견광고는 정부, 대기업, 대규모 노동조합 또는 대형 정당에 점유하고 있는 바, 결국 재력이나 조직력이 있는 자만이 의견광고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던진다(유일상, 1992a: 22).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재정형편이 풍부한 집단만이 의견광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만이 의견광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증대하게 되는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최영·김춘식, 1998: 377).

둘째, 기업이 게재하는 의견광고보다는 비영리적 단체의 의견광고 활용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거대 기업광고주의 이익과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의견광고의 게재를 매체사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⁶⁾ 매체사별로 뚜렷한 기준을 적용해 의견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1997년 한겨레신문에 게재하기로 했던 무역협회노조의 의견광고가 주요 광고주인 LG그룹의 로비로 빠진 사례, 2000년 5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의 의견광고를 신기로 했다가 파기한 사례, 2001년 10월 동아일보 초판에 실린 SK비판 의견광고가 배달판에서 빠진 사례 등에서 해당 신문사들이 거대 광고주들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

6) 실제로 한국의 신문에 게재된 의견광고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견광고의 주요 스폰서는 비영리조직체로서(78.9%) 특정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입장 및 관점을 표명하는 광고가 대부분(86.8%)을 차지하였다(최영·김춘식, 1998).

다.⁷⁾ 매체사의 자의적인 광고활동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셋째, 의견광고를 어떤 근거에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의견광고 게재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법적인' 문제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광고도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상업광고는 궁극적으로 광고주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방적 주장이므로 경우에 따라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같은 반열에 세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규제만 한다면 표현자유 위축은 물론이고 나아가 광고의 경제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김옥조, 2001: 454). 즉 종전에 광고는 경제적 활동으로 취급되어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조항에 의해서만 보호될 뿐,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취급이었다. 그러나 광고 역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표현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Zuckman et al., 1988: 350-352; 박용상, 2002: 491-492).

의견광고물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조항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헌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은 의견광고를 정치적 주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스폰서는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헌법 보호

의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필요조건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의견광고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지한다(최영·김춘식, 1998: 378). 뉴욕타임즈지의 1961년 사설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신문의 편집 방침과 공중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어떠한 의견광고에 대해서도 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선언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박종렬, 1997: 340-341). 실제 신문에서 대가가 지불되는 의견광고도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연방대법원의 1964년 뉴욕타임즈 사건이었다(박용상, 2002: 493).⁸⁾

반면, 의견광고에 대한 사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비판론자들은 의견광고의 스폰서가 기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균형된 시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견광고를 상업적 주장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의견광고의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광고와 마찬가지로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최영·김춘식, 1998: 378).

2. 액세스권으로서 의견광고 게재와 편집권

1947년 출판된 '허친스 보고서'는 언론자유 중요성과 위기를 동시에 다뤘다. 보고서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필

7) 미디어오늘, 1997.3. 3., 87호 11면; 미디어오늘, 2000. 5. 25., 244호 3면; 미디어오늘, 2001. 11. 1., 315호 1면.

8) 연방대법원은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지원과 남부지역 자유를 위한 투쟁위원회'가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그들의 들끓는 목소리를 들으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편집부문의 기사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그 광고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비판인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박용상, 2002: 493).

언론종사자가 아니거나 언론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액세스권으로서의 의견광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

수 불가결하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자유가 확보될 수 없는 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한다면 이미 자유로운 사회가 시작된 것이고 자유의 신장을 위한 수단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표현은 여러 '자유'들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것이어서 이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들을 증진시키고 보호한다는 것이다(언론자유위원회, 2001: 30-31).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불행히도 자유롭고 공개적인 표현의 권리는 초기의 모습을 잃고 언론 사주와 경영진의 자유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였다. 다양한 뉴스와 의견의 제공이 소수의 거대 언론매체에 집중되면서 언론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언론이 자신의 지혜와 의견들에 배타적이 될수록 언론은 다른 사람들의 발언 기회와 언론에 기여하는 공중의 목소리를 빼앗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단지 소수에게만 이용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수단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수에 의해서만 사용될 때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소수의 자유는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언론자유위원회, 2001: 25-46).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 이른바 '사상의 시장'론이 위협에 빠졌음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이 배런(Jerome A. Barron)에 의해 제시되었다. 배런은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단 한 개의 신문만을 소유하게 되고 경제력의 차이가 사상을 전달할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서 언론종사자가 아니거나 언론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들에게 액세스권으로서 의견광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보았다(Barron, 1967).

그렇다면 액세스권의 행사차원에서 매체사는 의견광고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게재해 주어야 하는가? 만약 모든 종류의 정보제공에 대해 매체의 지면이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매체사는 어떤 내용의 광고정보가 제공되면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매체사는 적극적으로 광고내용의 수정을 권유하거나 의견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기도 하며 나아가 광고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예도 비일비재하다.

광고게재의 거부는 계약의 전후에 걸쳐 일어난다. 첫째 단계는 신청은 있었지만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게재가 거절된 경우로서 신청에 대해 승낙을 하지 않은 때이다. 둘째 단계는 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된 후에 윤리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게재 전에 게재가 거부된 경우이다. 세 번째 단계는 연재광고의 경우에 일부는 게재가 되었지만 게재 도중에 윤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재가 거부된 경우이다(長尾治助, 1993: 113). 이런 정형화된 거부 단계 외에 한국에서는 초판에 의견광고가 게재되었다가 배달판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매체사는 편집과 광고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변한다.

그렇다면 편집권이란 무엇인가? 편집권의 개념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언론 내외부의 영향을 받아 불명확하며 따라서 편집권의 개념, 권리인정 여부, 편집권의 주체와 내용이 어떠

한 것인가에 대해 정립된 이론은 아무 것도 없다(박용상, 2002: 811).⁹⁾

유일상에 의하면 일본의 편집권 내용은 지면 작성권, 개별기사취급 결정권, 광고취급 결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광고취급 결정권은 신문의 전체지면 가운데 광고게재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지면을 할당할 것인가, 특정내용과 방향을 가진 광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광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사실상, 신문의 특정지면을 매입하여 특정의견을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취급 결정권도 언론의 공정성 실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의견광고의 무제한적 허용을 결정한 신문은 자본력의 적나라한 지배에 따라 특정지면에 대해서는 정보와 의견의 자유로운 공표를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취급 결정권은 개별기사취급 결정권이나 지면 작성권 못지 않게 편집권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유일상, 2001:450-451).¹⁰⁾

그러나 의견광고의 게재거부 근거를 편집권에서 찾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한다. 첫째, 뉴스·기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광고정보에 대해서도 매체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오늘날 매체사는 광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는 이론적으로 일관성을 잃게 된다. 둘째, 편집권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광고가 매체사의 뜻에 반한 때에는 모두 편집권을 이유로 광고게재의 신청이 거부될 우려가 있다. 이는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편집권에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셋째, 계약이 성립한 후에 게재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게재의 무와 편집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넷째, 광고업자는 편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따라서 광고업자에 의한 게재 거부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長尾治助, 1993: 114-115).

9) 외국이나 한국에서도 편집권은 모호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한국에서 편집권의 귀속과 관련해 몇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 편집권이 경영인, 즉 발행인에게 있다는 견해, 둘째, 편집권이 편집 측에 있다는 견해, 셋째, 절충적인 견해로서 경영과 편집 측이 분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박용상은 편집권이 기본적으로 경영진에 속한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자 등 종사원들과 협력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편집작업을 매체의 보도활동을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매체의 편집작업은 원래 매체의 설립 및 운영에서부터 나오는 작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조직화·기업화한 거대 신문에서 이러한 편집작업은 경영층에 의해서만 담당될 수 없고 다수의 기술 및 전문 인력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적·분업적 작업이고 그 본질은 정신적 활동에 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발행인이나 경영자가 진담하여 행할 수 있는 상질의 것은 아니고 경영자와 기자 등 종사원이 공동 협력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박용상, 2002: 821-822).

10) 지면작성권은 편집권의 중핵인 편집방침의 결정권을 뜻하며 이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따라 편집권의 정도가 정해진다. 편집방침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첫째, 사시, 편집강령 등 신문사의 성격과 관련된 기본방침, 둘째,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 보도대상에 대한 논조와 시각 등 신문편집상의 장기방침, 셋째, 매일 매일의 지면작성을 위한 개별지면방침 등이다. 개별기사취급 결정권은 편집방침에 따라 신문을 제작함에 있어 특정의 기사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 기사 취급에서의 지면배치와 지면구성 등과 관련한 권능이다(유일상, 2001: 450-451).

의견광고 게재를 불허할 경우, 정보와 사상전파의 중요한 출구를 봉쇄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

Ⅲ. 의견광고의 게재와 법적 책임

1. 의견광고와 관련한 외국의 판례

의견광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는 의견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광고를 실은 매체에 무료로 반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광고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실은 매체에게도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김옥조, 2001: 448).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자.

New York Times Co. v. Sullivan¹¹⁾ 사건에서는 해당 광고를 영리적 광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광고 게재를 불허할 경우, 신문사의 의욕을 꺾을 수 있고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원하면서도 출판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보와 사상전파의 중요한 출구를 봉쇄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문제가 된 명예훼손적 진술이 비록 유료광고의 형식으로 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유일상, 1998: 344-345; 김동철, 1983: 64). 이 사건은 명예훼손법 상의 '현실적 악의'와 명예훼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보호 판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익적인 의견광고를 편집내용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공인이 의

견광고 게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경우 피고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판결로서 의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Business Executive's Move for Vietnam Peace v. FCC¹²⁾ 사건에서 워싱턴 소재 WTOP 방송사는 월남전에 관한 1분짜리 BEM의 의견광고 방송을 거절하였다. 이에 BEM은 FCC에 의견광고를 위한 시간제공을 거부한 방송망사업자들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FCC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컬럼비아 항소심법원은 방송사업자가 상업광고를 받아들이면서 공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광고를 방송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으나 연방대법원의 CBS Inc.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¹³⁾ 판결에서 뒤집어졌다(김동철, 1983: 62; 유일상, 1992b: 36-37).

CBS Inc.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¹³⁾ 사례에서 연방대법원은 민영 방송사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의견광고 방송을 거부한 것은 정치집단의 표현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여 의견광고에 대한 편성결정권이 방송사 측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워렌 버거(Warren Burger) 대법원장에 따르면 방송사의 편성정책은 수정헌법 제1조에 종속되는 정부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1970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이 공공적 모금활동과 관련한 논평을 거절한 데 대해 FCC가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FCC는 방송사업자들이 정치적·사회적 사상을 전파하

11) 376 U.S. 254 (1964).

12) 412 U.S. 94, 93 S.Ct. 2080, 36 L.Ed.2d, 772 (1973)

13) 412 U.S. 94, 93 S.Ct. 2080, 36 L.Ed.2d 772 (1973)

기 위한 광고시간을 거절한 데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FCC를 상대로 공공적 문제에 대한 방송접근 이용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신문이나 방송으로 하여금 단순한 상업광고는 물론 유료의 특수한 의견광고를 게재 또는 방송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Gillmor et al., 1998: 482-488; Dmitrieva, 2000: 12; 유일상, 1998: 350-351).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¹⁴⁾ 사건에서는 신문의 선거보도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유료로 그 신문의 광고란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다퉈졌다. 플로리다주는 미디어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는 지역으로서 주 선거법은 신문이 정치공직후보자의 인격적 특성이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비난 기사를 실었을 때 무료의 지면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다. Miami Herald는 Tornillo가 범법행위자라는 논평을 게재했는데 이에 대해 Tornillo는 반론기회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주법의 반론권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와 배치돼 합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주 대법원은 주의 반론권은 수정헌법 제1조에 부합한다면서 Tornillo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면서 선거에서 공격당한 후보자에게 반박할 수 있는 무료지면을 신문사는 제공해야 한다는 플로리다주의 액세스권을 일축하였다. 신문매체에서는 방송처럼 반론권으로서

의견광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견광고의 게재여부는 해당 신문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Gillmor et al., 1998: 469-477; Dmitrieva, 2000: 11; 이구현, 1998: 380-381; 유일상, 1998: 347-348).

Citizen Awareness Regarding Education v. Calhoun County Publishing Inc.¹⁵⁾ 사건에서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 사기업인 신문사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신문사에게 그 어떠한 것을 게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CARE는 학교채권 징수문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결성된 정치행동위원회인데 그동안 몇 차례 Calhoun Chronicle지에 유료정치광고를 게재했으나 1991년 5월 선거를 이유로 정치광고의 게재를 거절당했다. West Virginia 사실심은 신문사에게 수정헌법 제1조와 West Virginia 헌법 제3조 7항에 의거 위법행위를 하였다면서 CARE가 요구한 유료정치광고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문사가 게재 않기로 하였던 광고를 받아들여 게재토록 하였던 순회법원의 금지명령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동 주의 헌법에 의한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즉 정부는 사기업인 신문사에게 의견광고의 게재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Gillmor et al., 1998: 479; 이구현, 1998: 377-382).

Leeds v. Meltz¹⁶⁾ 사례에서 연방 항소심 제2 순회 법원은 법과대학의 저널이 유료광고 게재를 거부한 것은 “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4) 418 U.S. 241 (1974)

15) 406 S.E. 2d 65 (W.Va. 1991)

16) 85 F.3d 51 (2d Cir 1996)

의견광고 활동은 국내외적으로
일반 상품광고와 달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법리에 의해 보호의 폭이 확대되어 왔다

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례에서 리즈(Jackson Leeds)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City University of New York의 법과대학 편집자를 고소하였다. 법과대학의 저널이 부분적으로 학생회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대학직원이 해당 저널의 발행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자의 게재 거부 결정은 “주 정부행위”라고 리즈는 주장했다. 나 법원은 이를 물리쳤다 (Dmitrieva, 2000: 11).

産經新聞 對 日本共産黨¹⁷⁾ 사건에서 일본 법원은 의견광고의 게재가 신문사의 품위를 저하시킬 우려는 있겠지만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은 이상 법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위법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 무료의 반론광고 게재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973년 産經新聞과 日本經濟新聞에 자유민주당의 이름으로 ‘전략 일본 공산당 귀하, 확실히 해주시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가 게재되자 일본공산당은 두 신문에 무료 반론광고게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당분간 자숙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일본경제신문과 달리 産經新聞은 논설을 통해 공산당을 비난하였고 이에 일본공산당은 産經新聞을 상대로 무료의 반론광고게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清水英夫, 1979: 209-226; 한병구, 2000: 444; 김동철, 1983: 67-69).

2. 의견광고 게재에 따른 매체사의 책임

의견광고는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전달 장치가 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견광고의 게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고 특정 광

고주에게 불리한 의견광고의 게재를 매체사가 거부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소통 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의견광고 활동은 국내외적으로 일반 상품광고와 달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법리에 의해 보호의 폭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언론보도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지는 것처럼, 의견광고 역시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가? 또 의견광고 게재에 따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의견광고의 게재를 의뢰한 광고주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의견광고의 지면과 시간을 제공한 매체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국에서는 1999년 법률 제5814호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광고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동 법에 의하면 허위나 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비방적인 표시와 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고(제9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제17조). 물론 광고관련 사업자는 규정에 위반한 표시·광고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데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제10조). 비교광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심의를

17) 東京地裁昭五二・七・一三判決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등, 광고제작과 집행의 활동 폭을 확장한 대신에 광고제작자나 광고주의 책임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광고주는 광고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독자나 시청자에 대하여 진실의무를 지게 되는데, 광고주에 의한 매체의 이용은 광고주의 진실의무 수행과정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전달수단을 갖지 못한 정보는 정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매체가 갖는 의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자 즉 광고주에게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무가 매체사에게도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長尾治助, 1993: 194-195).

그렇다면 의견광고의 경우에는 어떤가? 의견광고는 일반 수용자의 액세스권의 일환으로 신장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광고로서의 영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언론 메시지의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매체사에게 돌아간다(박종렬, 1997: 338). 즉, 의견광고의 제1차적인 향유 주체는 양심의 귀속주체인 개인이지만 표현 활동을 전문적·제도적으로 영위하는 특수 목적집단으로서 언론기관이 존재하는 이상 법인인 언론기관도 정신적인 자유로서의 의견광고의 향유 주체이며 동시에 의견광고의 의뢰자와 함께 의견광고의 게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유일상, 1992b: 29-30).

일본의 동경지방법재판소는 신문사주최 주택전시회 사건에서¹⁸⁾ 일반적으로 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신문 상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그 표현 또는 내용 그 자체가 사람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등 민·형사상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부

담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부동산 구매권유 광고라는 점을 감안해 신문사가 자발적으로 광고내용의 진실성, 실현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조사·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판시에서 법원은 명예훼손과 같이 직접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에 매체사는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長尾治助, 1993: 202-204).

한국에서 의견광고에 관한 초기의 연구자라 할 김동철(1983)과 오택섭(1984)은 하나같이 매체사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 김동철(1983: 71)에 의하면 매체사는 지면이나 시간의 제공자이고 광고게재의 관리자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들은 광고게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법률위반 광고를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게재하고, 그 게재된 광고로 인하여 독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매체사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게재한 광고가 의견광고일 경우 그 광고가 명예훼손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언론사가 알고 있거나(고의), 아니면 알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과실) 그대로 게재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오택섭(1984: 22)도 의견광고는 광고로서의 영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울러 순수한 언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이 특색이고 그러므로 의견광고의 게재를 결정하는 것은 신문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일단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신문이 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18) 東京地判 1973.6.9. 判例時報 제726호, 67면; 長尾治助, 1993: 199-204.

현실적으로 광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체사는 대부분 광고주, 광고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추급될 수 있어

長尾治助는 편집권 개념의 측면에서 매체사의 의견광고 게재 책임을 파악하고 있다. 신문사에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마치 독자투고의 내용을 신문사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고 그 독자투고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을 때 그것을 게재한 결정권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신문사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점에서 보면, 신문게재의 광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長尾治助, 1993: 202).

그러나 매체사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광고내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광고주를 제쳐놓고 매체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는 다투어지는 문제이다. 즉, 곧바로 광고주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가 아닌 매체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적 대결을 하여 부담을 주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용상, 1997: 340).¹⁹⁾ 또 현실적으로 광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체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취급을 받게 되고 따라서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매체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광고주, 광고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추급될 수 있다. 그리고 매체사의 불법행위를 추급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인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바, 과실책임원칙에 의하는 현행법상에서 허위·과장광고의 게

재에 대해 매체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황철, 1997: 50-60).

박용상은 따라서 광고내용에 대한 매체의 책임을 적절한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원칙상 그 인쇄물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광고 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매체사들은 광고에 의해 경제적 존립의 기초를 갖게 되고, 수많은 광고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례마다 그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상은 매체사의 광고게재 책임을 묻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사실상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광고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법적인 의문이 생기는 광고문안이 타인을 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사적인 생활 영역이나 비밀 영역에 대한 침해가 행해지는 경우와 같이 민·형사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이다(박용상, 1997: 338-339). 매체사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든 아니면 제한적인 수준에서 묻든 간에 언론에 게재된 의견광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매체사는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2002년 8월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의견광고의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어 광고

19) 황철은 광고매체사의 권리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매체사에 광고게재 신청을 하는 경우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매체사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신청거부가 심히 부당할 경우 즉 광고게재기준 또는 광고윤리기준 등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권리남용의 구체적인 표준으로서 판례가 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광고의 게재거부 문제와 관련되는 것은 권리의 행사(불행사)가 주관적이고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는 경우이다(황철, 1997: 28-29).

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것은²⁰⁾ 매체사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3. 의견광고의 명예훼손 법리와 반론권 보장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²¹⁾

의견광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어떤 판단기준이 적용되는가? 소위 '우유전쟁'을 촉발한 파스퇴르의 의견광고 사례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러한 광고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당해 광고의 표제

와 문구, 광고 문안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연결방법 등 당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응 광고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산정 되었다.²²⁾

또 학술잡지나 전문잡지에 실리는 것과 달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되었을 때 명예훼손죄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원래 발표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원래 발표내용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거나 과장, 추측하는 것이 학술지나 전문지에 실릴 경우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 허위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될 경우에는 광고의 특성, 광고주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일반대중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강조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 글을 해석하는 방법을 종합하여 그 허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인들은 '광고'의 강조된 부분만으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얻거나 강조된 부분에 비추어 다른 부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통례이고 광고주는 사실상 그 강조부분으로 광고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서도 책임은 강조부분만이 아닌 전체 글과의 관계에서만 지려고 할 경우, 이는 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²³⁾

20) 서울형사지법 2002.12.27. 선고 2002고합1198판결

21) 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38032판결, 1999.2.9. 선고 98다31356판결, 2000.7.28. 선고 99다6203판결, 2001.1.19. 선고 2000다10208판결.

22) 서울민사지법 1992.6.9. 선고 91가합3081, 91가합8677판결

현행 정간법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언론사가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의견 광고와 관련된 분쟁의 핵심 중의 하나는 '반론광고'의 허용여부이다. 최초의 의견광고로 인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들이 해당 매체에 반론광고 게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일부 하급심에서 반론권을 인정해 준 예가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최고법원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해당 매체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반론광고의 게재여부는 철저히 해당 매체사의 자율적인 편집방침 결정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의견광고 게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서 반론권 청구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법원은 "광고는 언론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를 그대로 표시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현 반론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언론기본법(현 정간법)에 의한 정정보도(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²³⁾ 이에 대해 광고의 반론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광고에도 반론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광고에도 사실적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광고이든 비광고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셋째, 언론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반박광고를 게재함은 책임 없이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익의 요건에 의해 해결할 수 있으며, 넷째, 특히 의견광고 중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반박이 반드시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양경승, 1996: 46).

그러나 현행 정간법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 경우, 반론보도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언론사가 반론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성수(1997: 441)는 유료로 광고주에게 지면·시간을 제공한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공익적 요소가 없다는 점, 언론사의 편집권에 기초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 또 일반인들도 이를 언론의 의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반론을 제한한 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양경승(1996: 46-47) 역시 상업광고이거나 의견광고이거나를 불문하고 반론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광고는 오로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이나 독점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영리기업으로서의 언론기업이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이를 게재하는 점에 비추어 그 반대 당사자로 하여금 언론사에게 무료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광고주와 상대방 간의 형평이나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광고주

23) 춘천지방법원 1991.2.26.선고 90고단108판결.

24) 서울민사지법 1992.9.15.선고 92카기474판결; 서울민사지법 1984.11.30.선고 84카34373판결; 서울민사지법 1984.11.30.선고 84카34375판결

의 재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게재 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리 기업인 언론사에게 지나친 제한이 되어 반론권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 상업광고에 대해서 반론권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의견광고에 대해서만큼은 매체사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비용으로 반론을 하게 하여 언론사에 대해 피해자와의 광고계약 체결의무를 지게 하거나(양경승, 1996: 46), 혹은 최초의 의견광고 게재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광고료를 부담하도록(유일상, 1997: 56-57) 하는 등 입법의 취지와 현실의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대중 언론으로부터 배제된 '대중'들이 '언론'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의견광고이다. 유료로 지면과 시간을 구입해야 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견광고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명료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한다. 낭만적인 '사상의 공개시장'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언론매체의 '자율조정 작동장치'를 순진하게 신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의견광고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의 각을 세우는 긴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상이한 이견들로부터 민주주의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험난하고 먼 도정은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서 비롯한

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집단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론의 장에서 소외 받고 있는 소수 약자집단의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든 바깥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고 그 전령사 역을 의견광고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의견광고는 상업적 광고수준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상품 광고처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의견광고라고 하더라도 반론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매체사들은 의견광고의 위법성을 문제삼아서라기 보다는 거대 광고주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의견광고 게재를 거부하거나 게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초판에 게재된 의견광고를 배달판에서 삭제해 버린 사례도 있어 의견광고의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즉, 의견광고는 액세스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기업가들의 여론지배를 강화하는 금권주의의 보검이 되었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액세스권으로서 의견광고의 고유한 기능을 되살려내면서 동시에 영리를 추구하는 매체사의 이익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없겠는가? 외국의 판례에서 보았듯이 언론사가 의견광고의 게재를 거부하는 것, 혹은 의견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의 자율적인 편집권의 영역으로 논해진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고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선진의 광고나라들에서도 점차 확대, 정착돼 가는 원리이다. 그런 측면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의견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

의견광고의 내용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할 경우
비용의 부담문제를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의견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게재를 거부하는 등의 매체
사 행위는 이해되어야 한다. 위법한 의견광고
의 게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고심의의 기준이나 상거래의 질서
를 심각하게 일탈한 자의적인 광고활동, 혹은
외부 압력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행위에
대해서 매체사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질 필요
가 있다. 의견광고의 내용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론을 행사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의 부담 문제를 기술적으로 처리하여
의견광고에 대한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정치적인 의견광고의 게재를
일정기간 동안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정보의 생
산과 유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철 (1983), “약세스권과 의견광고,” 『언론중재』, 제3권 제4호 통권 9호, pp.60-73.
- 김수연 (1999), “명예훼손과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전통적 법해석론적 관점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파스퇴르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용상 (1997),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 _____ (2002), 『표현의 자유』, 현암사.
- 박종렬 (1986), “한국의 의견광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7), “표현의 자유와 의견광고에 관한 연구,” 『동신대인문논총』, 제4집, p.333-362.
- 박창희 (2002), “의견광고를 중심으로 본 광고책임의 문제,” 『신문과 방송』, 제383호, pp.73-75.
- 양경승 (1996),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요 쟁점,” 『언론중재』, 제16권 제4호 통권 61호, pp.27-78.
- 언론자유위원회 (2001),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김택환 역, 중앙M&B.
- 오택섭 (1984), “의견광고: 공개적 견해 밝히는 효과적 수단,” 『광고정보』, 제37호, pp.19-22.
- 유일상 (1992a), “의견광고의 자유와 한계: 말할 권리와 말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할 일,” 『저널리즘비평』, 8호, pp.20-28.
- _____ (1992b), “의견광고와 자유언론의 긴장관계에 관한 비교 법적 고찰,” 『광고연구』, 제17호, pp.23-46.
- _____ (1997), “의견광고와 명예훼손 및 그 대책,” 『언론중재』, 제17권 제2호 통권 63호, pp.42-57.
- _____ (1998), 『언론법제론』, 박영사.
- _____ (2001), 『언론정보윤리론』, 도서출판아침.
- 이구현 (2001), 『광고법학』, 법문사.
- 이승선 (2002), “광고와 인격권의 갈등에 대한 법적 판단의 특성 연구: 명예훼손 관련 광고판례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제56호, pp.187-209.
- 이현우 · 최진영 (2001), “의약보급 관련 의견광고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제53호, pp.193-211.
- 長尾治助 (1993), 『광고와 법』, 장수태 외 역, 신영사.
- 清水英夫 (1979), 『言論法研究』, 東京: 學陽書房.
- 최경득 (2001), “의약보급 분쟁 의견광고의 특성과 소구 유형에 관한 연구: 일간신문 醫·藥·政 광고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 · 김춘식 (1998), “한국 신문의 의견광고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3-2호, pp.351-385.
- 최진영 (2001), “의견광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의약보급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광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 표성수 (1997),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 황 철 (1997), "상업광고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Barron, Jerome A. (1967), "Access to the Press: A New First Amendment Right," 80 Harv. L. Rev. 1641.
- Cutler, Bob D. & Darrel D. Muehling (1989), "Advocacy Advertising and the Boundaries of Commercial Speech," *Journal of Advertising*, Vol.18, No.3, pp.40-50.
- Cutler, Bob D. & Darrel D. Muehling (1991), "Another Look at Advocacy Advertising and the Boundaries of Commercial Speech," *Journal of Advertising*, Vol.20, No.4, pp.49-52.
- Dmitrieva, Irina (2000), "Will Tomorrow Be Free? Application of State Action Doctrine to Private Internet Providers," in Vogelsang, Ingo & Benjamin M. Campaine (eds.), *The Internet Upheaval : Raising Questions, Seeking Answers in Communications Polic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Gillmor, Donald M., Jerome A. Barron & Todd F. Simon (1998),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Middleton, Kent R. (1991), "Advocacy Advertising, The First Amendment, and Competitive Advantage: A Comment on Cutler & Muehling," *Journal of Advertising*, Vol.20, No.2, pp.77-81.
- Zuckman, Harvey L. et al. (1988), *Mass Communications Law*,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제16대 대통령 선거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문제의 제기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이다. 거의 유일한 국민 직접 참여의 공간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경연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의 성패는 대중매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 선거공간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언론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유권자에게 '중계' 되기 때문이다. 그 중계를 통해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 관련 정보 등 선거에 기본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대중매체가 투명한 거울처럼 공정한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할 때,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대중매체는 대체로 '공정'하지 않거나 자사의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의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은 오랜 동안 정치권력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주요 선거 때는 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권력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신문과 방송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6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미디어의 편파, 왜곡, 선정주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지난 대선 때는 인터넷 언론이 약진하고 소위 시장 지배적 신문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는 등 가시적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16대 대선에서는 지금까지 언론권력을 독과점 해 온 주류 언론사에 대항하는 다양한 전선이 형성됨으로써 국내의 미디어 질서가 역동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

최영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동 대학원 석·박사
- ☐ MBC문화방송 시청자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
-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시민과 언론) 편집위원장
- ☐ 저서 : 『텔레비전 화면개기』(공저), 『국민참여 방송의 이론과 실천』(공저), 『방송공의성에 관한 연구』

기도 했다. 시장 지배적 미디어와 <한겨레> <경향신문>과 같은 독립미디어들, 주류 신문사와 MBC와 같은 방송국, 주류 미디어와 <오마이뉴스>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 등으로 다원적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관련 정보가 다양해졌고 시장 지배 신문의 여론시장 지배력이 확연하게 약화되었다.

이렇듯 미디어 시장의 질서가 변하고 있다. 미디어가 여론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는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미디어 신뢰도나 영향력이 달라진 외형상의 이유는 국내의 급속한 인터넷 미디어 발전과 여론시장의 다양화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기존 주류언론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언론의 영역을 넘어서는 과도한 권한 확대가 이미 한계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시장 주류 언론사가 기존의 관행과 권력지향성, 그리고 자기 중심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향후 그 영향력과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주요 미디어가 보여준 보도태도를 분석해보고, 선거공간에서 미디어가 보다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디어의 선거보도 의미는 불명료한 면이 있다. 미디어에서 내보내는 선거관련 모든 정보를 선거보도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선거운동 기간에 뉴스 형태로 내보내는 보도만으로 한정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신문, 방송, 인터넷 미디어의 대통령 후보선출에서 선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보도 및 보도유사 기사나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미디어의 선거보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제한이나, 텔레비전 토론위원회의 무기력증,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부당한 보도통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II. 한국의 선거와 미디어

1. 선거와 미디어의 역할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적절한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비판적 시민, 유식한(informed) 유권자를 전제로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무관하게 돈봉투나 향응 아니면 어떤 '물건'에 현혹되어 자신의 권리를 넘겨버리거나 회유나 협박에 굴복해 버릴 경우 선거는 무의미한 잔치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수준과 국민의 수준은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있다. 권력은 속성상 권력체 보호와 권력 재생산에 모든 것을 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거는 부정 부패와 타락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중매체는 권력의 부패와 타락을 감시, 고발함으로써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특히 선거시기에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언론매체는 평상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선거시기에 언론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일반적으로 선거시기 언론매체의 보도는 진실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 유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독립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이효성, 1992).

우선, 선거보도는 진실해야 한다. 진실성은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 선거기간에는 각종 유언비어나 흑색선전, 비방이나 억측 등 확인되

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 확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선거보도는 공정해야 한다. 논쟁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과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중기준을 적용하거나 맥락을 생략한 채 과장하거나 일면만을 다루는 것은 피해야 한다.

셋째 선거보도는 유용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의 자질이나 이념, 공약, 쟁점에 대한 입장, 공약이나 입장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방송의 경우 피상적이고 주변적인 흥미거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끝으로 미디어가 선거보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이란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선거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식에 따라 기사를 쓸 수 있는 내적 자율성을 의미한다. 14대 대선까지만 해도 언론사의 정치적 독립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신문의 권력화에 따라 언론사 내부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02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새로운 선거보도 패러다임 모색관련 토론회에서는 국내 언론의 선거보도 문제점으로 과열과 불법조장, 가십성 보도, 전략적 대결 조장, 편파 보도, 경마(horse-race)중계식 보도, 이슈무시, 수취부 중심보도, 부정적 접근, 지역감정 조장,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 등이 지적되었고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유권자 중심의 보도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후보들이 제기하는 정책이나 이슈를 강조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한다. 둘째, 각 정당이나 후보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그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여 보도

한다. 셋째, 모든 후보들에 대한 산술적인 균형보다는 뉴스 가치를 더 중요시하여 경쟁력이 있는 몇몇 주요 후보들을 차별적으로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소 후보들에게도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한다.

넷째,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여론조사는 정확해야 하며, 선거여론조사의 실패를 거듭하는 조사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가 후보 지지도 조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새로운 선거 이슈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인의 의식 전환을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한다(권혁남, 2002).

이 밖에도 심층기사와 해설기사를 강화한다든지, 지역대결 구도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나 선거의 부정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보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대 대선은 '미디어 선거'라는 말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미디어의 향연장이었다. 전통적 독과점 미디어가 약화되고 새로운 미디어가 영향력을 확장했다는 측면이 부각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주류 미디어의 보도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욱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동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비등하고 있다.

2. 미디어 '권력화'와 그 비판

주지하듯 선거는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다. 선거가 공정하게 그리고 다수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나마 불안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미디어는 선거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신문으로 표상 되는 한국의 미디어는 지금까지 정치권력 등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선거시기에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미디어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메타포는 감시견(watchdog)이라는 말이다. 언론의 역할은 국가의 주권자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비판, 감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시견으로서의 언론은 이상형일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체로 ‘애완견’, ‘보호견’, ‘공격견’으로 변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영목, 2002).

‘애완견’으로서의 미디어란 독자적인 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상황에서 권력에 순응하는 양상이다. ‘보호견’으로서 미디어의 역할은 지배 권력구조(power structure)를 보호하려 하는데 있다. 사회 갈등을 무시함으로써 권력 집단을 노골적으로 보호하려 하는 ‘애완견’과는 달리 이러한 갈등을 보도함으로써 권력자 개인이나 특정 제도보다는 권력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격견’으로서의 미디어란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중무장하고 정치인 공격과 정치비판을 일삼는 언론을 의미한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심한 경우 정치지도자들이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신력마저도 박탈하려 한다. 이러한 미디어는 권력이나 권력구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력을 비판하고 불신을 조장한다(조항제, 2001).

국내에서 주류 미디어가 위의 메타포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일부 신문의 행태로 볼 때, ‘감시견’ 역할은 포기한 지 오래고 ‘보호견’ 단계를 지나 ‘공격견’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부 신문의 오만방자한 보도 행태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사회 환경 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부장 권력의 약화에 따른 미디어의 자율성 확대, 미약한 대중 정당과 조정기능이 없는 의회, 이념적 응집력이 약한 ‘잡동사니 정당’의 경쟁, 미디어 의존적 선거 캠페인의 제도화, 파워 엘리트간의 잦은 갈등, 체제 변동에 따른 권력구조의 재편 상황 등이다. 미디어의 권력화는 그들이 자신의 권력 행위에 대한 의식이 투철할 때 더욱 강화된다.

〈표 1〉 한국 언론의 기능적 확장 양상

기능 영역	설 명
정보 기능	정보(intelligence)의 수집, 배포, 통제기능
정책 기능	주요 국가 정책 모형, 정책 방안에 대한 제안
평가 기능	국정 전반, 국가 기관, 비국가 기관에 대한 평가 및 비판기능
교육 기능	국민 교육 및 계도 기능
여론 기능	국민여론 형성, 수렴, 조정, 상징 조작 기능
사법 기능	사법 과정에 대한 관여, 처리 방향 조정

* 출처: 박승관·장경섭, 2001, 19쪽.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언론의 과잉권력화는 이미 심각한 지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볼 때, YS정권과 DJ정권을 지나면서 한국언론(신문)은 전통적인 4부로서의 역할을 넘어 국가기관 고유의 기능을 상당부분 자신의 것으로 동화하거나 흡수, 혹은 잠칭하거나 대체하면서 그 기능과 권력을 ‘유사국가기관’(QSA: Quasi-State Apparatus)으로까지 확장하였다는

분석도 있다(박승관·장경섭, 2001, 13쪽).

한국의 주류 미디어는 선거국면에서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정도로 강력한 여론지배력을 행사해 온 면이 있다. 언론이 정보전달과 의제설정, 책임 있는 비판 기능을 넘어 정책형성이나 사법에 이르는 국가 영역 일부까지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 선거보도 문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일삼는다면 아니면 가십성 보도, 편파 보도, 지역감정 조장,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 등은 언론사들이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①유권자가 필요한 이슈와 정책을 분석, 해설하는 보도, ②후보간의 공약,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 ③후보의 공식적인 발언, 공약, 정책 등에 대한 사실 검증 보도, ④언론의 선거보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보도, ⑤선거의 의미와 유권자의 참여의 의의 등을 강조하는 보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은 외면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대신 ①질적인 편파, ②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하기, ③전략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보도, ④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남발, ⑤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윤색하는 인용, ⑥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 ⑦운수, 사주, 풍수 등 비과학적인 설명이 주가 된 보도, ⑧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이준웅, 2003: 3) 등에 주력해 온 것이 한국 주류 언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 보도의 이러한 문제점이 지난 16대 대선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Ⅲ. 주요 미디어의 16대 대선보도 경향

1. 신문의 대선보도

지난 16대 대선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미디어 정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이전에 비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말이다. 특히 16대 대선을 치르면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신문을 넘어섰다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제14대 대선 시에는 특정 신문이 당시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시켰다는 풍문이 있었고, 제15대 대선 시에도 일부 신문들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특정 신문들이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어서, 신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TV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백선거, 2003).

지난 16대 대선에 관련한 신문, 방송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 하여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한 곳은 미디어국민연대¹⁾ 선거보도감시위원회였다. 미디어국민연대에서는 2002년 10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향>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겨레>의 선거보도를 종합 모니터 하여 발표한 바 있다(미디어국민연대, 2003).

미디어국민연대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대선 때에도 주요 신문들은 편파와 왜곡.

1) 공식 명칭은 2002대선미디어공정선거국민연대(www.mmm.or.kr)다. '미디어국민연대'는 2002년 9월 18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미디어의 선거보도를 감시하고 저비용의 미디어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여성단체연합, 문화연대, 경실련 등 전국의 10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한 단체다. 미디어국민연대 산하 선거보도감시위원회(위원장 최민회)에서는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신문과 방송에 대한 집중 모니터를 하고 수시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선거 후에는 '대선보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침소봉대 과장, 흥미위주의 선정보도 등 고질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정 후보단일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여론조사 결과 보도 등에 있어 신문사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후보자의 공약이나 양당의 정책 차이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경마중계식 보도에다가 지역감정 조장보도도 눈에 띄었으며 민주노동당 등 대안정치세력에 대한 보도에 인색했다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소위 <조선> <중앙> <동아>라는 족벌/재벌 신문과 <한겨레> <경향> <문화>와 같은 '독립' 신문간의 편차도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과 <동아> 등은 노정간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노 후보의 선거 활동이나 개인에 대한 평가 역시 비판일변도의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로 일관하고 여론조사보도에서 이회창 대세론을 유포시키는데 힘썼다. 선거용 정치폭로라는 의혹을 샀던 한나라당의 '국정원 도청의혹'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한나라당의 주장을 확대재생산, 기정사실화하기에 바빴다...경마식 보도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기사 역시 적지 않았다. 이처럼 편파보도가 극심했던 족벌언론일수록 선거보도의 핵심인 정책 검증은 아예 안하거나 본질을 벗어난 흥미위주의 보도, 피상적 보도에 머물러...노골적인 편파보도로 강한 비판을 받았던 <동아>와 <조선>은 종반에 접어들면서 각각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북핵문제를 빌미로 신봉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변...했다. <중앙>의 경우 노골적인 편파시비에서는 약간 비껴있으나 선정적이고 가벼운 기사들이 가장 많아 상업적 성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향>, <문화>, <한겨레>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려는 태도를 보여 족벌언론과는 명확히 구분되었다. 특히 이들 신문이 공통적으로 시민단체와 정책검증을 실시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 점은 매우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외형적 덩치와 언론보도의 질이 반비례하고 있으며 사주가 있는 언론은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주, 2003:20).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지난 16대 대선을 거치며 시장 주류 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영향력 저하 문제는 신문의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과 여론 지배력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주요 신문들은 의제 설정의 경우 그 기동성에 있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크게 뒤졌다. 이는 미디어속성상 당연한 것이지만 신문들이 이전과 같은 강한 '이슈제기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거운동기간 발생한 북핵위기에 대해서 <조선> <중앙> <동아>가 강력하게 보도하고 나섰지만 그것이 후보지지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 또한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보도하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 정서와 크게 이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신문의 모습은 신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동안 시장 주류 신문들이 가졌던 이슈 '해석독점권'이 일정하게 붕괴한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요컨대, 그 동안 한국의 주류 신문은 단순한 미디어가 아니라 독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훈육함으로써 사회의 이념과 가치를 구성하는 권력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념적 대립 구도가 명백해지고, 갈등하는 대립자의 의도가 노골적이 되면서, 유권자는 '과거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신문의 중개자, 해설자, 심판관으로서의 역

할'을 의심하게 되었다(이준웅, 2003b).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특정 신문에 대한 안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신문사의 심판관 역할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 주류 언론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2002년 대선에서 나타난 신문의 신뢰하락 위기는 단순한 국면적 위기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권력의 분포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지형이 변화하는 데에 대해 신문이 비판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신문의 정치적 해석의 권위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현실의 해석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신문기관의 전체의 해석적 권위가 훼손된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신문이 지배 권력을 대변하느냐 여부의 문제 이상이다. 신문의 정보제공 기능이 과거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해도(심지어 더욱 좋아졌다고 해도), 신문의 사실, 논평, 해설 등이 정치적 현실에 대해 편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조건에서, 신문 독자들은 신문의 해석적 권위를 의심하게 된 데다가(이준웅, 2003a) 새롭게 활성화 한 인터넷 등 대안미디어들이 그 권위의 일정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2. 방송의 대선 보도

각종 선거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는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담당하는 역할은 다른 미디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선거방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시기 혹은 선거관련 방송이나 보도의 공정성을 요구하였고, 각 시민사회단체들도 선거무관심을 조장하거나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하여 편파적 보도를 일삼은 방송에 대하여 사안별 모니터 등을 통하여 강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 때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전벽보나 현수막, 홍보인쇄물 및 거리연설 등의 방법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홍보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인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TV토론이 활성화되었고 방송의 보도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신문보다 월등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방송은 그 공적 성격으로 인해 선거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하게 공정성,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많은 비판과 견제를 받아온 면도 있다. 이전까지 방송의 선거보도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후보자의 정책대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불공정 보도를 해왔다는 점이다(이민웅, 1996:197).

지난 16대 대선을 거치며 방송의 위상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의 선거보도는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미디어국민연대의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경마식 저널리즘'과 선정

2) 양승찬(2003)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6대 대선에 대한 매체 신뢰도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순이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우 라디오와 인터넷의 순위를 고려하기 어려운 점을 빼고는 역시 TV, 신문, 인터넷 순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파악하였다. 신뢰도 관련 주요 평가 사항 모두에서 TV에 대한 평가가 신문에 대한 평가보다 긍정적이었다. 합동 TV토론회에 대한 평가도 1997년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적 보도태도, 때거리 저널리즘, 후보자 따라가
기식 보도 행태 등 선거 때마다 지적 받는 문
제가 여전히 반복되었고, 의제설정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여정치'
'미디어 정치'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음
에도 이런 정치 변화를 제대로 진단하거나 사
회의 의제로 확산하는 역할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정치냉소주의를 부추기는 '불법 선거운
동'과 관련된 보도는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구태 정치로 흐를 수 있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방송의 적극적인 보도로 과거
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다(이송지혜, 2003).

아래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텔레비전
의 16대 대선보도는 외형상 다양성과 공정성
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여전히 스케치 기사나 부정적인 TV토론
보도가 많았지만 대체로 정책비교나 소개에
관련된 보도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측면도 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의 선거방
송 심의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의결
현황을 역대 선거방송 심의의결 현황과 비교
해 보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제15대 대통령 선
거에 비해 심의제재 건수가 79건에서 45건으

로 크게 줄었다. 제재 유형으로 봐도 법정제재
나 경고와 같은 중징계의 비율이 15대 대선
때보다 대폭 줄었다(방송위원회, 2003).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제재 사유를 보면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미준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
성 위반'(7건), '사실보도 위반'(5건),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위반'(4건), '선거관련 법규정
미준수'(4건) 순이었다.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의
방송사 대선보도 모니터보고서도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동 보고서는 우선 KBS,
MBC, SBS 방송 3사가 이번 대선 보도에서도
각 후보진영의 분위기와 상호비방 내용을 그
대로 전하거나 유력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국
변화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등 구
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³⁾ 이
어 방송사의 선거보도가 변해야 한다고 전제
한 후 그 변화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
했다. 첫째, 선거문화 개혁과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기획·보도를 확대하는 등 유권
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둘
째, 양시양비론적인 보도는 초점을 흐리는 관
점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표 2> 방송3사 메인뉴스의 16대 대선보도 주제('02. 11. 1. ~ 12. 18.)

(단위: 건)

방 송 사		단 순 소 개	정 책 소 개	정 책 비 교	판 세 분 석	T V 토 론	쟁 점 방	선거전략 분 석	선거운동 스케치	불법선거 행 위	여 론 조 사	외 신 보 도	기 타	합 계
방 송 사	KBS	4	11	12	17	32	20	14	64	7	11	6	28	226
	MBC	12	1	20	7	28	5	10	80	11	11	1	27	213
	SBS	5	7	24	21	34	10	4	80	3	5	2	40	235
합 계		21	19	56	45	94	35	28	224	21	27	9	95	674

*출처: 미디어국민연대, 2003

3)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 <방송3사 메인뉴스에서의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 I> 7쪽.

못하기 때문에 자제하고 최소한의 판단근거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여론조사 보도의 경우 순위 표현이나 수치 등을 표시할 때 그 오차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그 의미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방송의 선거보도에서 무책임한 형식적 공정성만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예를 들자면 기계적인 균형만이 강조되는 메인 뉴스의 정치보도, TV 합동토론회의 기계적 운영과 예비 합동토론의 불발 등은 모두 형식적 공정성에만 매몰된 결과라는 것이다(이창현, 2003). 그런 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발적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모'와 '창사모'의 인터넷 사이트를 정치단체로 보고 폐쇄 명령을 내린 것도 지나치게 형식적 공정성에 매몰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면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조사 보도를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 법조항은 모두 구시대적인 형식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6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방송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의 개념이 형식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방송은 형식적 공정성이 아니라 적극적 공정성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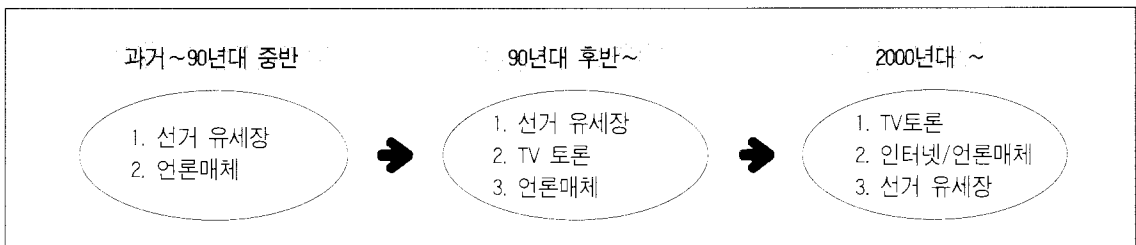
해 선거공간을 시민 참여의 '축제' 공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선거보도를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3. 인터넷 언론의 대선보도

지난 대선 관련 미디어 보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이 인터넷 언론의 약진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실시간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이전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했지만 2002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명확한 영역을 갖는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를 잡았다. 이전에도 '온라인 저널리즘' 혹은 '사이버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대안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인터넷은 뉴스가 생산, 소비되는 정보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시민들이 '한강 백사장'이나 '여의도 광장'과 같은 유세장에서 선거관련 정보를 얻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TV토론이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고 지난 16대 대선 때부터 인터넷 언론이 새롭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

선거보도 매체로서 인터넷 언론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언

〈표 3〉 선거관련 정보원의 변화



※출처: 공병철, 2002

론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일상적으로 습관처럼 이용하는 매체라기보다는 이슈의 특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지향적인 매체라는 점이다. 인터넷의 '이슈지향성'은 선거와 같이 쟁점이 부각하는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언론의 상호작용 기능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제를 상향적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넷 언론은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 의제와 수용자 의제 사이에서 일종의 필터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황용석, 2003). 인터넷 환경에서 전통 미디어의 정보 수집과 배포 기능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정보의 수집과 배포는 이제 더 이상 기득권 미디어의 '특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통 미디어의 문지기 역할은 남아 있지만, 예전처럼 낱개의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데에 그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지닐 수가 없다(강마은, 2003).

또한 기존 제도권 언론을 불신하고 강한 비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전에 독점적인 정보로 여론시장을 지배하던 주류 언론사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점도 중요하다. 의제 설정 측면에서 인터넷 언론은 기존 미디어의 이슈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다시 온라인 이슈로 확산하는 역할을 한 면이 강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언론의 온라인 의제가 다시 기존언론의 의제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광화문 '촛불시위'나 '살생부 파문' 등과 같은 의제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 16대 대선 과정에서 <오마이뉴스> 등 주요 인터넷 언론은 나름대로 새로운 '언론영역'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대표적 인터넷 미디어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의 대선 보도에 대한 분석이다. 16대 대선 기간 동안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의 톱 뉴스를 분석해 본 것이다.

신문, 방송 등의 선거보도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과 선거쟁점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에는 선거참여캠페인 보도가 많았다는 점과 <프레시안>에서 기득권 언론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학가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와 젊은 층의 투표참여캠페인 등은 사실 기득권 미디어들이 선거의 부패타락상을 부각시켜 정치혐오를 유발하려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보도 행태였다. 또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보도한 기사도 상대적으로 많아 인터넷 언론이 그 운영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이 중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다른 면에서 인터넷 언론도 나름대로 한계를 드러냈다. 선거운동관련 보도에서 기존언론의 경마보도를 답습하였고, 가십성 기사를 내보내는 한계도 드러냈다. 또한 시민이 선거의 관객이 아니라 주체로서 시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슈화하는 시민중심보도가 미흡했다. 인터넷 언론의 임무는 다수에 의한 폐해를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기존 언론에 부과된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인터넷 언론에 차별 없이 들이대는 것은 곤란하지만 인터넷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절적 공정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검증을 통해 기존 언론과 다른 새로운 선거보도 표준을 세워야 한다(박선희, 2003).

끝으로 이러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 논리를 앞세우며 언론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인터넷 언론을 정기간행물법(정간법) 상의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연장선에서 후보자 인터뷰 등에 대하여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수구적 태도로 일관한 것은 문제다.

〈표 4〉 주요 인터넷 미디어의 선거보도 주제

구 분	선거보도주제	오마이뉴스 톱기사	프레시안
선 거 운 동	선거유세 및 인터뷰	6	13
	선거전략	6	8
	판세 및 정세분석	6	44
	소수정당 선거운동	4	3
	기타	2	
	소 계	24	68
선 거 쟁 점	국정원도청	1	7
	불법자금수수	2	4
	병역비리	2	
	북한 핵과 미사일	7	5
	행정수도이전	5	9
	부정선거운동/ 흑색선전	3	3
	소 계	20	28
미디어정치	후보자 TV토론	5	6
	후보자 창조연설	3	1
	정치광고	2	
	소 계	10	7
기존언론관련보도	정치권력과 언론관계	3	4
	주류언론 보도분석	4	10
	언론의 지지후보 표명	1	1
	외국언론의 대선보도	1	9
	소 계	9	24
사회집단 및 여론	이익집단	2	2
	시민단체 활동	3	11
	여론/시민의 목소리	4	1
	선거캠페인	10	6
	소 계	19	20
사회적 편견	지역감정	3	1
	후보자 이미지	1	2
	소 계	4	3
합 계		86	150

* 분석기간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2002. 11. 27 ~ 12. 18까지임(출처: 박선희, 2003).

IV. 미디어 선거보도 발전 방향

지난 16대 대선의 투표율은 70.8%로 직접선거로 치러진 열 차례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는 14대 대선 때의 81.9%, 15대 대선의 80.7%보다 각각 11.1%, 9.9% 낮은 투표율이다. 투표율의 급격한 저하에 대하여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 파문이

나 이인제 대행의 행보 같은 패권적 연고주의 약화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정치무관심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주요 언론은 선거공간을 국민 참여의 축제마당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 주요 대중 매체는 선거관련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나아가 유권자들이 신성한 자신의 투표권을 자부심을 가지고 행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대의제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언론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이런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나 시민의 참여를 막는 제도 개혁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은 자성을 통해 선거보도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정치는 다른 면에서 그 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다. 시민의식의 성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1.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1) 대선 TV토론위원회 관련 제도 정비

현행 선거법 제82조 1항에는 '선거운동기간 120일 전부터 TV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주자들의 텔레비전 토론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공약을 밝히면 사전선거운동 관련 조항 위반이라는 애매한 해석을 한 바 있다.

텔레비전 토론의 주체인 선거토론위원회의 위상도 불분명하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까지 공영방송에서 토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송네트워크, 여성유권자연맹, 그리고 1988년에 설립된 대통령토론위원회(CPD) 등 세 기

구가 주최하여 TV토론을 개최하고 있다.

선거토론위원회를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선거토론위원회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선거기간 중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음 토론을 위해 시민평가작업을 실시하는 등 상설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 공영방송사에서 주도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방식과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공영방송이 주관하도록 했음에도 상업방송이자 지역방송인 SBS가 공동주관사가 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위원회는 금년의 선거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최소한 1년 이상 전에 설치해야 하며 그 운영형식이나 의제 선정 방식의 개발, 평가에서 유권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개정

현행 선거법에서는 법정선거기간(대통령선거 23일·국회의원선거 17일)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사는 법정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요 위반사례도 이 조항과 관련이 있다. 여론조사 보도는 국민 의견의 수렴 결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유권자의 정치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선거기간'이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유권자들은 지명도 높은 기성의 정당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기억하면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는 이른바 여론에 대한 자의적 관세분석이 난무하게 된다. 오히려 지금의 '선거 관세분석' 보도는 정치구태로 평가받는 '지역주의'에 기반 한 투표행위를 부추길 수 있으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오히려 여론을 호도 할 수도 있다. 관행에

따른 언론사들의 '판세분석 보도'는 법적 금지지를 피해가려는 언론사의 자구책이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이창현, 2003).

특히 알권리 측면에서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사표(死票)를 방지하려는 국민적 감정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법정 선거기간을 이틀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결정됨으로써 유권자들이 여론의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으며, 언론사들의 편법적인 판세분석 보도를 양산한 면이 있다. 당장 이 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7일 전 혹은 2일 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최소화하는 것(성낙인, 2002)이 바람직하다.

3) 인터넷 미디어 실체 인정관련 조항

지난해 대선 때 <오마이뉴스>가 노무현 씨 인터뷰를 기획하자 선관위가 갑자기 '전투경찰'로 돌변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를 초청해 열린 특별인터뷰라는 명목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및 이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물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254조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인터넷 미디어는 정기간행물법(정간법) 상의 언론이 아니고, 현재 후보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선거법 254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후보자에 대한 토론이나 인터뷰는 정간법 상의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가 인터넷 미디어를 언론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누구를 불러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섭할 권리도 거의 없다. 게다가 기존의 신문과 방송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내

보범으로써 선거법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전혀 제지하지 못했다.

16대 대선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실체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의 실체인정을 위해 정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정간법 적용 대상이 명시된 제2조에 인터넷 언론 조항을 새롭게 삽입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간법 제2조 7항의 통신 범주에 인터넷 언론을 추가하는 것이다. 셋째는 정간법 시행령 제1조 2항(기타간행물)을 개정해 인터넷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각 방안은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정간법 개정이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정간법 제2조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는 첫 번째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김재영, 2003).

2. 각 미디어의 '언론' 기능 재구성

언론사에 선거보도와 관련된 어떤 절대적 기준이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의 주요 언론은 대 국민 공신력이라는 면에서 '오욕'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재 기자, 데스크, 각 언론사, 언론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신문은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보도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자신이 구독하는 신문이 정치적 사건과 이슈를 왜곡 없이 반영하는 투명한 거울이라고 믿는 순진한 독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의 전통적 역할을 '해석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신문들은 복잡하고도 모순된 정치 현실에 대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의 준거를 구성하고, 도덕적 판단의 습속을 배양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거와 같은 쟁점이 부각하는 공간에서 정치 현실은 항상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모호하게 마련이다. 신문들은 확인 가능한 정보와 교감 가능한 해설을 통해,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재해석해야 한다(이준웅, 2003a).

16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방송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의 개념이 형식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란 목표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이창현, 2003). 국민 참여시대에 걸맞는 공정보도의 원칙을 만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형식논리에 빠져 '편파성 시비'를 벗어나는 데 주력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이 없이 정치 권력에 종속되었던 한국 방송 역사의 필연적 산물이기도 하다. 방송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질에 있어 마련해야 할 선거보도의 공정성 기준은 방송사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은 현장성과 시민참여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영역을 개척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공적 미디어로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기사나 인신공격성 비방기사가 여과 없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무모한 대중추수주의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체도권 언론에서 비판하며 인터넷 언론의 의미를 깎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 언론의 익명성과 대중성은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넷 언론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티즌의 성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3. 유권자와 시민사회의 역할

앞서 정리했듯이 언론이 본연의 '감시견' 역할을 버리게 될 때, 시민사회 영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특히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 하여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권력 창출'에 나서게 될 경우 그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게 마련이다. 권력 감시의 기능을 포기하고 지배권력의 핵심으로서 이데올로기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이럴 경우 정치 권력이 합법적으로 언론에 개입한다고 해도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 일부 언론사가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면이 있다.

지난 1997년의 15대 대선 때 주요 언론은 편파, 왜곡, 과장, 축소보도에 앞장섰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도 강력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언론개혁' 문제가 집요하게 제기되었고 결국 DJ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 구속이라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16대 대선 때 언론보도는 15대 대선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공정해진 면이 있다. 이는 시민사회 단체의 선거보도감시 운동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로 한국사회에서 대안언론, 대항언론이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향후에도 언론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저항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는 새로운 대안 미디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유통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향후 국내 언론의 선거보도는 공정한 심판의 기능을 점차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YMCA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모임'(2002), 〈방송3사 메인뉴스에서의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

- 강미은(2003), “미디어 선거를 진단한다 : 인터넷”,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호.
- 권혁남(1999), “텔레비전의 15대 대통령 선거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43-5.
- 권혁남(2002),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언론중재위원회 세미나,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2002. 9) 발표문.
- 공병철(2002), “사이버 선거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자연대회의 주최 세미나 〈선거보도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2002. 10. 22) 발표문.
- 김영호(2002), “선거보도 심의 창구에 비친 언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세미나,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2002. 9) 발표문.
- 김은주(2003), “2002 대선 신문보도 총정리”, 미디어국민연대 주최 세미나, 〈대선보도 이대로 좋은가〉, 발표문.
- 미디어국민연대(2003), 〈2002 대선보도 이대로 좋은가〉 선거보도 평가토론회 자료집.
- 박선희(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 박선희(2003), “인터넷 언론의 16대 대선보도 분석: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 외 주최 토론회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 변화와 매체별 발전 전략〉 발표문.
- 박승관(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1.
- 박승관·장경섭(2001), 『언론권력과 의제동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방송위원회(2003),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 백서〉.
- 백선거(1992), “한국언론이 파행적 선거보도 관행”,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울.
- 백선거(2003), “미디어 선거를 진단한다: 16대 대선과 미디어”,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
- 성낙인(2002), “공직선거법에서의 언론관계 조항의 재검토”,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 2002년 하(통권 12호).
- 양승찬(2003), “16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로 본 언론”, 한국언론재단 외 주최 토론회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 변화와 매체별 발전전략〉 발표문.
- 이민용(1996),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 이송지혜(2003), “2002 대선 방송보도 총정리”, 미디어국민연대 주최 세미나, 〈대선보도이대로 좋은가〉, 발표문.
- 이용식(2002),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언론중재위원회세미나, 〈선거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발표문.
- 이준웅(2003a),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언론: 신문의 영향력 저하에 대한 설명”, 한국언론재단 외 주최 토론회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 변화와 매체별 발전 전략〉 발표문.
- 이준웅(2003b), “미디어 선거를 진단한다: 신문”,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호.
- 이창현(2003), “16대 대통령 선거시기 방송보도의 평가와 제언: 형식적 ‘공정성’의 담론을 넘어서”, 한국언론재단 외 주최 토론회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 변화와 매체별 발전전략〉 발표문.
- 이효성(1992), “선거보도 원칙과 강령”,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울.
- 조항제(2001),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16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방안: 선거공영제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자료집.
- 최영묵(2002), “언론개혁과 민주주의: 전망과 과제”, 민주주의사회문제연구소 편, 『민주주의』 제1집.
- 황 근(2002a), “텔레비전 선거보도에 비추어진 지역정치 의 특성: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 정당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4('02 가을).
- 황 근(2002b), “제16대 대통령선거 방송보도 분석: TV뉴스에 대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프로그램/텍스트』 제7호.
- 황용석(2003), “인터넷언론: 시사형 인터넷언론의 특성”,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호.

2002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2년도 한 해 동안 총 511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002년도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합의율은 35.6%(182건)로 전년도 34.8%(229건)보다 다소 증가한 반면 중재불성립결정률은 12.1%(62건)를 보여 전년의 20.0%(132건)에 비해 7.9% 감소했다. 또 취하율은 43.6%(223건)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중재불성립결정률이 감소한 것은 담당중재부가 당사자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재결정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2002년도 중재결정건수는 35건(6.9%)에 달해 1996년 중재결정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결정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중재결정에 의한 피해구제보도율도 57.1%에 달해 전년의 31.0%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62.4%로 전년의 62.3%에 비해 0.1% 증가했다. 이는 2000년 이후부터 3년 연속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02년 한 해 동안 105개 매체의 보도내용을 심의한 결과 142건의 심의기준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I. 중재처리결과현황

중재처리결과는 합의 182건(35.6%), 중재결정 35건(6.9%), 중재불성립결정 62건(12.1%), 기각 8

건(1.6%), 각하 1건(0.2%), 취하 223건(43.6%)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합의율은 0.8% 증가한 반면 취하율은 5.8% 증가하였고, 중재불성립결정률은 7.9% 감소, 다시 10% 초반대로 떨어졌다.

신청사건의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은 합의 98.4%, 중재결정 57.1%, 중재불성립결정 16.1%, 취하 44.8%로 전체 피해구제보도율은 61.1%였다.

이는 전년도 전체 피해구제보도율 59.5%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다.

중재신청사건 청구사건별 신청건수는 신청사건 총 511건 중 반론보도청구 201건(39.3%), 정정보도청구 307(60.1%), 추후보도청구 3건(0.6%)으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인들은 여전히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사건별 피해구제보도율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66.2%, 정정보도청구가 57.3%, 추후보도청구가 100.0%로, 이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해구제측면에서는 반론보도청구가 앞섰다.

청구사건별 합의율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이 42.3%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31.6%보다 10.7% 높게 나타났다. 또 청구별 취하율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이 45.9%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39.8%보다 6.1% 높고, 취하후 피해구제보도율도 정정보도청구사건이 46.8%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41.3%보다 5.5% 높게 나타났다.

중재결정은 총 35건으로 청구권별로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14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20건,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1건으로 반론보도청구보다

오히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결정권 행사가 다소 앞섰고, 중재부별로는 서울이 24건, 지방이 11건으로 서울중재부에서 중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북중재부가 5건, 광주중재부가 3건 등 지방중재부의 중재결정권 행사도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다.

한편 중재결정사건 35건 중 17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의신청된 반론보도청구사건 9건 중 5건이 법원에 제소되었다. 그 결과 3건은 법원 판결후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졌고 1건은 취하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계류중이다.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중재신청인 유형으로는 개인신청사건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21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이 90건(17.6%), 조합 및 협회가 신청한 사건 49건(9.6%), 일반단체가 신청한 사건 35건(6.9%),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건이 26건(5.1%),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 22건(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기업체 신청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7.6% 증가한 반면 조합 및 협회와 국가기관 신청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3.6%, 3.0% 감소했다.

국가기관신청사건의 경우 전체신청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3.0% 감소에 그쳤지만 신청건수로는 48건에서 22건으로 배 이상 감소했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 307건 중 개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업가가 46건(21.3%)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회사원 32건(14.8%), 경찰 19건(8.8%), 공무원 15건(6.9%), 교육자 12건(5.6%), 연예인 11건(5.1%) 등의 순이었다.

사업가의 신청비율은 전년의 37.8%에 비해 16.5% 감소해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회사원의 신청비율은 전년의 3.9%에 비해 10.9%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국회의원 신청사건의 경우 36건이 신청돼 신청비율로 10.6%를 차지했던 2000년을 정점으로 2001년에는 8건(2.6%),

2002년에는 5건(2.3%)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공무원 신청사건의 경우도 2002년에는 15건(6.9%)으로 36건(11.7%)이었던 전년에 비해 그 비율이 4.8% 감소했다.

중재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율은 개인이 56.9%, 기관·단체가 64.0%로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전년대비 4.0% 감소하였고 기관·단체가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한 언론침해의 유형으로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493건(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훼손이 10건(2.0%), 기타 8건(1.6%) 순이었다.

III.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별 중재신청사건은 신문매체 392건(76.7%), 방송매체 90건(17.6%), 잡지 24건(4.7%), 통신 4건(0.8%), 기타 1건(0.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신문매체를 상대로 한 신청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체의 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이 156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일간지 139(27.2%), 주간신문 89건(17.4%), TV매체 88건(17.2%),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 전체신청건수 중 중앙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도 39.6%(261건)에 비해 9.1% 감소하였고, 지방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반대로 전년도 23.5%(155건)에 비해 3.7% 증가하였다. 주간신문 상대 신청비율 또한 전년도 12.9%(85건)보다 4.5% 증가하였다.

방송매체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도 17.3%(114건)에 비해 0.3%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 20.6%, 2001년 17.3%로 두 해 연속 감소하다 2002년 들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신문매체 중에서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9.8%로 전년에 비해 12.3% 감소했다. 중앙일간지 다음으로는 지방일간지 35.5%, 주간신문이

22.7% 순이었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97.8%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앙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감소한 반면, 주간신문과 지방일간지 신청비율은 전년대비 각각 4.5%, 3.7% 증가했고 나머지 매체의 신청비율은 별 변화가 없었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중재신청사건을 차지하는 중앙일간지의 경우 57.1%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고 지방일간지의 경우도 59.7%로 전년대비 4.8% 감소하였다.

주간신문의 피해구제보도율은 75.3%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는데 매체유형 중에서는 피해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방송매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48.8%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다.

IV. 중재대상기사 현황

중재대상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257건(5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치관련 기사 77건(15.1%), 경제관련 기사 49건(9.6%), 의료·건강 관련 기사 28건(5.5%), 스포츠·연예 관련기사 27건(5.3%), 기타 73건(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대상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266건(86.6%), 논단 및 칼럼 9건(2.9%), 가십기사와 심층조사기사가 각각 8건(2.6%), 7건(2.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스·해설이 56건(62.2%), 시사고발 프로그램 19건(2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사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민원 및 제보가 252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101건(19.8%), 보도자료 발표에 근거해 기사화한 경우가 88건(17.2%) 등으로 나타났다.

V.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는 서울의 5개 중재부가 307건(60.1%), 지방 10개 중재부가 204건(39.9%)을 처리하여 여전히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한 사건이 지방 보다 많았다. 지방중재부에서는 경기중재부 45건(8.8%), 광주중재부 39건(7.6%), 전북중재부 25건(4.9%), 부산중재부 21건(3.2%), 대전중재부와 충북중재부가 각 16건(3.1%) 등의 순서로 신청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율은 서울중재부가 60.3%, 지방중재부가 62.3%로 나타나 전년에 이어 2002년에도 지방중재부가 서울중재부보다 소폭 앞섰다.

VI. 법원제소 현황

법원제소건수는 총 12건으로 전년도 36건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중재불성립결정된 62건 중 7건, 중재결정(35건) 후 이의신청된 17건 중 5건이 법원에 제소되었다.

법원제소결과는 총 12건 중 8건이 인용판결을 받았고 2건은 취하, 나머지 2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취하된 2건 중 1건은 보도가 이루어져 제소된 12건 중 총 9건은 피해가 구제되었다.

◇ 시정권고현황 ◇

2002년에는 일간지 81종, 주간지 9종, 주간신문 6종, 월간지 8종, 통신 1종 등 총 105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142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 공개기사가 88건(62.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항정신성의약품 용량, 용법 공개기사가 44건(31.0%),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기사 9건(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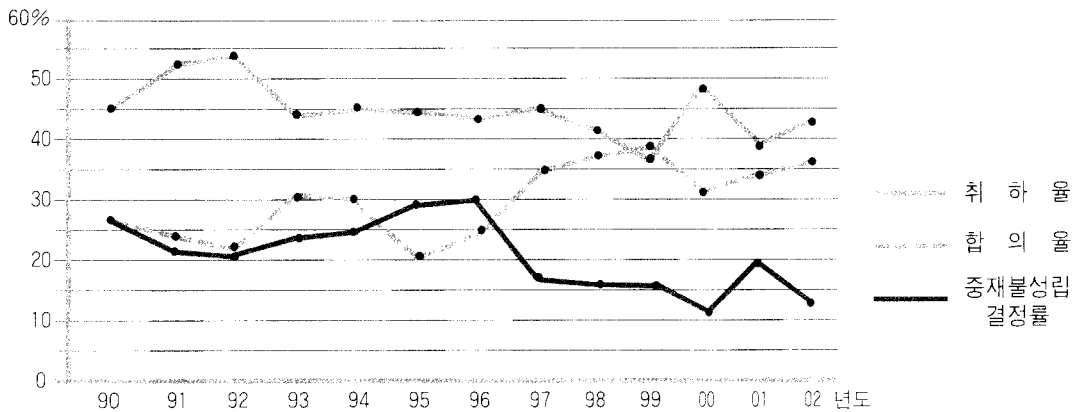
1. 중재신청처리현황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안은 %

구 분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신청건수	182 (35,6)	35 (6,9)	62 (12,1)	8 (1,6)	1 (0,2)	223 (43,6)

1990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중재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제도 현황

()안은 %

구 분	피 해 구 제 제 도 내 용									
	처리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합의	182	179 (98,4)	110	2		44	5		16	1
중재결정	35	20 (57,1)	11			7			1	1
중재불성립 결정	62	10 (16,1)	9			1				
기각	8	3 (37,5)				1		2		
각하	1	0								
취하	223	100 (44,8)	45		2	29	6			2
계	511	312 (61,1)	175	2	2	82	11	2	17	4

중재신청사건청구별 처리결과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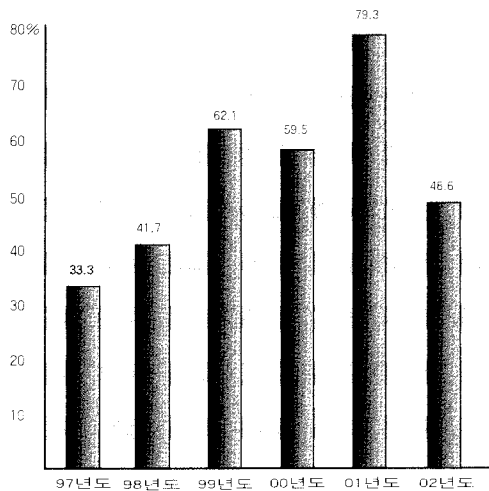
처리결과 청구명	신청 건수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반론보도청구	201	85 (42.3)	14 (7.0)	21 (10.5)	1 (0.5)		80 (39.8)
정정보도청구	307	97 (31.6)	20 (6.5)	41 (13.4)	7 (2.3)	1 (0.3)	141 (45.9)
추후보도청구	3		1 (33.3)				2 (66.7)
계	511	182 (35.6)	35 (6.9)	62 (12.1)	8 (1.6)	1 (0.2)	223 (43.6)

중재신청사건청구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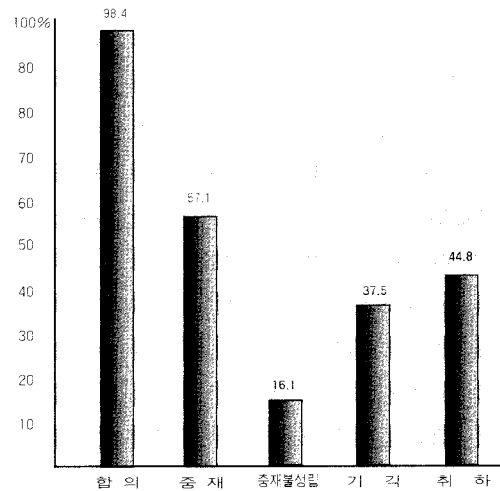
()안은 %

구분 청구명	신청 건수	피해구제 보도건수 (보도율)	피해구제보도내용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반론보도청구	201	133 (66.2)	111	1	1	8	3		5	4
정정보도청구	307	176 (57.3)	64	1	1	74	8	2	12	13
추후보도청구	3	3 (100)								3
계	511	312 (61.1)	175	2	2	82	11	2	17	17

중재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중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신청인 유형	구 분 신청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 인	216 (42.3)	208	3	5	76	13	28	6		93
국가기관	22 (4.3)	22			5	3	1			13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26 (5.1)	26			6	4	2			14
정 당	10 (2.0)	10			3	1	2			4
조합 및 협회	49 (9.6)	47	2		20	2	3	1		23
공공단체	17 (3.3)	17			10	1	1		1	4
일반단체	35 (6.9)	32		3	15	1	3			16
종교단체	12 (2.4)	12			3	2	4			3
기업체	90 (17.6)	85	5		28	5	14	1		42
언론사	20 (3.9)	20			8	2	3			7
금융기관	3 (0.6)	3			1		1			1
교육기관	7 (1.4)	7			6	1				
의료기관	4 (0.8)	4			1					3
계	511 (96.5)	493 (2.0)	10 (1.6)	8	182 (35.6)	35 (6.9)	62 (12.1)	8 (1.6)	1 (0.2)	223 (43.6)

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안은 %

신청인 유형	구 분 신청 건수	보도 (보도율)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건수	(보도율)									
개 인	216	123	(56.9)	57		1	44	6	1	8	3	3
국가기관	22	15	(68.2)	12			3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26	10	(38.5)	7						1	1	1
정 당	10	4	(40.0)	3			1					
조합 및 협회	49	36	(73.5)	17			13	2		1		3
공공단체	17	11	(64.7)	10						1		
일반단체	35	25	(71.4)	16	1		4	1				3
종교단체	12	8	(66.7)	4			2	2				
기업체	90	53	(58.9)	31	1	1	9		1	5		5
언론사	20	16	(80.0)	9			4			1		2
금융기관	3	2	(66.7)	1			1					
교육기관	7	7	(100.0)	7								
의료기관	4	2	(50.0)	1			1					
계	511	312	(61.1)	175	2	2	82	11	2	17	4	17

신청인(개인의 경우) 직업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개인의 직업	구 분	신청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회사원		32 (14.8)	31		1	10	2	5	1		14
공무원		15 (6.9)	15			3	2	2			8
국회의원		5 (2.3)	5				1				4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10 (4.6)	10			5	2	1			2
정당/정치인		10 (4.6)	10			3	1		1		5
공공기관장		2 (0.9)	2			1		1			
교육자		12 (5.6)	11		1	2		2	1		7
종교인		9 (4.2)	8		1	5	1		2		1
언론인		2 (0.9)	2					1			1
문화예술인		4 (1.9)	4			1					3
사업가		46 (21.3)	42	3	1	23	2	7			14
제1차산업 종사자		2 (0.9)	2				1				1
연예인		11 (5.1)	11			3			1		7
조합대표 현 회장		5 (2.3)	5			5					
경찰		19 (8.8)	19			6		3			10
의료인		6 (2.8)	6			1	1	1			3
학생		3 (1.4)	3			2					1
사회운동가		3 (1.4)	3			1		1			1
주부		10 (4.6)	10			3		2			5
무직		4 (1.9)	3		1	1		2			1
기타		6 (2.8)	6			1					5
계		216	208 (96.3)	3 (1.4)	5 (2.3)	76 (35.2)	13 (6.0)	28 (13.0)	6 (2.8)	0 (0.0)	93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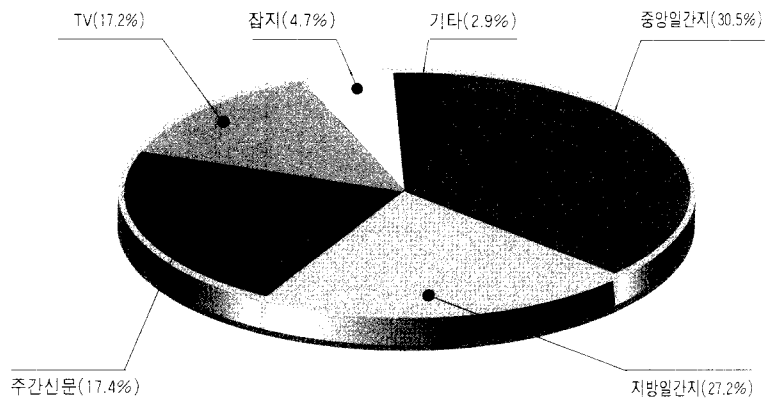
Ⅲ.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안은 %

매체유형		처리결과 신 청 건 수	합 의	중 재 결 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신 문	중 앙 일 간 지	156	46 (29.5)	10 (6.4)	15 (9.6)	5 (3.2)		80 (51.3)
	지 방 일 간 지	139	47 (33.8)	9 (6.5)	20 (14.4)			63 (45.3)
	주 간 신 문	89	44 (49.4)	6 (6.7)	10 (11.2)		1 (1.1)	28 (31.5)
	기 타 신 문	8	3 (37.5)					5 (62.5)
방 송	T V	88	27 (30.7)	5 (5.7)	13 (14.8)	2 (2.3)		41 (46.6)
	라 디 오	1		1 (100)				
	C A T V	1	1 (100)					
잡 지		24	13 (54.2)	3 (12.5)	4 (16.7)			4 (16.7)
통 신		4	1 (25.0)	1 (25.0)		1 (25.0)		1 (25.0)
기 타		1						1 (100)
계		511	182 (35.6)	35 (6.9)	62 (12.1)	8 (1.6)	1 (0.2)	223 (43.6)

매체별 중재신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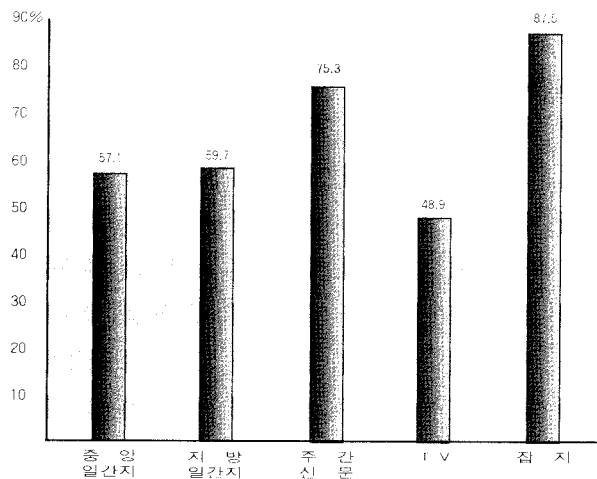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단위:건수)

구분 매체유형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피해구제보도내용								
			반론 보도	반론및 사과보도	반론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및 사과보도	정정및 PR보도	정정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신문	중앙일간지	156	89 (57.1)	50	1	2	22	2	2	3	7
	지방일간지	139	83 (59.7)	52	1		21			4	3
	주간신문	89	67 (75.3)	31			20	5		9	1
	기타신문	8	7 (87.5)	2			1			1	3
방송	TV	88	43 (48.9)	28			8	3			4
	라디오	1	0								
	CATV	1	1 (100)	1							
잡지		24	21 (87.5)	11			9	1			
통신		4	1 (25.0)				1				
기타		1	0								
계	511	312 (61.1)	175	2	2	82	11	2	17	4	17

매체별 피해구제보도율 비교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신청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불성 결	재 립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앙 일 간 지	경향신문	8	7	1		3	1	1			3
	국민일보	8	7		1	1	1			1	5
	내일신문	12	12			3	1	6			2
	노동일보	2	2			2					
	대한매일	5	5			2					3
	동아일보	18	16	2		5		3			10
	문화일보	9	9				1	1			7
	세계일보	3	3			1					2
	조선일보	22	21		1	6	5	2		1	8
	중앙일보	8	7		1	1				1	6
	한겨레	7	6	1		2					5
	한국일보	18	18			8	1				9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지 방 일 간 지	소	120	113	4	3	34	10	13		3	60
	서울시민일보	1	1								1
	부산부산일보	5	5			3					2
	대구경북일보	3	3								3
	대구일보	1	1								1
	영남일보	1	1			1					
	광주일보	3	3			2	1				
	광주타임즈	7	7			5					2
	부등일보	8	8			3		3			2
	전광일보	1	1					1			
	전남매일	1	1								1
	전남일보	5	5			1		1			3
대전· 충남 지 방 일 간 지	호남매일	4	4				1	2			1
	호남신문	4	4					1			3
	호남일보	1	1			1					
	대전충남일보	2	2					1			1
	충도일보	8	8			7	1				
	충청매일	2	2			2					
	경기매일	3	3			1					2
	경기신문	2	2			2					
	경기일보	2	2			1					1
	경인일보	8	8			1		1			6
	기호일보	2	2								2
	서울일보	1	1								1
현 대 일 보	수도권일보	3	3			1					2
	인천일보	4	4					1			3
	중부일보	5	5			2		1			2
	현대일보	1	1								1

매체 유형	구 분		신청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불 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방 매 체 간 지	강원	강원도민일보	1	1								1
	충북	동 양 일 보	1	1			1					
		중 부 매 일	3	3			1					2
		충 청 일 보	3	3			3					
	전북	새전북신문	5	5			1		1			3
		전북도민일보	1	1				1				
		전 라 일 보	4	4			1	1	1			1
		전 북 일 보	8	8				3	2			3
	울산·경남	전 북 중 앙	2	2								2
		경남도민일보	6	6			1		1			4
		경 남 신 문	3	3								3
		경 남 일 보	4	4			1	1				2
	제주	경 상 일 보	2	2			2					
		신경남매일	2	2			2					
		울 산 매 일	1	1								1
		제민일보	2	2			1		1			
	제 주 일 보	1	1					1				
	한 라 일 보	2	2					1			1	
	소 계	139	139	0	0	47	9	20	0	0	63	
경 제 지	매 일 경 제	2	2			1					1	
	서 울 경 제	3	3			2					1	
	파이낸셜뉴스	2	2			1					1	
	한 국 경 제	2	2			1					1	
	소 계	9	9	0	0	5	0	0	0	0	4	
스 포 츠 지	스포츠서울	4	4			2					2	
	스포츠조선	6	6								6	
	스포츠투데이	6	6			2			2		2	
	일간스포츠	5	5			2					3	
	goodday	6	4		2	1		2			3	
	소 계	27	25	0	2	7	0	2	2	0	16	
특 수 일 간 지	농 민 신 문	1	1								1	
	디지털타임즈	3	3								3	
	매일노동뉴스	1	1			1						
	전 자 신 문	2	2			1					1	
	코리아타임즈	1	1			1						
	소 계	8	8	0	0	3	0	0	0	0	5	
통 신	연 합 뉴 스	4	4			1	1		1		1	
	소 계	4	4	0	0	1	1	0	1	0	1	
중 앙 방 송	KBS-1TV	14	11	2	1	2	1	2			9	
	KBS-2TV	2	1	1			1				1	
	MBC-TV	31	29	1	1	9	3	8			1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신청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재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앙 방송	S B S - T V	19	19			7		1	2		9
	소 계	66	60	4	2	18	5	11	2	0	30
지 방 방 송	부산KBS-1TV	2	2			1		1			
	대구KBS-1TV	1	1					1			
	전주KBS-1TV	1	1			1					
	광주MBC-TV	1	1								1
	안동MBC-TV	1	1								1
	원주MBC-TV	1	1								1
	전주MBC-TV	3	3			2					1
	청주MBC-TV	3	3			1					2
	춘천MBC-TV	3	2		1	2					1
	광주CBS-R	1	1				1				
	소 계	17	16	0	1	7	1	2	0	0	7
지 역 민 방	C J B - T V	4	4			1					3
	i T V	1	1			1					
	T J B - T V	1	1								1
	소 계	6	6	0	0	2	0	0	0	0	4
케이블 TV	M B N	1	1			1					
	소 계	1	1	0	0	1	0	0	0	0	0
주 간 지	뉴 스 메 이 커	2	2				1	1			
	뉴 스 위 크	1	1			1					
	매경ECONOMY	2	2			2					
	시 사 저 널	4	4			1	1				2
	한 거 레 2 1	1	1			1					
	소 계	10	10	0	0	5	2	1	0	0	2
시사 주간 신문	일 요 신 문	2	2			2					
	일 요 서 울	2	2			1					1
	오 마 이 뉴 스	1	1			1					
	소 계	5	5	0	0	4	0	0	0	0	1
지 역 주 간 신 문	강 남 신 문	1	1					1			
	강 원 리 뷰	1	1			1					
	고 령 신 문	1	1			1					
	고 양 신 문	1	1								1
	과천시민신문	1	1			1					
	교차로저널	1	1			1					
	구로타임즈	1	1				1				
	계 양 신 문	1	1			1					
	김 포 뉴 스	3	3			2					1
	남 동 신 문	2	2					1		1	
	남 원 신 문	1	1								1
	남 해 뉴 스	1	1				1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신청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회 손	신 용 회 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재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주 간 신 문 분	뉴 스 서 천	1	1								1
	목 포 신 문	3	3			3					
	북부연합신문	1	1			1					
	새시흥신문	1	1			1					
	설악신문	1	1			1					
	성북신문	1	1			1					
	사민신문	1	1								1
	사민의신문	1	1			1					
	연수신문	1	1								1
	영덕신문	1	1								1
	울진신문	2	2			1					1
	이천신문	1	1								1
	제주타임즈	2	2			1					1
	주간고성신문	1	1			1					
	주간상주신문	1	1								1
	중앙구민신문	1	1								1
	재천신문	1	1			1					
	진주신문	2	2			2					
	충청리뷰	1	1								1
	칠감산	1	1			1					
특 수 주 간 신 문 분	소 계	40	40	0	0	22	2	2	0	1	13
	선강뉴스	2	2			1					1
	교통신문	1	1				1				
	교회복음신문	3	3			3					
	금융정보통신	1	1					1			
	기독교보	2	2			2					
	기독교종합뉴스	1	1								1
	남시정보플러스	2	2					2			
	대한중앙중세사회노	1	1					1			
	미디어오늘	4	4			1		1			2
	베이킹타임즈	1	1					1			
	부동산타임즈	1	1					1			
	의계신문	1	1								1
	씨네21	2	2								2
	에너지경제	1	1				1				
	재건축신문	2	2			1					1
	신문건설	1	1								1
	주간지학신문	1	1				1				
	주간인물	1	1			1					
	중앙경찰신문	1	1			1					
	중앙교육신문	1	1								1
	크리스천투데이	2	2			1					1

2002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신청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재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보 수 주 간 신 문	축 산 신 문	2		2		2				
	침 해 신 문	1	1					1		
	한국국제신문	1	1							1
	한 국 금 용	3	3			1				2
	한국농어민신문	1	1			1				
	한국세정신문	1	1				1			
	한국주택신문	1	1			1				
	한 중 신 보	1	1			1				
	후 생 신 보	1	1			1				
	소 계	14	12	2	0	18	4	8	0	11
월 간 지	뉴스라이프	1	1					1		
	섬연미디어	3	3			2				1
	수자원환경	1	1			1				
	시 사 전 북	1	1			1				
	시사컴퓨터	1	1			1				
	연노권위대중보 농노권위	1	1			1				
	양 유	1	1							1
기 타	월 간 말	1	1			1				
	월 간 조 선	4	4			1	1	2		
	소 계	14	14	0	0	8	1	3	0	2
	사이버단	1	1							1
총 계	소 계	1	1	0	0	0	0	0	0	1
	총 계	511	493	10	8	182	35	62	8	223

Ⅳ. 중재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중재대상기사 내용 분류

매체 유형	구 분	기 사 내 용	신 청 건 수	정 치	경 제	사 회	과 학 환 경	문 화	종 교	의 료 건 강	스 포 츠 연 예	부 고 인 물 등 정	교 육	언 론	기 타
일 간 신 문 · 동 신	충 앙 지		120	25	12	62				7	4	4	3	2	1
	지 방 지		139	31	6	92	1	1		2		1		4	1
	경 제 지		9	1	3	3				2					
	스 포 츠 지		27			3		1			22	1			
	특수일간지		8		2	3								3	
	통 신		4	1	2								1		
	소 계		307	58	25	163	1	2	0	11	26	6	4	9	2
방 송	전 국 방 송		66	3	8	28		2	3	10	1	1	4	1	5
	지 역 방 송		23	1	2	15		1		4					
	CATV		1		1										
	소 계		90	4	11	43	0	3	3	14	1	1	4	1	5
주 간 신 문	시사종합지		5	1	1	3									
	지역생활정보지		40	8		23	1		2	2				3	1
	종 교 지		8			1			7						
	문화/교육관련지		5			2		2					1		
	경제/산업관련지		7		5	2									
	언론관련지		4			2								2	
	의약/환경관련지		5		3	2									
	부동산관련지		5		1	2									2
	기 타		10	1		5			1			1			2
	소 계		89	10	10	42	1	2	10	2	0	1	1	5	5
잡 지	시사종합지		15	4		7							1	3	
	지역생활정보지		1			1									
	문화/교육관련지		1	1											
	의약/환경관련지		2			1				1					
	기 타		5		3										2
	소 계		24	5	3	9	0	0	0	1	0	0	1	3	2
	기 타		1	0	0	0	0	0	1	0	0	0	0	0	0
총 계			511	77	49	257	2	7	14	28	27	8	10	18	14

매체유형별 중재대상 기사 종류

매체 구분	기사 종류	신청 건수
일간신문·통신	스트레이트기사	266 (86.6)
	사설	1 (0.3)
	논단 및 칼럼	9 (2.9)
	가설 기사	8 (2.6)
	인물·동정	6 (2.0)
	인터뷰	3 (1.0)
	심층조사 기사	7 (2.3)
	비평	2 (0.7)
	만화·만평	2 (0.7)
	기타	3 (1.0)
	계	307
방송	뉴스·해설	56 (62.2)
	시사고발	19 (21.1)
	교양·정보	8 (8.9)
	연예정보	1 (1.1)
	다큐멘터리	5 (5.6)
	기타	1 (1.1)
	계	90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안은 %

매체유형	취재원	계	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제보	민·형사 사건 기록	보도 자료 발표	통신· 타언론 매체	기타
일간신문·통신		307	60	137	25	64	4	17
방송		90	16	54	6	11		3
주간신문		89	18	49	2	10		10
잡지		24	7	12		3		2
기타		1						1
계		511	101 (19.8)	252 (49.3)	33 (6.5)	88 (17.2)	4 (0.8)	33 (6.5)

V.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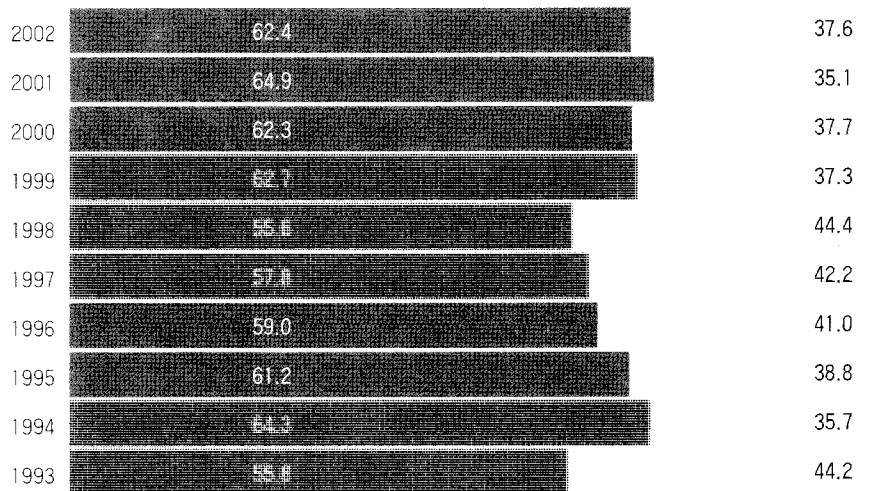
구 분 중 재 부	신 청 건 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 의	중 재 결 정			중재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서울중재부	307	99	12	12		39	8		137	
부산중재부	15	10				1			4	
대구중재부	14	4				1			9	
광주중재부	39	15	2	1		8			13	
대전중재부	16	11		1		1			3	
경기중재부	45	16				4		1	24	
강원중재부	7	4							3	
충북중재부	16	8							8	
전북중재부	25	5	4	1		4			11	
경남중재부	20	8		2		1			9	
제주중재부	7	2				3			2	
계	511	182 (35.6)	18 (3.5)	17 (3.3)		62 (12.1)	8 (1.6)	1 (0.2)	223 (43.6)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안은 %

구 분 중재부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보도율)	피 해 구 제 내 용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서울중재부	307	185 (60.3)	101	1	2	48	7	2	7		14
부산중재부	15	11 (73.3)	4			2			4	1	
대구중재부	14	9 (64.3)	5			2	2				
광주중재부	39	25 (64.1)	13			8			2	1	1
대전중재부	16	12 (75.0)	10	1					1		
경기중재부	45	27 (60.0)	16			10				1	
강원중재부	7	6 (85.7)	1			2	1		1		1
충북중재부	16	11 (68.8)	9				1				1
전북중재부	25	11 (44.0)	6			4				1	
경남중재부	20	12 (60.0)	5			5			2		
제주중재부	7	3 (42.9)	2			1					
계	511	312 (61.1)	175	2	2	82	11	2	17	4	17

서울·지방간 중재신청 구성비율추이



서 울

지 방

Ⅶ.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현황

()안은 법원제소 후 보도권수

구 분 매 체 명	제소건수	1 심 결 과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류
국 테 이	1						1
내 일 신 문	2(2)	2					
남 해 뉴 스	1					1	
대한공인중개사협회보	1(1)	1					
부 동 산 타 임 즈	1(1)	1					
월 간 조 선	2(2)	2					
M B C - T V	4(3)	2				1	1
계	12(9)	8				2	2

◇ 2002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

(대상기간 : 2002. 1. 1.~2002. 12. 31.)

매 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침 해 유 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복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사회 질서 침해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중	경 향 신 문	1				1			
	국 민 일 보	1				1			
	내 일 신 문	0							
	대 한 매 일	3				3			
	동 아 일 보	2				2			
앙	문 화 일 보	3				3			
	세 계 일 보	4				3			1
	조 선 일 보	4				3			1
지	중 앙 일 보	5				3	1		1
	한 겨 레	2				2			
	한 국 일 보	2				2			

매 체 시정권고 전수 침해유형			침 해 유 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지	인	충 청 매 일	2						2	
		경 기 신 문	2	1		1				
		경 기 일 보	4	1		1				
		경 기 매 일	3			3				
		경 도 일 보	2			2				
		경 인 매 일	2			2				
		경 인 일 보	7	1		6				
		기 호 일 보	1			1				
		수도권일보	0							
		시 대 일 보	5			1			4	
		인 천 일 보	6	1		4			1	
		중 부 일 보	2	1		1				
		전 국 매 일	2			2				
		현 대 일 보	2			1			1	
		강원도민일보	2						2	
방	충 북	강 원 일 보	0							
		동 양 일 보	1			1				
		중 부 매 일	0							
		충 청 일 보	3			1			2	
		한 빛 일 보	0							
	전	매 일 전 북	0							
		새전북신문	2	1		1				
		전 라 일 보	1						1	
		전북도민일보	2			2				
		전 북 일 보	2						2	
		전 북 중 앙	0							
		전 주 매 일	0							
		전 주 일 보	0							
	울 산 · 경 남	경남도민일보	1						1	
		경 남 신 문	1						1	
		경 남 일 보	1						1	
		경남제일신문	2			1			1	
		경 상 일 보	1						1	
		신경남매일	1						1	

◇ 연도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중재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중재처리결과

(단위: 개)

구 분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 의	동 의	중재결정 이 의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연 도									
1981	41	9			12	1	2	20	
1982	50	19			19		2	10	
1983	71	21			22	1	1	26	
1984	54	12			29	3		10	
1985	59	12			28	4		15	
1986	49	14			10	1		24	
1987	47	10			9	1		27	
1988	55	16			12		1	26	
1989	121	29			35		6	51	
1990	159	42			43	1	2	71	
1991	220	52			48	3	1	116	
1992	381	81			79	19		202	
1993	423	132			96	8	2	185	
1994	541	162			127	7		245	
1995	528	111			150	26	3	238	
1996	556	129	2	7	169	9	1	239	
1997	490	161	10	5	79	8	4	223	
1998	602	226	11	10	97	5		250	
1999	641	244	11	18	102	24	5	237	
2000	607	198	10	15	66	14	2	302	
2001	659	229	6	23	132	18	2	249	
2002	511	182	18	17	62	8	1	223	
계	6,868	2,091 (30.4)	71 (1.0)	95 (1.4)	1,426 (20.8)	161 (2.3)	35 (0.5)	2,989 (43.5)	

연도별 실질적 피해구제율

연 도	구 분	신 청 건 수	중 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취 하		소 계
					동 의	이 의				
1981		44	41	9			12	20	41	39.0
1982		50	48	19			19	10	48	58.3
1983		71	69	21			22	26	69	52.2
1984		54	51	12			29	10	51	49.0
1985		59	55	12			28	15	55	43.6
1986		49	48	14			10	24	48	56.3
1987		47	46	10			9	27	46	34.8
1988		55	54	16			12	26	54	63.0
1989		121	115	29			35	51	115	52.2
1990		159	156	42			43	71	156	59.0
1991		220	216	52			48	116	216	48.1
1992		381	362	81			79	202	362	55.2
1993		423	413	132			96	185	413	56.2
1994		541	534	162			127	245	534	56.2
1995		528	499	111			150	238	499	52.1
1996		556	546	129	2	7	169	239	546	53.1
1997		490	478	161	10	5	79	223	478	61.3
1998		602	597	226	14	10	97	250	597	59.6
1999		641	612	244	11	18	102	237	612	59.6
2000		607	591	198	10	15	66	302	591	63.6
2001		659	639	229	6	23	132	249	639	62.3
2002		511	502	182	18	17	62	223	502	62.4
계		6,868	6,672	2,091	71	95	1,426	2,989	6,672	57.6

중재부별 중재신청건수

()안은 %

연도 \ 중재부	신청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4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2001	659	428	21	18	32	19	62	9	16	36	17	1
2002	511	307	15	14	39	16	45	7	16	25	20	7
계	6,868	4,283 (62.4)	341 (5.0)	215 (3.1)	368 (5.4)	214 (3.1)	606 (8.8)	122 (1.8)	203 (3.0)	242 (3.5)	219 (3.2)	55 (0.8)

I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1심)

()안은 0인

연 도	제소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류
1981	4		2		2		
1982	3	2	1				
1983	7	4	2			1	
1984	8		4			4	
1985	12		2		1	9	
1986	2	1				1	
1987	4	1				3	
1988	7	3	1			3	
1989	10	7	1			2	
1990	12	3	2	2	1	4	
1991	6	3	1			2	
1992	33	4	11		3	15	
1993	20	9	2	3	1	5	
1994	30	14	1		2	13	
1995	53	20	14	1	4	14	
1996	30	9	1			20	
1997	10	5	3			2	
1998	22	15	2			5	
1999	31	21		2		8	
2000	8	4	1		1	2	
2001	37	17	9		2	9	
2002	12	8				2	2
계	361	150 (41.6)	60 (16.6)	8 (2.2)	17 (4.7)	124 (34.3)	2 (0.6)

Ⅲ. 시정권고 현황

()안은 %

연 도	구 분 시정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간 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침해		일 간 신 문	주 간 지 / 주간 신문	월 간 지	통 신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계	3,998	667 (16.9)	127 (3.2)	1,386 (34.7)	737 (18.4)	228 (5.7)	1 (0.1)	818 (20.5)	24 (0.6)	3,823 (95.6)	34 (0.9)	12 (0.3)	129 (3.2)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현황과 과제

장 하 용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최근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관심사로 떠오른 분야 중의 하나는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보도매체의 성장과 영향력의 확대일 것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준 인터넷의 위력은 기존의 매스 미디어와 비견될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인터넷이 가지는 속보성과 심층성, 그리고 상호작용성을 무기로 인터넷 보도매체들은 기존의 기사 작성 관행과 전달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론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또는 온라인 저널리즘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터넷 전용 보도매체의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현상 때문이다. 우선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인터넷의 사용 자체가 엄청나게 확산되었다. 인터넷 강국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초고속 인터넷의 사용자가 현재 2,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다.²⁾ 이러한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자 층이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비견될 정도로 충분히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의 미디어로서 인터넷 매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의 발달이다. 인터넷이 보급되는 초기의 온라인 보도매체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신문, 방송 사이트

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그 내용도 기존의 보도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공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인터넷 전문 보도매체의 경우도 그 숫자가 몇 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을 비판적으로 패러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을 비롯한 순수한 인터넷 전용 시사보도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들의 이용 빈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저널리즘이 언론보도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보도매체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 저널리즘의 보도윤리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즉 속보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취재능력과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인터넷 보도매체의 경우, 기존의 매스 미디어 보도 영역에서 문제가 되어왔

1) 2001년 11월의 시사저널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전용 시사신문인 '오마이뉴스'는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에서 영향력 8위의 매체로 선정되었다.

2) 2002 국가 정보화 백서, 한국전산원.

던 윤리문제와는 다른 성격의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경우, 자신이 다른 신문사의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온라인상에 또 다른 기사를 작성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와 보도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의 언론보도윤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물론 사실(fact)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이나 이슈의 주요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동시에 의도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론보도의 윤리 원칙은 온라인 저널리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Arant & Anderson, 2001). 그러나 온라인 저널리즘의 매체적 특성은 이러한 보도의 원칙이 종종 무시되거나 경계가 흐려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Deuze & Yeshua,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언론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 보도 매체에서 윤리적인 문제

점이 나타나는 원인과 현황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매체와 인격권 침해에 관한 쟁점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보도 매체가 저널리즘 영역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뉴

인터넷 보도매체는 기존의 뉴스생산과 소비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스생산과 소비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전문훈련을 받은 직업기자가 뉴스 생산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모든 시민이 뉴스 생산자가 되었으며, 뉴스의 가치도 시민기자가 판단하고 그 내용도 사적(私的)인 경험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사의 취재범위도 폐쇄적

인 기자단을 벗어나 기사거리가 있는 모든 곳으로 확대되었고, 기사의 길이와 형식도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사에 대한 피드백 역시 매우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진다(오연호, 2002).

사실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가 가지는 뉴스생산 양식의 파괴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소수의 언론사에 독점되어 왔던 한국의 언론상황에서 언론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장호순, 2002).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저널리즘의 개방적이고 분산화된 뉴스 생산 방식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제도의 미비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생한 소위 '민주당 살생부'라고 불리는 사건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가지고 일반 언론사에 적용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와 전자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가를³⁾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터넷 보도매체에 의한 인

3) 김창룡, 2003년 2월 4일 경향일보 칼럼.

격권의 침해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인터넷 매체 자체가 정기간행물법상의 출판물이나 정기간행물,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넷 언론매체는 현행 법상으로 '서비스/도소매' 종목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 신문사가 뉴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지만, 이경우도 언론관계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의 틀에 놓이게 된다(이재권, 2001).

따라서 인터넷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해서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불확실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정기간행물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소송 대상이 된다. 반면에 인터넷의 경우는 정보의 게시를 담당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ervice provider)가 되는지, 아니면 게시자가 되는지, 또는 양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인터넷 보도매체의 경우 기사는 실명으로 게재되지만, 이에 대한 댓글 또는 독자의견은 익명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익명

의견의 실제 게시자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익명 게시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 인터넷 보도매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 지 논란이 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런 측면 말고도 인터넷의 경우 더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최초의 게시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게시물을 이차적으로 유통시킨 사람들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인터넷이 가지는 기술적 속성상 정보의 유통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차적인 전달자의 경우도 최초의 게시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터넷 보도매체의 언론윤리 현황에 대한 평가

인터넷 매체의 보도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정확성과 신속성 사이의 균형문제이다. 온라인 매체가 오프라인 매체와 차별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능한 빨리 사이트에 올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뉴스가치에 대한 판단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

이 크게 된다. 클린턴 성추문에 대한 폭로 보도를 통해서 유명해진 온라인 사이트인 Drudge Report의 편집장인 Matt Drudge도 어느 초청 모임에서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신의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80% 정도만이 정확하다고 한다(Regan, 1998).

이런 측면에서 순다(S. S. Sundar)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뉴스의 독자들은 같은 것이라도 정보원의 인터뷰나 출처를 밝히는 뉴스를 더 신뢰하고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다(Sundar, 1998). 반면에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사는 정보의 출처, 특히 원정보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정보원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나 취재를 통해서 작성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기사와 같은 수준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부정확한 기사에 대한 인터넷 보도매체의 대응이 가지는 한계에 있다. 오보나 인격권 침해적인 기사가 발생한 경우, 오프라인 매체들은 발행주기에 따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반면에 인터

4) 현재까지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인격권 침해의 소지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방치했거나 당사자의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2002년 대전지방 언론중재위원회 토론문).

넷 보도매체들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은 이를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것이다(Arant & Anderson, 2001). 그러나 온라인 기사는 누구나 매우 쉽게 복사가 가능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보를 정정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인터넷망을 통해 퍼져나가게 된다. 오보의 발생은 엔터를 치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수정도 즉시 가능하지만, 오보의 복제와 전파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결국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에서 시행하는 정정기사와 같은 수단은 실효가 없거나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재권, 2001).

이러한 신속성에 대한 압박은 인터넷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취재 시스템의 취약함과 결합되어 부정확하거나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의 생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001년 언론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평균 종사자수는 15명이며, 취재 인력은 평균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이러한 인터넷 매체들의 인력 부족은 비용과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심층취재나 기획기사의 작성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혼자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기사의 취재와 작성이 이루어지는 개인 저널리즘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시에 인터넷 매체들은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기존 매체들에 비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오

비전문 시민기자들이 작성한 정보에서는 정확한 사실검증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마이뉴스' 기자의 인천국제공항 기자실 출입금지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은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기존 매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⁶⁾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은 인터넷 보도매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기자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보도매체들의 기사는 자사의 취재인력이 작성한 자체기사와 시민기자들이 제공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자로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의 받지 않은 비전문 시민기자들이 작성한 정보에서는 정확한 사실검증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황용석, 2003).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의 경우, 편집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기사를 '생나무' 기사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비록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작성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나무 기사에 대한 인격권 피해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게시장소와 열람기회를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 제도의 정비와 의식의 제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보도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이용방식은 기존의 대중매체

5) 오수정, 홍승희 (2001), 한국의 인터넷 신문: 실태와 과제, 한국언론재단.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마이뉴스'의 기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실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며, 2001년 8월 법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의 기자실 출입과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와는 다른 형태의 저널리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확대와 시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속보성에 대한 압박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재 여건으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행법상 인터넷 보도매체는 정간법상의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론 보도청구권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같은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 유일한 수단은 법정소송밖에 없는데, 취약한 인터넷 보도매체들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몇 억 정도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 존폐기रो에 놓일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넷 보도매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정간법을 개정해서 언론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정기간행물의 규제를 받는 언론사로 인정하는 것이다(김재영, 2003; 이효성, 2003). 이럴 경우 인터넷 언론사들은 법적인 지위와 지원(예컨대 세제상의 혜택이나

언론교육기관의 교육 기회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동시에 정식 언론사로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간법의 개정을 통한 인터넷 매체의 위상 정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인터넷 매체의 보도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는 인터넷뉴스미디어협회와 같은 기구에서 언론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인 심의와 규제를 하는 방안이다. 물론 기존의 매스미디어들의 예에서 보듯이 자율적인 규제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현재와 같이 자체 윤리강령을 가진 인터넷 매체들이 거의 없는 상황⁷⁾에서는 일정 정도 내적인 규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시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보도매체들은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보나 명예훼손적인 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화면의

한쪽에 정정 및 반론을 위한 고정코너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접속자들은 정정된 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다. 바르도엘(J. Bardoe)은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능적인 정보의 수집과 편집 능력이 아니라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강조되는 해석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배양이라고 말한다. 즉 지리적, 물리적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현실에서 저널리스트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지휘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에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 기능보다는 많은 뉴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안내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ardoe, 1996, 2002).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온라인 저널리즘이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다는 식의

7) 오수정, 홍승희 (2001), 한국의 인터넷 신문: 실태와 과제, 한국언론재단.

자세를 가지고 있다(Pogash, 1996).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저널리즘 영역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제모습을 찾기를 기다리기는 어려울 만큼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한 언론학자의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충고는 음미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⁸⁾

1) 속도를 줄여라: 독자들은 누가 첫 번째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우선이다.

2)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을 거부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잊어버려라.

3) 본업으로 돌아가라: 유명인의 하찮은 사생활을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독자들은 좀더 중요한 뉴스를 원한다.

4) 자화자찬은 그만 두자: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5) 독자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신뢰하라: 독자들은 중요한 사건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짜 뉴스로 돌아가라.

6) 그저 실천해라: 저널리즘

의 문제를 불평하지 말고 자신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참고문헌

- 김재영 (2003). "정간법 제2조에 근거 규정을: 위상강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호.
- 오수정, 홍승희 (2001). "한국의 인터넷 신문: 실태와 과제", 한국언론재단.
- 오연호 (2002). "인터넷 언론과 한국사회", 제14회 미래전략포럼 발표문.
- 이재권 (2001). "온라인 신문의 오늘: 평가와 과제", 언론개혁 시민연대 토론회 발표문.
- 이호성 (2003). "온라인 저널리즘의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론정보학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 장호순 (2002). "인터넷 언론의 경쟁력", 『관혼저널』, 83호, 181-188.
- 황용석 (2003). "이슈지향적 정보원 다원화, 미디어 의제 필터 구실: 시사형 인터넷 언론의 특성", 『신문과 방송』, 2003년 2월호.
- Arant, M. D. & Anderson, J. Q. (2001). Newspaper online editors support traditional standard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2, 57-69.
- Bardoel, J. (1996). Beyond Jou-

rnalism: A profession between information society and civil society,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1, 283-302.

Bardoel, J. (2002). The internet journalism and public communication policies, Gazette, 64, 501-511.

Deuze, M. & Yeshua, D. (2001). Online journalists face new ethical dilemmas: Lessons from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4(4), 273-293.

Fiedler, R. (1997). Looking ahead by looking backward, American Journalism Review, 19, 46-47.

Pogash, C. (1996). Cyberspace journalism, American Journalism Review, 18, 26-32.

Regan, T. (1998). On the Web, speed instead of accuracy, Nieman Reports, 52, p. 81.

Regan, T. (1998). On-line profits from news must wait, Nieman Reports, 52, p. 71.

Sundar, S. S. (1998). Effect of source attribution on perception of online news stori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 55-68.

8) Regan, T. (1998). On the Web, instead of accuracy, Nieman Reports, 52, p. 81에서 재인용.

입장이 관점을 만든다

윤 재 윤

서울제3중재부장·서울지법 부장판사

어려운 사건을 판단할 때마다 나 자신이 과연 그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관점을 가졌는지 자문하곤 한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관점의 문제에 관하여 20여 년 전 사법연수생으로 시보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을 법관으로서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먼저 검찰청에서 4개월 간 검사직무대리를 하였다.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밝혀 기소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레 피의자의 자백을 선호하게 되었고,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마음이 급해졌다. 짧은 검사시보 생활이었음에도 차츰 관심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것인가에 모아졌고, 피의자의 변명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검사직무대리를 마친 후에는 법원으로 옮겨와 6개월 간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를 맡았다. 구치소에서 피고인들을 면담한 다음 법정에서 변호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이를 계속 할수록 피고인의 처지에 동정심이 생기고 검사의 기소내용에 불만이 커졌다. “이러한 사소한 행위를 구속하여 기소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구형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겁이 나서 자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검사들이 이를 너무 싫어한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에 대하여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런 생각은 검사직무대리로서 가졌던 생각과는 정반대였는데 나도 모르게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에 관하여 단순하지만 중요한 통찰을 한가지 할 수 있었다. 검사의 생각과 변호사의 생각이 판이하게 다른 것은 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관점은 그의 입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소추를 업무로 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숨겨진 사연 등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갖추기가 어렵고, 정반대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엄정하게 피고인의 범죄를 평가할만한 관점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즉 각자가 처한 입장이 각자의 관점을 결정하는 것이며 인간은 여간해서는 이러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심리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이는 개인적인 성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내지 한계로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영민한 검사나 변호사라도 평범한 판사 보다 사건을 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무상 입장 차이 뿐일까? 유산층과 빈곤층 사이의 경제적 계층차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적 입장 차이,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정서적 입장 차이.

보도의 취지가 옳더라도 신청인 나름대로의 항변을 인정해야

그리고 개인적인 심리적, 무의식적 경험에 따른 심리적 차이 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차이가 있다. 그 입장에 따라 의견이 판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 재판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한 당사자나 심지어는 검사, 변호사를 보게 된다. 별로 유리할 것이 없는 당사자가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맹렬히 비난하는 경우를 보면 참으로 답답해진다. 얼마 전 지역신문과 구청사이에 벌어진 언론중재심리에서는 반론보도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자치를 내세우는 기자는 자기가 한 보도의 취지가 옳다고 계속 강변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보도의 취지가 옳더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항변이 있는 법인데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차원의 의사소통에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언론분쟁사건에서는 특히 사회적 입장차이가 선명히 부각된다. 상당수의 언론분쟁사건의 밑바닥에는 진보적 계층과 보수적 계층 사이의 견해대립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인다. 각자의 입장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서 갖가지 의견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우리사회는 새로운 역사의 분수령으로 접어든 것 같다. 그러나 입장과 관점의 차이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각 계층 간의 충돌현상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된다.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대신에 무조건 비난하며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로 옳다는 식의 완고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다른 의견에 대한 이해와 허여(許與)가 패배로 이어진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의 집단무의식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닐까? 대립자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어려울 정도의 옹졸함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지?

개인이나 사회계층 사이의 의사소통이 차단되는 차가운 벽을 보게 될 때마다 일종의 절망감을 느낀다. 가장 딱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의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사회를 약하게 만들기 십상이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삶의 다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그와 같이 독선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된다.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 아닌가.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쟁하는 칼 소리가 들릴 것같이 날카로운 의견대립으로 가득 차있는 요즈음이다. 의견은 관점에서 나오고, 관점은 입장에서 비롯된다. 어느 의견에도 입장에 따라 일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자네 말이 옳네”를 세 번 거듭한 황희 정승의 삼시론(三是論)이 절실하게 생각나는 이 시점이다.

외국에서 발송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내국인의 제소는 적법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대법원 판결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대법원은 2002년 12월 10일 미국 다우존즈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사를 둘러싼 명예훼손소송에서, 외국으로부터 발송된 정보라도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디어의 국제화 추세에서 각국의 인터넷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외국으로부터 발송된 뉴스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관해서는 수신국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신국 이외에서의 제소는 사실상 무효로 간주되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웹사이트상의 기사에 관한 이러한 사법판단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제소자인 멜버른의 사업가 조셉·구드니크씨는 다우존즈사가 발행하는 잡지 바론즈가 2000년 10월 인터넷에 그의 비즈니스 기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법원에 제소했다.

다우존즈사는, 기사는 미국의 서버로부터 발송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외에서의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유효성이 연방대법원에서 다투어진 끝에 대법원은 기사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람될 수 있는 한 동국의 사법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발송하는 유럽·미국의

매체들은 이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CNN, 로이터통신 등 18개사는 다우존즈사를 지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新聞協會報』, 2002년 12월 17일자) □

법원의 허가 없이 법정내 피고의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게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 일본 大阪고등법원 판결 -

大阪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2년 11월 21일 和歌山시 독곡물카레사건의 林 眞須美 피고가 자신의 법정내 사진과 일러스트를 게재한 사진주간지 『FOCUS』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新潮社와 동사의 사장, 담당 임원 등을 상대로 2천2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220만엔 감액한 44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FOCUS』는 1999년 5월 26일호에서 “법정을 비웃는 ‘眞須美’의 독카레 첫 공판, 이 ‘怪物’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허가 없이 촬영한 법정내의 林 피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또 동년 8월 25일호에는 “‘초상권’으로 제소한 ‘林 眞須美’씨에게 그림이면 어떨까?” 등의 제목으로, 법정에서의 피고의 일러스트와 곁들여 林 피고가 5월 26일호의 기사에 대해 新潮社를 상대로 제소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2002년 2월의 1심 판결에서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인정, 660만엔의 지불을 명했으나 2심에서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기사에 대해 1심이 “강한 악의가 느껴진다”고

지적인 부분을 삭제하면서 배상액을 감액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12월 3일자) □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비판했다라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허위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명예훼손 불성립

자사의 신문 기사를 왜곡, 인용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일본경제신문사가 출판회사 晶文社와 저자인 砂川幸雄 씨를 상대로 출판금지과 2천만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東京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2002년 11월 27일 “인용은 전체적으로 정확하며 일본경제신문의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주고있지 않다. (일본경제신문의 기사를 비판한 부분도) 인신공격에까지는 미치지 않으며 의견 내지 평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1심인 東京지법 판결을 지지하여 일본경제신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의하면 砂川 씨는 2001년 3월에 출판한 저서 『運鈍根의 사나이 古河市兵衛의 생애』에서, 1999년 5월 10일자 일본경제신문 조간 기사 “20세기 일본의 경제인 도전편 ‘伊庭貞剛’을 인용하면서 동기사가 사실과 다른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田中正造의 전략적인 엉터리 이야기까지 진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등 일본경제신문사를 비판했다. 이에, 일본경제신문사는 저작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했다.

1심인 東京지법은 2002년 3월 “인용이 전체

적으로 정확성을 잃고 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도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번역자 주 : 위 기사 중 『運鈍根의 사나이...』의 運鈍根은 運根鈍이라고도 하며, 운명에 순종하고, 인내성과 끈질김을 가질 것이며, 너무 꺾바르게 굴지 않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

(『新聞協會報』, 2002년 12월 10일자) □

주간지가 피살된 교수의 부인사진을 연속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

-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판결 -

최고재판소 제3법정은 2002년 11월 26일 미국 샌디에고의 일본인 교수 피살사건을 보도한 『週刊文春』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피살된 교수의 부인 齋藤靜江 씨가 발행사인 문예춘추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문예춘추에 35만엔의 지불을 명한 東京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週刊文春』은 1996년 5월 23일호부터 4주 연속으로 원고에 관한 그라비아기사·사진 등을 게재했다.

1심 법원인 東京지법은 1998년 9월 “기사는 명예를 훼손하고 사진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문예춘추에 1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또한 2심인 東京고법은 2000년 4월 “기사는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 않으나 사진은 정당한 표현행위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35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12월 3일자) □

러시아 푸틴 대통령, 국민의 알 권리 규제하게 된다는 이유로 미디어법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02년 11월 25일 테러사건 등에 관한 미디어의 보도를 대폭적으로 규제하는 미디어법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근거 없이 규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모스크바의 극장점거사건을 계기로 여당의 찬성으로 상하양원을 통과, 대통령의 서명만 끝나면 발효토록 되어있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내외에서 강하게 나타난 보도통제라는 비판을 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안은 테러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범인의 성명(聲明)이나 반테러 작전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규제대상이 애매하고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외 저널리스트 단체가 대통령에게 서명거부를 진정해왔다.

한편 대통령은 상하양원 의장에게 마스크대표를 참가시켜 법안을 재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통보했다.

푸틴 대통령은 크레믈린에서 미디어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극장점거사건의 강행돌입 직전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방영한 TV방송국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보의) 제한과 성실한 보도와의 밸런스'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12월 3일자)



일본정부가 재판원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사건·재판보도 규제가 논점으로 제기되자 언론계가 긴장, 대응책 부심

일본정부가 최근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재판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재판원으로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예단(豫斷)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도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와 일본 언론계는 이를 보도에 대한 법적 규제 움직임으로 보고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재판원제도는 무작위추출로 선임된 일반시민이 재판관과 함께 중대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인데 재판원이 되는 시민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사고 등의 취재나 보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재판개시 전에 보도를 통해 재판원이 유죄 등의 예단을 갖게 될지도 모르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일본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내 「재판원제도·형사검토회」(이하 검토회로 한다)에서 검토가 진행중인 새 법안은 2001년 가을부터 3년 시한부로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02년 말까지 제8차 회의를 거듭한 검토회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재판원을 보호하는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필요하다", "취재나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사건에 관한 보도라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재판원에 대한 취재 혹은 재판원의 개인적인 정보에 관한 보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판원에 대한 직접취재가 잇따를 경우 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보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재판원에 대한 취재나 개인정보의 보도자세와 관련해서는 별척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재판원 혹은 재판원 후보자와 취재목적으로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들이 미디어와 관련된 논점으로 제기되었다.

검토회는 사무국으로부터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증거개시(開示)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받아 외국의 재판보도 규제현황을 참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 「1996년 형사수속 및 범죄수사법」 등 ‘보도규제’ 항목을 둔 법률 등도 포함되어 있다.

검토회는 2004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2003년 여름까지는 이 제도의 골격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新聞研究』, 2002년 11월호)



미국 · 유럽 여러 나라들의 재판보도 현황

〈미국〉

원칙적으로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정보는 자유로이 보도할 수 있다. 보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재판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보도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이나 변호사에게 보도관계자와 대화를 하지 않도록 명령하기도 하고 법정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미디어의 주목을 집중시킨 사건에서도, 보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배심원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O·J·심슨 씨 사건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심슨 씨는 부인과 한 남성을 살해했다는 혐

의로 체포되었다. 재판은 TV로 중계되었으며 그의 유죄를 시사하는 기사가 대량으로 보도되었으나 1995년 10월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에서는 법정 내 카메라취재가 금지되어있다. 주 법원에서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재판관이 그때그때 판단하여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은 명확하고 절박한 위기가 있거나, 사법행정상 긴박한 위험이 없는 한 보도를 금지할 수 없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사전에 심사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텍사스주 오스틴지방법원은 2000년 4월 4일 한 기업의 채무기록을 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한 AP통신 기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동 법원은 비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등 당사자들로부터 증언청취 후 4월 14일 정보는 적법하게 공개되었다고 판단, 명령을 철회했다.

한편 뉴저지주 대법원은 2002년 4월 22일, 기자의 배심원 접촉과 배심원의 이름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군(郡)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름을 보도하는 것은 허가했으나 배심원 접촉을 금지한 명령은 지지했다.

『필라델피아인콰이어러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하급심의 명령을 무시하고 배심원의 이름을 보도하여 담당 기자는 법정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1천달러(약12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영국〉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재판이 공개되며 언론은 이를 자유로이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

아야 할 당사자의 권리를 배려하여 역사적으로 재판보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중대한 형사사건은 관례법(Common law · 관습법) 등으로 보도가 규제되고 있으나 1981년에는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협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정모욕죄의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한 법정모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체포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에게 예단(豫斷)을 줄 만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법정모욕죄의 성립은, 소송이 현저하게 방해받는지, 예단편견을 받는 등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재판관이 판단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언론이 배심원을 상대로 한 취재나 배심원실에서의 논의를 보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재판관은 법정모욕법에 의거, 심리를 연기할 수도 있고 심리 중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이나 사안에 관해 보도금지를 할 수도 있다.

2000년 1월 아시아계 청년을 폭행한 혐의로 2명의 프로축구선수가 체포되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영국 대표선수였기 때문에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선데이미러지는 판결 전인 2000년 4월 8일 피해자 부친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그 보도 후 재판관은 재판을 일시 연기했으며, 정서적인 인터뷰는 편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02년 4월 19일 법정모욕법에 의거하여 7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정모욕법과는 별도로 Common law에 의한 법정모욕죄의 룰도 있다. 1988년에는 『선』지가 Common law에 의거, 법정모욕죄를 선고받고 7만5천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졌다. 자신의 자식

이 유명 의사에 의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에게 소송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녀와 독점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제공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심리중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Common law에 의해 재판되었다.

영국의 재판보도규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영국편집인협회는 재판관들과 협력하여 2000년 5월 재판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다짐이 있다. “언론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보도를 장려하는 직업규범을 준수한다.”

〈독일〉·〈스웨덴〉

법에 의한 보도규제 보다는 보도기관들의 제3자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 쪽을 택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사건보도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다만 소송과정의 TV촬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에 의한 보도규제가 없는 대신, 독일보도평의회는 강령은 사고, 범죄수사, 재판과정의 보도에 관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이름·사진의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표해야 할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당사자의 인격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의 룰이 완전하게 준수되고 있지는 않다.

스웨덴에도 재판보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고 범죄보도의 경우 익명으로 보도하도록 보도평의회가 자율적인 룰을 정해놓고 있다. 자율규제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新聞協會報』, 2003년 1월 28일자·2월 4일·11일자) □

미국 국방부 이라크전 앞두고 기자들에 취재원 접근 완화

한 달 내에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 국방부를 취재하는 많은 기자들은 이라크전에 대한 정보와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취재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개선된 액세스권 보장은 정보의 개방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전쟁과 관련된 홍보성향이 강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실 많은 기자들은 군에 대한 언론의 액세스권 보장의 확대는 기자들의 취재를 도와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군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의 정책에 대한 액세스권 보장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던 국방부 대변인 Bryan Whitman은 국방부는 기자들이 군사행동에 대해 가능한한 가까이 취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E&P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있었던 액세스권보다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 겁니다. 확실히 아프가니스탄 때보다는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조항이 아닌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자들에게 기회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군부대에서 군을 취재했던 일부 기자들 또한 제한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의 군 취재기자들은 군의 열린 태도가 걸프전과 지난해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언론사의 혼재된 기사 게재로 인한 후유증을 개선하고 이라크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기자들은 아직까지 정보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액세스권의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국방부와 의 긍정적인 관계가 이라크전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회의적이다.

(『E&P』, 2003년 1월 6일자) □

연예인의 불륜관계 등을 다른 보도는 그들이 공적 지위에 있지도 않고 공공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

배우 川崎麻世 씨가 연극배우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집필자인 梨元勝 씨와 東京스포츠신문사를 상대로 사죄광고의 게재와 1천1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東京지방법원 민사 제4부는 “기사에 공공성이 없으며 확실한 근거도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 피고들에게 11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한편 사죄광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東京스포츠』는 2001년 2월 14일자에 “이것이 결정적 증거사진이다. 梨元勝가 입수” 등의 제목으로 “川崎의 ‘東京妻’가 발각되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川崎 씨는 공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기사에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梨元 씨는 당사자에 대한 취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정보를 종합해 보아도 川崎 씨로 보도된 배우에게 불륜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둘러싸고 연극배우 측에서도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東京스포츠』와 梨元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02년 7월 25일 東京지법에서 340만엔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新聞協會報』, 2002년 11월 19일자) □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스·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단체의 간부들이 예산을 편법 으로 집행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3부산중재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삼익비치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류 재 성)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3. 1.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국제신문 : 『입주자 대표들이 예산 전횡』 제하
의 기사 (2003년 1월 8일자 31면)

내 용 :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가 주민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S아파트(34개동, 3
천60가구)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일

부 간부들이 20여 년 동안 번갈아 회장직을 맡
으면서 주민들 몰래 거액의 공사를 진행해 부
당이득을 챙겨왔다는 것.

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
을 수선하거나 개량할 때 공사비가 5천만원이
넘을 경우 발주 전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입주자에게 홍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비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회장이 직권으로 발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D산업에 용역을 줘 7천5백90만원짜리 보
일러 교체 공사를 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무시
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옥상방수공사 전기공사 등 대형공
사를 하면서 전체 공사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공사비를 5천만원 이하로 나눠 부분적으로 공
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감시를 피해왔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부
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모든 내용을 투명하
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예산이 많이 남아 물의가 없으며, 주민
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공사비 등의 공개를 요

구할 경우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삼익비치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3년 1월 8일자 국제신문 31면 『입주자 대표들이 예산 전횡』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을 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S아파트(34개동, 3천60가구)라고 기재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에 있는 3,060세대인 삼익비치타운아파트를 적시하였으며 기사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사실인즉, 피신청인 신문의 담당 기자는 기사내용과 같은 취재를 신청인에게 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가 해명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취재의 사실 또한 없으며, 신청인의 사무실이 있는 관리사무소를 방문 취재한 사실이 없다.

기사내용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2월 D산업에 용역을 줘 7천5백90만원짜리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보일러수관 교체공사는 수년간 예산에 책정되었으나 아파트 사정상 예산이 수년간 이월되어오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02년도 예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을 거쳐 책정되어 있는 공사로서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2002. 11. 20.자 부산일보 14면에 입찰공고를 내고 2002. 11. 29.자에 관리사무소에서 5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동양열산업(주)에 75,900,000원에 낙찰된 공사이다. 그리고 옥상방수공사 및 전기공사의 전체 공사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전체 공사부분은 이미 2001년과 2002년도에 공개가 된 부분이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을 업무상 횡령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에 대한 사실 취재도 없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예산이 많이 남아 물의가 없으며, 주민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공사비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임의 작성한 기사로서 예산이 많이 남아 집행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보도에 의하여 전체 아파트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명예선출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입주자대표들을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아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국제신문이 지난 1월 8일자 31면에 『입주자 대표들이 예산 전횡』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는 등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S아파트(34개동, 3천60가구) 주민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간부들이 20여 년 동안 번갈아 회장직을 맡으면서 주민들 몰래 거액의 공사를 진행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것. 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을 수선하거나 개량할 때 공사비가 5천만원이 넘을 경우 발주

전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입주자에게 홍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비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회장이 직권으로 발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D산업에 용역을 줘 7천5백90만원짜리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옥상방수공사 전기공사 등 대형공사를 하면서 전체 공사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공사비를 5천만원 이하로 나눠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감시를 피해왔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예산이 많이 남아 물의가 없으며, 주민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공사비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 삼익비치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류재성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힌다.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 아파트 예산의 집행은 관리규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사내용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2월 D산업에 용역을 줘 7천5백90만원짜리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보일러수관교체공사는 2002년도 예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되어 있는 공사로서 아파트 사정상 예산이 수년간 이월되어 오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2002. 11. 20.자 부산일보 14면에 입찰공고를 내고 2002. 11. 29.자에 관리사무소에서 5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동양열산업(주)에 75,900,000만원에 낙찰된 공사이다. 그리고 옥상방수공사 및 전기공사의 전체 공사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러한 전체 공사부분은 이미 2001년과 2002년도에 공개가 된 부분이다. 또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간부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명예선출직인 입주자대표들의 권한과 의무를 모르고 작성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번갈아 선출될 수 없는 사항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삼익비치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류 재 성

합의사항

- 제 목 : S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8일자 31면에 『입주자 대표들이 예산 전횡』 제하의 기사로 남천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수십억의 예산을 편법 집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옥상방수공사 등 대형공사를 하면서 공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비를 부분적으로 나눠 공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또한 예산을 전횡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 역시 없다. 당 아파트 예산의 집행은 관리규약에 의거해 신문에 입찰공고를 내고 주민들에게는 인터넷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를 내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3년 1월 2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제신문 사회2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이견 중재대상기사 부제목(남천동 S아파트 주민들...)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제신문 : 『S아파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1월 18일자 2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돈암동 돈암5구역이 재개발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윤 일 석 외 60인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3. 1.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서울경제 : 『돈암5·성남 올림픽아파트 금호 재
개발·재건축 수주』 제하의 기사
(2002년 12월 10일자 33면)

내 용 : 서울 성북구 돈암동 '돈암5구역' 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올림픽아파트가 각각
440가구와 690가구의 아파트로 재개발·재건축
된다. 금호건설은 최근 열린 이들 사업장의 조
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돈암5구역은 지하철4호선 길음역 인근에 위
치한 곳으로 지상 10~15층 아파트 8개 동 규
모에 13~42평형 아파트 440가구로 재개발될
예정. 이중 조합원 배정물량과 공공임대 아파
트(13평형)를 제외한 154가구가 오는 2004년

초 일반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아파트는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 인근
의 단지로 기존 13~20평형 460가구가 24~40
평형 690가구로 재건축된다. 금호건설은 내년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2004년 2월께 130가구
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윤일석 외 60인은 보도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언급된 돈암동 13번지
지역 주민들로서 서울경제신문 2002년 12월
10일자 33면 『돈암5·성남 올림픽아파트 금호
재개발·재건축 수주』 제목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이 보도한 내용을 구청, 시청에 확
인한 바, 돈암 5구역은 건축후 경과년수가 20
년 미만인 건축물이 약 59%로서 현 규정상
재개발 지구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
이라고 확인되었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2002년 12월 10일자 33면에 보
도한 『돈암5·성남 올림픽아파트 금호 재개발
재건축 수주』 제목하의 보도내용에서 “지상
10-15층 아파트 8개동 규모에 13-42평형 아파
트 440가구로 재개발될 예정. 이중 조합원 배
정물량과 공공임대아파트(13평형)를 제외한
154가구가 오는 2004년 초 일반분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본지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보도한 돈암 5구역은 재개발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된 구역이며 상기
구역은 재건축 경과년수가 20년 미만인 건축

물이 약 59%로서 현 규정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임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2년 12월 10일자 33면 『돈암5·성남올림픽아파트, 금호 재개발·재건축 수주』 제목의 기사에서 돈암5구역이 아파트로 재개발되어 15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고 금호건설이 그 시공자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돈암5지역 주민 윤일석 외 60인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미 위 구역을 재개발 대상범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통보한 바 있고, 위 구역은 20년 미만의 건축물이 약 59%로서 현 규정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으므로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2003년 1월 23일까지 3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의 제목(돈암5·성남...)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1월 23일자 2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삼성 타워팰리스 건축 및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의 내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1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임 채 정)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3. 1.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 제하의 기사 (2003년 1월 14일자 A1면)

내 용 :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박영관)는 13일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의 건축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개 단지로 된 타워팰리스 중 하나가 2000년 당초 설계와 달리 35층에서 69층으로 늘어나고 지난 98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삼성측이 관할구청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타워팰리스의 분양과정에 일부 분양물량이 삼성물산 직원 등의 명의로 빼돌려져 유력인사들에게 특혜분양됐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첩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혐의는 한 가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내사를 착수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2) 『타워팰리스 내사 ‘삼성 손보기’ 인가』 제하의 기사 (2003년 1월 14일자 A3면)

검찰이 서울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의 분양 및 인허가 과정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경련 관계자의 ‘사회주의자’ 발언 등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계의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새 정부가 삼성을 재벌개혁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터라, 재계에선 이번 내사가 ‘삼성 손보기’가 아닌가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부인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우선 내사 착수 시점이 미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7일쯤 강남구청 건축과에 타워팰리스의 인·허가 자료를 요청했고 사흘 뒤인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은 인수위의 재벌정책이 삼성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즈음이다.

삼성측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타워팰리스는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았지만 부지는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중공업의 소유이다.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룹 전체 이미지가 손상될 것으로 삼성측은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착공한 지 4년이 경과한 타워팰리스에 대해 뒤늦게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삼성, 더 나아가 재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타워팰리스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은 두 가지. 삼성물산이 타워팰리스를 분양하면서 직원 등의 명의로 물량을 빼돌린 뒤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특혜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하나. 삼성측은 99년 분양 당시 일반에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마케팅을 펼쳤다.

또 하나는 지난 98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고, 2000년 3차 타워팰리스의 건축허가 총수가 기존의 35층에서 69층으로 늘어난 과정에서 관계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인수위는 대통령령에 의거,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를 준비하는 곳으로 검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주요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작년 12월 말 출범 이후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혐의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다.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은 현 정권 일로서 새 정부는 출범도 하기 이전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입장에 있지도 않으며, 노무현 당선자나 인수위 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의 내사 사실을 몰랐으며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확인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수위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자”발언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다소간의 공방은 있었으나, 삼성 등 특정재벌 또는 재계 전체와 어떤 갈등관계에 있지 않다.

인수위는 1월 초에도 일부 언론이 새 정부의 '삼성그룹 겨냥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계에 동요가 있자 지난 8일 당선자가 직접 "차기정부는 특정재벌을 겨냥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 등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놓고 기업의 문화로서 자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14일 재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다.

또 인수위는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경영컨설팅(조직 진단)을 받기로 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수위 및 새 정부는 특정그룹과 유착할 필요도 없고 특정그룹을 겨냥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기사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시중의 루머에 의존하여 이번 검찰의 삼성 타워팰리스 수사가 인수위나 노무현 당선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혹은 상호 협의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허위의 보도로서 추측성 작문에 지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단 한 차례도 인수위에 대해 사실확인이나 의견을 물어오지도 않았고 인수위에 반론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에서 마치 인수위가 검찰을 통하여 '삼성 손보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는 양 부풀리기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서 신청인의 명예와 직무의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 제 목 : "삼성 타워팰리스" 수사에 대한 인수위원회 반론보도문

• 내 용 : 조선일보 2003. 1. 14자에서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 『타워 팰리스 내사 삼성 '손보기' 인가』라는 제목으로 마치 새 정부가 삼성을 재벌개혁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터에, 검찰을 통해 삼성 타워팰리스를 내사하였고 이는 '삼성 손보기'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고 약칭함)는 대통령령에 의거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곳으로 검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주요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작년 12월 말 출범 이후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협의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다.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은 현 정부 일로서 새 정부는 출범도 하기 이전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입장에 있지도 않으며, 노무현 당선자나 인수위 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의 내사 사실을 몰랐으며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확인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수위는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자" 발언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다소간의 공방은 있었으나, 삼성 등 특정재벌 또는 재계 전체와 어떤 갈등관계에 있지 않다.

인수위는 1월 초에도 일부 언론이 새 정부

의 '삼성그룹 겨냥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계에 동요가 있자 지난 8월 당선자가 직접 "차기정부는 특정재벌을 겨냥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분리 등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놓고 기업의 문화로서 자율적으로 감당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14일 재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으며,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경영컨설팅(조직진단)을 받기로 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수위 및 새 정부는 특정그룹과 유착할 필요도 없고 특정그룹을 겨냥할 이유도 없다.

반론보도신청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임 채 정

합의사항

• 제 목 : “삼성 타워팰리스 수사 인수위 무관”
• 내 용 : 조선일보는 2003. 1. 14자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삼성 타워팰리스 내사가 '새 정부의 삼성 손보기인가'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곳으로 검찰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작년 12월 말 출범 이후 검찰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고, 협의한 사실조차도 전혀 없다.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은 현 정부의 일로서,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루어진 특정사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입장에 있지 않다. 노무현 당선자나 인수위 관계자 그 누구도 검찰의 내사 사실을 몰랐으며, 취재중에 인수위는 조선일보로부터 어떤 확인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수위는 삼성 등 특정 기업 또는 재계 전체와 갈등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반론보도신청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임 채 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3. 1. 23.자 A3면 우측 상단에 2단 크기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2(“삼성 타워팰리스 수사 인수위 무관”)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부제목(검찰, 인허가 과정...)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삼성 타워팰리스 수사 인수위 무관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1월 23일자 A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육군은 군사재판을 공개된 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16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김 판 규)

피신청인 : 뉴스위크 한국판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3. 1.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뉴스위크 한국판 : 『법보다 계급이 앞선다?』 제
하의 기사 (2003년 1월 22일
자 32~35면)

내 용 :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0
일, 육군 법무감실에는 예하 사단에서 보낸
‘속보보고서’ 한장이 날아 들었다. 철책선을
마주한 육군 제○○사단 법무참모가 보낸 것
이었다. 군사재판에서 현역 중령인 재판장이
군법무관들인 군판사들과의 ‘유죄’ 합의를 무
시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으로써 군 사법권에 정면 도전했다는 내용
이었다. 사건에 대한 소문은 자연스럽게 군법
무관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기무사와 헌병감
실에도 보고됐다. 대한민국 군 사법제도의 문
제점을 낱알이 드러낸 이 사건이 발생한지도
한달 가까이, 수많은 문제점을 뒤로 하고 ‘군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조용히 묻히고 있다.

사회에서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자조하
듯 군대에서는 ‘법보다 계급이 앞선다’고 한
다. 군이라고 해서 헌법이 정한 재판의 원칙
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게 현실이다. 문
제의 군사재판은 헌법에 근거한 군사재판의
신성한 규정(판결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재판관 다수의 찬성
으로 결정하고 재판장은 재판서 내용대로 선
고해야 한다)을 위배하고 나아가 군 사법제도
를 철저히 무시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심
적인 군법무관들은 군인과 법조인으로서의 명
예를 걸고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
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육군 수뇌부측은 군 개혁을 주

장하는 법무관들을 “군을 위해하는 자들”이라
고 비난하며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하고
있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군 내부의 대외비 문건들을 단독
입수했다. 육군 제○○사단 법무참모가 육군
법무감실에 보낸 속보보고서, 육군 법무감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보고용 문건, 그리고
이 사건의 주심판사가 직접 작성한 사건경위
서 등이 그것이다. (중략)

도대체 이날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일까? 이날은 불법 열차려(기합)로 한 사병
(문00 병장)의 청력을 상실케 한 육사출신의
피고인 박○○ 대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죄’ 판결 선고일이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
행돼 판결선고를 위한 합의에 들어갔고 재판
장 1인, 군판사 2인으로 이뤄진 합의부의 평
의 결과 피고인에게는 유죄라는 결정이 내려
졌다. 피고인의 형량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해졌다. 합의부의 평의가 이렇게
결정된 이상 재판장은 당연히 합의대로 선고
해야만 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막상 법정에
들어가서는 제멋대로 무죄를 선고해버린 것이
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간의 실수였을까? 결
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일부 양심적 군법무
관들의 주장이다.

제멋대로 판결을 선도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하면
되는데 징역형을 선고할 때나 쓰는 말인 ‘~
에 처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중략)

제○○사단 법무참모는 곧바로 법무감실에
‘속보보고서’를 보냈고, 법무감은 참모총장에게
올릴 보고서를 만들었다. 현재 이 사건은
입수된 문건의 양식이나 내용으로 비춰 볼 때
군 수뇌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한
문건에는 관련 지휘관인 군 사령관과 육군○

○사단장의 의견까지도 적혀 있다. 이 사건은 일부 방청객과 군 관계자들에 의해 한 시민단체에도 제보가 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당시 재판장을 했던 김중령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처음부터 유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훈련도중 발생한 사고인데 이런 일로 군복을 벗기면 어떻게 군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전쟁을 대비해 훈련을 해야 하는 군 조직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 문건에 따르면 재판장도 한때는 ‘금고 3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한다. 그는 또 “‘귀가 약하다’고 사전에 말하지 않은 본인 과실도 있고 나중에 수표로 2천5백 만원을 다시 지급했는데도 피해자측의 합의 요건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전진한 간사는 “김중령이 그런 선고를 내린 것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사단장 이상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육사 출신의 전도양양한 위관장교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최소한 사단 차원에서의 ‘박○○ 대위 구하기’ 작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비밀에 부쳐 가족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장교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사건을 처리해온 우리 군의 전통이 이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건발생 직후 보고된 사단 법무 참모의 속보는 “○○사단에 확인, (법무)감실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감실은 내내 미루다 올 1월 10일에야 군단과 사단 법무 참모부에만 조사반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이런 미적거리는 대응과는 달리 보고서에서 만큼은 군 법무감도 이번 재판의 문제점을 나

름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법무감은 보고서에서 “소신을 이유로 법률이 정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무감실에서 근본적으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만신창이가 된 군 사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있게 될 부작용만을 염려한다. 보고서는 이 사건을 고작 “군사재판에 대한 민간의 불신풍조 조장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큰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거기에 덧붙여 “언론보도시 군 사법권에 대한 불신 증폭 우려”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으로 검찰관이 항소를 제기해 오류를 시정하고 재판장인 김중령에 대해서는 “입건 조사 후 군사령관님 경고장 수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이 보도한 『법보다 계급이 앞선다?』는 제하의 보도내용은 제보자와 특정 시민단체 일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시킨 편파적이고 왜곡된 기사였으며, 특히 “군대에서는 ‘법보다 계급이 앞선다’고 한다. 군이라고 해서 헌법이 정한 재판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게 현실이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도하였는 바, 이와 같은 왜곡보도는 육군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의 명예훼손과 사기 저하는 물론, 국민의 대군신뢰를 극도로 실추시켰다.

이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2003년 1월 22일자 뉴스위크지(한국판)의 『법보다 계급이 앞선다?』 제하의 기사는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고자 하는 육군의 의지와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달리 왜곡 보도함으로

써 군의 명예 실추는 물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기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육군은 뉴스위크지 보도관련 재판건에 대해 재판장의 법 인식 부족에서 빚어진 일로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해당부대에 재판의 오류를 시정토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위크지 보도는 “군대에서는 ‘법보다 계급이 앞선다’고 한다. 군이라고 해서 헌법이 정한 재판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게 현실이다”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육군이 최소한의 헌법정신마저 무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 왜곡보도였습니다.

특히, 공정해야 할 언론에서 사실확인 없이 특정 시민단체 일원과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마치 육군이 사건의 진실을 의도적으로 무마하려 하거나, 계급에 의해 군 사법체계가 좌우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육군은 금번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육군 수뇌부가 군 개혁을 주장하는 법무관들을 ‘군을 위해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뉴스위크지 보도에서 인용한 육군 법무감실에서 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김중령의 무죄선고가 잘못된 판결이므로 검찰관에 의한 항소 조치를 하겠다는 것과 당시 재판장 김중령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수뇌부에서 이 사실을 무마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 마련에 부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현재 육군 법무감실에서 건의한 조치에 따라 항소되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을 상기한다면, “군 수뇌부가 군 개혁을 주장하는 군 법무관들을 ‘군을 위해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한다”는 기사내용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김중령의 무죄선고는 사단장 이상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특정 시민단체 간사의 추측성 주장을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보도내용에도 있듯이 당시 재판에 함께 참여했던 법무장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중령이 최초부터 재판을 맡아 고민하였으며, 박대위에게 ‘금고 3개월에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하자는 군 법무관들의 주장에 처음에는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장 이상의 지시에 의해 김중령이 무죄선고를 했다면, 기자가 강조한 것처럼 “상명하복의 질서를 중시하는 군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초부터 고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이 무죄 주장을 했을 것이며, 김중령이 박대위에 대한 선고와 관련하여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것은 사단장 이상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장을 맡았던 김중령이 육본 법무감실에 제출한 무죄선고 경위서에도 “본인이 군생활 양심으로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김중령 개인의 법인식 미흡으로 인해 빚어진 일임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뉴스위크지에서는 이같은 기본적인 논리적 추론을 외면한 채 참여연대 간사의 추측성 발언만을 인용하여 사단장 이상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우발적이 아닌 사전에 기획된 왜곡보도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비밀에 부쳐 가족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장교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사건을 처리해 온 군의 전통이 이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군에 대해 무지하거나 의도적인 음해일 뿐이며, 군의 명예와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병영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가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사실을 통보함은 물론, 사건처리에서 군사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변호인들의 입회 하에 철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신분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언론에도 그 사실을 성실히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무시한 채 육군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족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장교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왔다는 뉴스위크지 측은 어떤 자료와 근거로 그런 기사내용을 보도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자녀를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육군은 이번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중령의 무죄선고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육군 수뇌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 법무관들을 ‘군을 위해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거나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군은 유사시 가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사실을 통보함은 물론, 공개된 재판과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뉴스위크지가 사실확인 없이 제보자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하여 기사화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으며, 이번 보도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육군의 명예와 사기에 심대한 손상을 끼쳤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사과와 더불어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뉴스위크 한국판 1월 22일자 32~35면 『법보다 계급이 앞선다?』 기사에 대해 육군본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첫째, “육군 수뇌부가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 개혁을 주장하는 법무관들을 군을 위해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한다”고 보도했으나 육군 수뇌부는 이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비밀에 부쳐 가족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장교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사건을 처리해 온 군의 전통이 이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육군은 병영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가족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사실을 통보함은 물론, 사건처리에서 군사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변호인들의 입회 하에 철저히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신분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육군정훈공보실장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3년 2월 19일자(2003년 2월 12일자 발행) ‘뉴스위크 한국판’ letters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워크 한국판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2월 19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불교청주방송이 사옥 임대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3충북중재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재)불교청주방송 (시장 구 본 선)

피신청인 : 중부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3. 1.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부매일 : 『개국 7년 청주불교방송 어수선』 제하의 기사 (2003년 1월 18일자 9면)

내 용 : 7년 전 불음(佛音)전파를 기치로 출발했던 청주불교방송(사장 현중스님)이 바뀐 새 건물주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요구, 당혹해 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직핵심인 총괄국장 자리가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장기간 계속, 지역 불교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18일 지역 불교계에 따르면 BBS 청주불교방송(FM 96. 7MHZ)이 입주해 있는 용암동 '벤처타워 빌딩' (구 충청매일 사옥)이 작년 12월 새 건물주를 맞았다.

새 건물주는 서울소재 D물산으로, 1년 전 경락가 60억원보다 10억원이 많은 70억원에 벤처타워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물산은 건물을 인수하자마자 입주 초기 5억원 보다 2배나 많은 10억원의 전세금을 요구, 청주불방은 물론 당연직 운영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법주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청주불방은 ▶10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현 건물에 남아 있거나 ▶10억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 건물을 신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고, 후자 또한 이사비용만 2~3억원이 들 것으로 보여, 선택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실정이다.

법주사는 청주불방 건립 초기 30억원 정도의 자본을 투자한데다 몇년 전 당시 건물주의 부도로 전세금 5억원을 떼인 바 있어, 이번에는 적극 나서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전세금 건을 계기로 ▶총괄국장 6개월 공석이 해결되지 않는 점과 ▶낮은 청취율에 따른 방송 정체성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등 청주불방은 최근들어 더욱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역 한 원로스님은 "가장 큰 원인은 '불교방송'이 아닌 '조계종 방송' 형식으로 방송국이 운영된데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고종, 천태종 등 도내 각 종단 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초기 정체성은 물론 각종 현안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재)불교청주방송으로서

중부매일신문 2003년 1월 18일자 문화면에 실린 『개국 7년 청주불교방송 어수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청주불방은 10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현 건물에 남아있거나 10억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 건물을 신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전세금 5억원에 임대계약을 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새 건물주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조정이나 법적 쟁송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총괄국장 6개월 공석이 해결되지 않는 점과 ▶낮은 청취율에 따른 방송 정체성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등 청주불방은 최근들어 더욱 ‘어수선했다’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총괄국장 문제의 경우 전 총괄국장을 2002년 8월 21일 본사로 인사 발령함과 동시에 사장이 그 임무를 겸임하도록 하는 본사 발령이 있어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이므로 공식상태가 아니다.

피신청인은 또 위 보도에서 낮은 청취율에 따른 정체성 문제를 언급했으나 이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성 보도로 구체적인 비교대상도 없을뿐더러 청취율 조사에 대한 어떤 통계도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적으로 매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청주지역 한 원로 스님은 ‘가장 큰 원인은 불교방송이 아닌 조계종 방송 형식으로 방송국이 운영된 데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고종, 천태종 등 도내 각 종단 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초기 정체성은 물론 각종 현안을 수월

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본 방송의 설립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현행 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추측성 보도이다.

먼저 청주불교방송은 방송을 통한 포교에 뜻을 둔 불교인들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당초 각 종단은 물론 모든 불자들에게 문호를 열었으며, 태고종의 경우에도 총부종무원 차원에서 재단설립에 참여해 운영위원회 감사를 맡는 등 출연 정도에 따라 경영참여를 하고 있다.

더구나 방송편성에 있어서는 포교프로그램의 출연진 안배에 있어 조계종과 타 종단을 50대 50으로 하는 등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분명한 왜곡보도이다.

신청인은 이처럼 본 방송의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 사실확인 조차 거치지 않은 위 보도로 인하여 방송국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고 지역 불교의 중심에 서야 할 불교방송이 불신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중부매일이 지난 2003년 1월 18일자 문화면 『개국 7년 청주불교방송 어수선』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청주불방은 ▶10억원의 전세금을 내고 현 건물에 남아 있거나 ▶10억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 건물을 신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과 “총괄국장 6개월 공석이 해결되지 않는 점과 낮은 청취율에 따른 방송 정체성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등 청주불방은 최근들어 더욱 ‘어수선했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청주지역 한 원로 스님은 ‘가장 큰 원인은 불교방송이 아닌 조계종 방송 형식으로 방송국이 운영된 데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고

중, 천태종 등 도내 각 종단 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초기 정체성은 물론 각종 현안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옥문제의 경우 청주불교방송은 전 건물주 (주)SCM과 정상적으로 5억원에 임대 계약을 했으며, 전세금 10억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새 건물주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조정과 법적인 쟁송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전세금 10억원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또 청주불교방송은 지난해 8월 전 총괄국장의 서울 발령과 동시에 청주불교방송사장이 총괄국장직을 겸임하도록 해 국장직 공석에 따른 혼란이 없으며, 낮은 청취율을 언급한 부분도 취재기자가 객관적인 조사자료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청주불교방송은 물론 청취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주불교방송은 불법홍포라는 목적에 따라 설립된 특수방송으로 TV 공중파 방송과 시·청취율을 비교할 수 없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청취율 조사결과 동종 방송의 청취율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조계종 방송을 운운한 부분도 청주불교방송의 설립과정과 현재 운영, 방송편성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 따른 잘못된 표현으로, 청주불교방송은 방송포교에 뜻을 둔 불자들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설립돼 현재 태고종에서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 감사를 맡는 등 자금 출연정도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교프로그램 출연진의 경우에도 종단을 균등비율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3년 1월 18일자 중부매일 문화면 『개국 7년 청주불교방송 어수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청주불교방송은, 전 건물주 (주)SCM과 정상적으로 5억원에 임대 계약을 했으며, 전세금 10억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새 건물주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조정과 법적인 쟁송의 여지가 남아 있고, 또한 불법홍포라는 목적에 따라 설립된 특수방송으로 TV 공중파방송과 시·청취율을 비교할 수 없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청취율 조사결과 동종 방송의 청취율에 결코 뒤지지 않고 있으며, 방송포교에 뜻을 둔 불자들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설립돼 현재 태고종에서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 감사를 맡는 등 자금 출연정도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포교프로그램 출연진의 경우에도 종단을 균등비율로 안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3. 2. 6자 9면(문화면)에 상가 기사로 게재하되, 본문은 중재대상기사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2월 6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수입석유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31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석유수입사업협의회

(회장 박 상 준)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3. 1.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3년 1월 2일 21:00)

내 용 : ▷앵커: 질이 떨어지는 값싼 수입 기름이 시중의 주유소를 통해서 몰래 불법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 유조차 한 대가 주유소 기름 저장 탱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유명 주유소지만 유조차에는 정유사 마크가 없습니다. 수입 기름이 아니냐고 묻자 점점이 심해 수입기름을 팔 수 없다고 둘러댁니다.

▷주유소 직원: 수시로 정유회사에서 떠 가요. 그래서 분석을 해요.

▷기자: 그러나 인수증을 펴보자 평택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기름입니다.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지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중략)

▷기자: 이곳은 한 수입유 저장터미널입니다. 수입기름을 싣고 나오는 유조차 한 대를 따라가 봤습니다. 1시간쯤 뒤 유조차가 도착한 곳은 유명 주유소입니다. 역시 불법으로 수입유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기자: 값싼 수입유를 국산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유조차 한 대면 80여 만원, 한 달이면 약 800여 만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입기름 수요가 급증해 지난해 30억리터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수입되는 기름의 많개는 80%까지 일반 주유소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 제품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입기름 불법유통은 밤이 되면 더욱

활발해집니다. 어둠을 틈타 수입기름이 주유소 저장고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심지어는 정유사 마크를 단 주유소 유조차까지 수입기름을 사갑니다. 문제는 일부 수입기름의 품질입니다. 실제로 성분분석 결과 수입기름의 황 함유량은 국내 정유사 제품보다 세 배까지 높았습니다.

▷김경배(교통문제연구소 소장): 일부 수입사 휘발유는 산소계 첨가제인 MTBE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로 인한 출력 저하는 물론이고 연비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석유수입사협회로서 1월 2일 KBS 9시 뉴스 '저질 수입유, 주유소서 불법유통' 제목의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수입유는 저질이 며, 이와 관련한 배경화면으로 페타코페트로 립 저유소를 방영함으로써 페타코페트로 립이 저질 석유제품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전달했다. 또한 MTBE 함량이 낮아 불완전 연소로 출력저하, 연비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인 즉, 수입석유제품은 저질이 아니다.

석유품질과 관련하여 정부는 석유사업법(산업자원부),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으로 각 유종별 품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석유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석유수입사는 국내시장에 수입유를 유통시키고 있다.

MTBE는 자동차용 휘발유에서 첨가 증가에 따라 산소함량 증가, 옥탄가를 높이는 화학제품이다. 석유사업법에 석유품질기준을 겨울용은 1.0 이상~2.3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MTBE를 기준 초과하여 첨가하면 산소함량이 기준치를

넘게돼 휘발유품질에 부적합한 제품이 된다.

그리고 미국의 10여 개 주에서는 MTBE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환경물질로 규정하고 MTBE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하여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브랜드이미지 손상과 영업상의 큰 피해를 입었고, 고객, 수입사 임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1월 2일자 9시 뉴스에 '저질 수입유, 주유소서 불법유통' 내용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석유 수출입업자는 저질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질이 떨어지는 값싼 수입기름이 시중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지난 1월 2일 '뉴스9'의 보도와 관련, 석유수입사들의 단체인 석유수입사협의회는 '수입된 석유는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BS-1TV 「뉴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을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단 2003년 2월 15일 이전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3년 2월 12일 19: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대 총장이 개혁 성향 교수들의 서울대 개혁안을 대통령직인수 위원회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4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장 정 운 찬)

피신청인 : 대한매일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3. 2.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대한매일 : 『서울대 개혁 '보혁갈등'』 제하의 기사 (2003년 2월 14일자 1, 2면)

내 용 : 서울대가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자율성 확보, 대학교육 혁신 등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서울대 개혁안을 마련,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보수성향의 교수들이 이번 개혁안 내용에 강력반발, 따로 연구단을 꾸리기로 해 서울대 개혁을 둘러싼 보·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개혁안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개혁성향의 서울대 교수들이 마련한 것으로, 지난 6일 정운찬 총장을 거쳐 인수위측에 전달됐다. 정총장은 이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수 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비공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14일 첫번째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정총장과 단독 회동, “서울대가 특정계층 위주의 대학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피력하는 등 서울대의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인수위에 제출한 개혁안은 서울대가 당면한 주요 현안별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운영의 민주화 방안과 관련, 개혁안은 ▶심의·의결기구 성격의 교수회의 설치 ▶학생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난 98년 미대 원로교수의 친일행적 거론 등을 이유로 해직된 김민수 교수의 복직 ▶교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담았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서울대학교’는 대한매일신문 2003년 2월 14일자 1, 2면 『서울대 개혁 ‘보혁갈등’』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민교협 소속 개혁성향의 서울대 교수들이 마련한 개혁안이 지난 6일 정운찬 총장을 거쳐 인수위측에 전달됐으며 정총장은 이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수 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비공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14일 첫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민교협이 마련한 개혁안이 정총장을 거쳐, 즉 총장의 뜻에 따라 인수위에 전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태스크포스팀의 구성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신청인은 이 보도가 마치 정총장이 학내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처럼 비취짐으로 인해 오히려 학내 교수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월 14일자 1, 2면에 『서울대 개혁 ‘보혁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민교협 소속 개혁성향의 서울대 교수들이 마련한 개혁안이 지난 6일 정운찬 총장을 거쳐 인수위측에 전달됐으며 정총장은 이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수 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비공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14일 첫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대학교 정총장은 이 개혁안을 인수위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또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또한 구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4일자 1, 2면 『서울대 개혁 ‘보혁갈등’』 기사에서 “민교협 소속 개혁성향의 서울대 교수들이 마련한 서울대 개혁안이 지난 6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거쳐 인수위에 전달됐고, 정총장은 이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수 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비공식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하고 14일 첫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서울대 정총장은 개혁안을 인수위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또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

는 '대한매일'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3년 2월 28일 이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한매일 : 『정 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2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인수위와 정부의 갈등으로 '동북아 중심국' 국정 토론회가 무산되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5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임 채 정)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3. 2. 1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문화일보 : 『인수위-정부 정면충돌』 제하의 기사 (2003년 2월 6일자 1면)

내 용 : 오는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경제중심국' 건설방안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토론회가 사실상 무산, 향후 입장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인천국

제공항에서 주한외교사절까지 초청한 가운데 새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전세계에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정부안은 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와 건의사항만 듣는 것으로 축소됐다. 차기 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로 주요행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기본개념, 추진전략, 세부방안 등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특히 인수위와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추진주체,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의 폭과 범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여부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인수위는 경제특구의 혜택을 축소하되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측은 그럴 경우 사실상 특구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며 '혜택 확대-지역 제한' 등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경제논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나마 있던 혜택도 줄인다면 외국기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수위와 정부는 재경·통일·외교·산업자원·건설교통·정보통신·해양수산·문화관광부 등 7개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초청해 이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지만 인수위와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이날 행사에 중앙부처 장관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에는 노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 등만 참석했으며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의 보고를 들은 뒤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 등으로 간략하게 끝났다.

김만수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동북

아경제 중심국가 관련 토론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순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기로 했다”며 “그러나 재경부와 인수위 간에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에 대한 입장차이는 없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최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고 약칭함)의 위원장으로서 인수위의 직무인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에 따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의 자격으로 중재신청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의 주요 도시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2월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다만, 2월 6일 개최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 행사는 당초 실무 준비팀(경제2분과)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EU, 그리스, 몽골의 주한외교사절단과 재경부 등 7개 중앙부처의 장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가 함께 참여하기로 기획했으나 2월 5일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행사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기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참가규모를 축소, 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중앙부처 장관이 제외됐고 당선자와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과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신청인은 대변인실을 통하여 행사 하루 전날인 2월 5일 오전에 미리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2월 4일자에서 『인수위-재경부 정면 대립』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어 이 사건 기사 제목으로 『‘동북아 중심국’ 토론회 무산』으로 뽑은 다음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정부안은 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차기정부 주요정책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로 주요행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다.”, “인수위와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이날 행사에 중앙부처 장관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추측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천에서의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 토론회는 당초 실무진이 기획했던 것보다 참석규모만 다소 축소되어 대통령 당선자와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과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행사의 내용과 형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국정토론회가 무산되었다고 단정함으로써 허위보도를 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인수위-정부 정면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인수위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문화일보 2월 4일자 『인수위-재경부 정면 대립』 제하의 기사와 동아일보 2월 5일자 『인수위-재경부 충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2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금융국제화, 물류중심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데에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인수위는 국내·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IT 등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바람직하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재경부도 같은 입장에 있다.

그런데도 문화일보는 재경부와 인수위의 사실관계 해명을 무시하고 인수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허위·과장보도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새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전세계에 밝힐 계획이었다.”고 보도하였으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관련 국정토론회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애초부터 ‘실현방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고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예정이었으므로 이 부분의 기사도 명백한 허위보도이다.

문화일보의 이 사건 기사는 인수위와 정부가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게 했으며, 또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미리 계획했던 행사마저 취소된 것인 양 국민들의 오해를 낳게 하여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또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참여가 핵심이라 할 것인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주목을 끄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로서도 국익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게 철저한 확인절차 없이 추측과 허위, 과장보도를 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는 사

실과 다른 내용이어서 신청인의 명예와 직무의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동북아 중심국’ 토론회”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3. 2. 6.자에서 『인수위-정부 정면충돌』이라는 제목으로 2월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행사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국가 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월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의 주요 도시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2월 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무산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 행사는 당초 실무 준비팀(경제2분과)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EU, 그리고 몽골의 주한 외교사절단과 재경부 등 7개 중앙부처의 장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가 함께 참여하기로 기획했으나 2월 5일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행사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기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참가규모를 축소, 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중앙부처 장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 그리고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6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약 2시간동안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토론회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어서 애초부터 '실현방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고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수위와 정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거나 인수위와 정부(재경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정착과 금융국제화, 물류중심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데에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인수위는 국내·외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IT 등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바람직하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재경부도 같은 입장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정보도인 주식회사 문화일보사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6일자 『인수위-정부 정면충돌』 기사에서 '동북아경제 중심국' 건설방안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개최한 2월 6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토론회는 당초 실무 준비팀(경제2분과)이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주한외교사절단과 재경부 등 7개 중앙부처의 장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가 함께 참여하기로 기획했으나 2월 5일 오전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행사가 지나치게 방만하게 기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참가규모를 축소, 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중앙부처 장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재경부 등 중앙부처 차관보, 기획실장 등 실무진 그리고 3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중심국가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방순회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인수위와 정부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여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수위와 정부는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사안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2003년 2월 27일자 『문화일보』 3면에 2단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본건 중재대상기사의 소재목(특구확대·세제지원 등 입장상반)의 활자크기 보다 1호 작은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2월 27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판결 1

특정인의 지위가 공적인 존재인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하고 그 의혹의 진실성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2. 12. 24.자 판결(2000다14613)

사실개요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002년 12월 24일 KBS의 책임 프로듀서인 남성우씨가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발행인, 소속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허위사실적시의 범위에 기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을 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가 허위내용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부분이 비록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의 정치

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이고, 그 특정인의 지위가 원고와 같이 공적인 존재인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을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방의 대

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 해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그 방영당시(1994년)로 보아 진보적인 시각에서 분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월간 한국논단은 1998년 3월호에 『빨갱이는 선으로,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목 하에 원고를 주사파로 묘사하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자, 이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원심 재판부는 “원고를 ‘주사파’로 묘사하여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심 판결문은 국내

언론관계판결집 제7집 314면~320면, 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6집 251면~264면).

판 결 문

사 건 : 2002다1463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남 성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한국논단

서울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901호

대표이사 이 도 형

2. 이 도 형

3. 이 명 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해 진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0. 2. 10. 선고
98나56579 판결

판 결 선 고 : 2002. 12. 24.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
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논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한국논단’이라는 월간지를 제작·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도형은 ‘한국논단’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피고 이명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나. KBS는 1993년 5월부터 1994년까지 총 68회에 걸쳐 “다큐멘터리극장”을 방영하였는데 원고는 1994. 1. 28. 방영된 “대통령에 도전한다”와 같은 해 6. 11. 방영된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를 포함한 위 다큐멘터리 극장

.....

의 책임 프로듀서(CP)로서 그 제작을 총괄지휘하였다.

다. 한국논단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는 표지와 차례란에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을 기재하고, 본문 92면부터 98면에 걸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기사는, 우리나라에 좌익세력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면서 TV에까지 침투하여 TV가 좌익세력의 선전도구가 되었다고 개탄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그 제작방영한 여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며 이북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작방영한 ‘이것이 인생이다’, ‘다큐멘터리극장’,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삼국기’, ‘진달래꽃 필 때까지’ 등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중 원고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극장’(그 프로그램 내용은 이 사건 기사에서 따로 소개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기사부분이라 한다).

「주사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김일성의 정치행태로 볼 때 이 증언(여운형의 암살범은 김일성이 직접 보냈다는 내용의 증언)은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늘 정반대로 왜곡하여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한 때 1TV의 다큐멘터리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남성우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또 남성우 PD는 이 프로를 통해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 사건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도 했고, 해방 후의 대구 10·1폭동, 제주 4·3폭동 등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들을 인민항쟁으로 미화시켰다.」

이어서 이 사건 기사는 공영방송인 KBS가 좌익에 대한 연대의식을 심어주고 있고 국민을 세뇌, 의식화시키고 있어 북한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론에 수많은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사는 소위 ‘주사파’가 언론매체에 많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 KBS가 방영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사파’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북한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 등을 단정적으로 열거한 후 원고는 KBS에 침투한 ‘주사파’ 중의 하나가 분명할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나 단정을 우회하여 표현한 것이고, 소위 ‘주사파’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함은 주지의 사실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 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

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목적에 공공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사파의 역사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에 기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액을 정하고,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가 허위사실적시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있다(원심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기사의 범위가 '주사파' 부분만인지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인지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만으로는 애매함이 있으나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허위사실적시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를 명하는 범위를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부분만의 구조를 보면 이는 원고의 사상적 경향을 그가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평가한 소위 '소수의견'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7면의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 기사부분은 1/3면 미만에 불과하고 분석의 전제사실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 사건 기사에서 따로 소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서 이 사건 기사는 특정인의 정치사상을 분석평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 특히 방송에 좌익세력이 대거 침투해 있으면서 방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를 고발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사실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 원고도 주사파(주체사상 신봉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것으로서, 기사 전체의 취지와 연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부분은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부분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우선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사부분이 비록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이고, 그 특정인의 지위가 원고와 같이 공적인 존재인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나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 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론을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사건 기사부

분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부분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원고제작의 이 사건 프로그램(1994. 1. 28. KBS 1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극장 '인물발굴 2. 대통령에 도전한다 - 최능진 수사국장', 그 대본이 갑 제11호증의 1이다)의 내용은, 해방, 정부수립,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시기에 친일경찰의 척결을 주장하다가 좌익척결을 위해서는 친일경찰이라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경찰수사국장에서 해임되고, 이념보다는 민족을 앞세우고 좌우합작을 모색하면서 이승만에 대항하는 정치노선을 걸다가 끝내 이적죄로 처형된 최능진의 사상과 생애를 재조명하면서, 그가 좌익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의 행로를 걸으려고 애쓴 민족주의자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 프로그램으로서, 그 전개과정에 이승만, 여운형 등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언급과 대구 10·1폭동의 확대원인에 관한 진단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①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평가할 만한 내용은 없으나 그가 민족보다는 이념을 앞세우고 친일파를 등에 업고 남한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민족분단과 6.25를 초래했으며 정적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여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반면 여운형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우선노선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② 최능진의 친일파 척결 주장과 그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대구 10·1폭동이 좌익의 비합법폭력투쟁으로 발단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확대된 것은 그때까지도 숙청되지 않고 남아있던 친일경찰의 여전한 횡포에 분노한 민중들

의 불만이 그 큰 원인으로 되었다고 진단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제주 4·3 폭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한편 동학란에 대하여는 위 프로그램에서는 언급된 바 없고 원고가 제작하여 1994. 4.경 방영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특집 4부작 다큐드라마'에서 다루어졌음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졌으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심에서 심리되지 않았다.

(2) 위에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부분을 대비해보면, 그 중 부정확하거나(이승만의 '사대주의자'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제주 4·3폭동까지 끼워넣은 부분) 및 다소 과장된 부분(대구 10·1폭동을 인민항쟁으로 미화했다는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그 방영당시(1994년)로 보아 진보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앞에서 본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의 자유 범위내에 있다고 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정도의 허물을 들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동학란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원심이 원고로 하여금 그 대분을 제출케 하는 등으로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위 프로그램의 내용에 나타난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성에 관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부분 중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만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허위사실적시의 범위에 기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을 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부분 전부가 허위내용임을 밝히는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 재 윤
대법관 서 성
주 심 대법관 이 용 우
대법관 배 기 원



판결 2

공적 인물인 원고가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12. 6.자 판결(2002가합13985)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002년 12월 6일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및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권노갑 씨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편집국장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김근태, 정동영에게 지원한 경선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및 그 측근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는 현재 집권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상임고문 및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또한 그가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

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진에서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원고의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여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조선일보사가 2002년 3월 6일자 1면 『권노갑 씨 정치자금 살포 돈 받은 후보-출처 밝혀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마치 원고가 최고위원 경선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살포하였고 그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측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의 사생활 범위 내에 침입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합13985 손해배상(기)
원 고 : 권 노 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 석 형, 김 정 훈

Ⅲ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2. 변 용 식

3. 이 상 철

4. 최 준 석

5. 홍 석 준

6. 정 경 열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2. 11. 15.

판결선고 : 2002. 12. 6.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간되는 조선일보 제1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고딕체급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명조체급 활자로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상임 고문 및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2) 피고 조선일보사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변용식은 피고 조선일보사의 편집국장, 피고 이상철은 정치부장,

피고 최준석, 홍석준은 각 정치부 기자, 피고 정경열은 사진부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 보도 전의 정황

(1)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선거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출마한 소외 김근태는 2002. 3. 3.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 당시(2000. 8. 30.자) 2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공개하였다.

(2) 뒤이어 대통령후보 경선 주자인 소외 정동영도 2002. 3. 4. 위 최고위원 경선 당시 원고로부터 2,000만원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최고위원 경선 주자들에게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주었는지,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관한 의혹을 받게 되었다.

(3) 원고는 위 최고위원 경선 당시 위 김근태 및 정동영에게 각 2,000만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을 시인하고, 그 돈은 원고의 처가 음식점과 계를 운영하여 모은 것이라고 그 출처에 대하여 해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치공방이 계속되는 등 불법 정치자금 지원 여부와 그 자금출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 이 사건 사진의 촬영 경위 및 이 사건 기사의 보도

(1) 피고 정경열은 2002. 3. 5. 아침경부터 원고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원고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대기하였으나, 원고가 나오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층의 정면이 커튼으로 내부를 가리고 있어 촬영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8:30경 위 아파트 뒷면에

.....

마주하고 있는 아파트동 5층 계단에 올라가 마침 원고가 아파트의 거실 식탁에서 그의 측근인 소의 조병세, 강신욱, 윤창환, 김윤형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장면을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최고위원 경선 당시 원고의 정치자금지원 논란에 대하여 취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02. 3. 6.자 조선일보 제1면 톱기사로서 “권노갑 씨 정치자금 살포 돈받은 후보-출처 밝혀야”라는 큰 제목과 한나라 “게이트마다 배후 인물로 지목”이라는 소재목하에 위 김근태의 선거자금 고백의 파문이 여야의 정치자금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바로 그 하단에 피고 정경열이 위에서 촬영한 가로 15.5cm×세로 10cm 크기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에 원고가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부가한 별지 2 목록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1의 영상, 증인 조영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가 이 사건 기사와 같이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김윤형의 주선으로 2002. 2. 3.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참가한 미합중국 하와이대학교 부설 동서문화센터에서 주관한 동북아 경제포럼 세미나의 결과를 자료로 정리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위 최고위원 경선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살포하였고 그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측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의 사생활 범위 내에 침입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원고의 프라이버시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함께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02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① 큰 제목 : “권노갑 씨 정치자금 살포 돈받은 후보-출처 밝혀야”, 작은 제목 : 한나라 “게이트마다 배후 인물로 지목”으로 된 제목 부분, ② 위 김근태의 선거자금 고백의 파문이 정치자금공세로 확산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고의 정치자금 살포 및 그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본문 부분, ③ 이 사건 사진 부분, ④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원고가 자택서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부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독자들에게 원고가 위 최고위원 경선 등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살포하였고 그 의혹이 제

기되자 이를 부마하기 위하여 그 측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위 김근태, 정동영에게 지원한 경선자금의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및 그 측근들이 그러한 논란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 의혹에 관하여 원고 및 그 측근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 집권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 상임고문 및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또한 그가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 지원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사진, 성명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진에서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원고의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기사가 원고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오 권 철
판사 최 석 규

〈별 지 1〉 정정보도문

본사는 2002. 3. 6.자 본사 발행 조선일보 제1면 톱기사로서 “권노갑 씨 정치자금 살포 돈받은 후보-출처 밝혀야”라는 큰 제목과 한나라 “게이트마다 배후 인물로 지목”라는 소제목하에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당3역 회의에서 “권노갑 씨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역대 최고의 검은 자금을 살포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권씨는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 KKK의 한 축으로 지목되었고, DJ 정치자금의 관리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다음, 그 바로 하단에 ‘권씨 자택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하에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5일 오후 7시쯤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측근들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붙인 권노갑 의원의 아파트 건너편 동 복도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특수카메라를 이용하여 권노갑 전 의원의 아파트 거실 내

부에서 원고 등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도촬하여 찍은 가로 15.5cm×세로 10cm 크기의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권노갑 전 의원이 2000. 8. 30. 실시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역대 불법 정치자금을 살포하고 최근에 그 의혹이 언론 등에 발표되자 자신의 측근들을 자택으로 불러 그 대책을 숙의한 양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리 잘못된 게재한 기사와 사진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끝.

〈별 지 2〉 기사

“권노갑 씨 정치자금 살포 돈받은 후보·출처 밝혀야”

한나라 “게이트마다 배후 인물로 지목”

민주당 김근태 고문 선거자금 고백의 파문이 무차별 정치자금 공세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5일 민주당 권노갑 전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정치자금 공개를 서로

요구하며 격돌했다.

▶ 관련기사 3·10·11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당3역 회의에서 권노갑 씨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역대의 검은 자금을 살포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권씨는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 KKK의 한 축으로 지목되었고, DJ 정치자금의 관리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지난 4·13 총선 때와 이번 대통령 후보경선을 전후해 권씨가 어떤 후보에게 얼마의 자금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씨 자택서 대책회의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5일 오후 7시쯤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측근들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끝. □

판결 3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2. 6.자 판결(2002가합6976(본소),
2002가합15710(반소))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2003년 2월 6일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에 ‘죽비소리’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정경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이나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이나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칼럼이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당인 원고와 그 소속 대통령 후보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그 게재의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전제사실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미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칼럼 게재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경희 씨가 한겨레신문 2002년 6월 3일자 6면 ‘죽비소리’란에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회창 씨가 국세청을 통해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언론사의 탈세행위를 ‘언론 자유’의 미명 아래 비호했다는 등의 칼럼을 게재하자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2가합6976(본소)

손해배상(기)

2002가합1571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대표 최고위원 서 청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봉 규

피고(반소원고) : 정 경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 용 환, 최 승 수

변 론 종 결 : 2003. 1. 16.

판 결 선 고 : 2003. 2. 6.

주 문 :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피고’의 표시는 생략한다)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

나 강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10. 열린 전당대회에서 2002. 12. 19. 실시될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이회창을 선출한 정당이고, 피고는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지 한겨레신문에 '죽비소리'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언론인이다.

나. 피고는 "대쪽-귀족-언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여 2002. 6. 3.자 한겨레신문 6면 '죽비소리'란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이 게재되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칼럼 중 별지 기재 ① 내지 ⑦ 부분은 피고가 원고 및 그 대통령 후보를 비방할 목적에서 쓴 허위사실이거나 추측성 비난에 불과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칼럼은 이회창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그 소속 정당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에 기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의 피해자

살피건대, 어떤 단체에 관계한 개인에 대한 명

예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칼럼이 게재된 시점이 원고가 이회창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시점인 점, 이 사건 칼럼의 전체적 맥락이 이회창 개인이라기 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도 직접 원고를 언급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이회창 후보뿐만 아니라 원고를 함께 관련 지워서 비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칼럼이 이회창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일 뿐 그 소속 정당인 원고의 명예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1)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이나 논평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나,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된다.

(2) 한편,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그 의견이나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이나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3)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라. 판단

(1)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칼럼 중 ① 부분은 원고가 그 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시키려 한 데서 유래한 '귀족적'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후보의 자질 검증과 무관한 '이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의 우려 내지 경계를 나타낸 전후의 문맥을 고려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② 내지 ⑦ 부분은 원고가 장외집회를 연 사실, 원고나 그 대통령 후보가 국세청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언론사의 탈세를 비호한 사실, 원고의 대통령 후보가 100평짜리 빌라 3개층을 사용하였고, 그 며느리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일응 원고

나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칼럼이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당인 원고와 그 소속 대통령 후보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그 게재의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을제2호증의 1 내지 22, 을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1 내지 11, 을제6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사 위 전제 사실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미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위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칼럼 게재는 위법성이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칼럼은 이회창 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의 비판기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언론인인 피고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원고나 이회창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인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응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이나, 그와 같은 소재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효이나 권리 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2) 살피건대,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오로지 피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줄 의도에 의해 제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본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칼럼은 일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원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힐 의도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위 제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 시 환
판사 홍 지 영
판사 송 찬 호

〈별지기사〉

정경희 '죽비소리'

「대쪽-귀족-언론」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가 크게 소리지르는 것을 불경에서는 '사자후'라고 말한다.

부처는 이르기를 "모든 짐승들이 사자후하는 소리를 들으면 물에 사는 짐승들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물의 짐승들은 굴속에 숨고, 날아다니는 놈들은 떨어지고, 향기 풍기는 큰 코끼리들은 겁에 질려 똥을 싸느니라"고 했다(〈열반경〉 권27. 사자후보살품 제11의1).

부처는 또 "내가 늘 이 대중 속에서 사자후하는 것이니, 너희들도 대중 속에서 사자후할 것이니라"고 일렀다(〈열반경〉 권39. 교진여품 제13의1).

이처럼 '사자후'란 진실과 옳은 것을 천하에 알리기 위해 외치는 것을 뜻한다.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군중을 모아놓고 외친 것까지 '사자후'라고 하지는 않는다.

진짜 '사자후' 고르기

대통령선거에 지방자치선거가 겹친 이 나라는 날만 새면 정치인·정치꾼들이 쏟아내는 연설을 들어야 하는 정치판이 됐다.

'미사여구'와 귀청을 때리는 구호의 홍수 속에서 어느 쪽의 무엇이 진짜 사자후인가? 유권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 판단해야 할 것이다.

5년 전인 1997년 대통령선거 때 언론은 김영삼 대통령이 낙하산에 태워 내려보낸 이회창 후보에게 날이면 날마다 훈장을 갖다 바쳤다. '대쪽'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찬사다.

유권자들은 왜 그가 '대쪽'인지 알지 못하는 판에 이회창 후보는 '대쪽'이라는 이미지를 만끽했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이었던 그가 과연 강직한 사법관료였기 때문에 대쪽인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5년이 지난 이제 언론은 이회창 후보에게 대쪽 대신 '귀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① 애초에 '귀족'이라는 말은 이회창 후보를 '국민과 가까운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꾸미기 위해 "귀족티를 벗어나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나라당이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상념은 없고, 만인이 양반자손 행세를 하는 중세적 신분의식이 강한 나라가 이 나라다.

'귀족'이라는 말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검증되지 않은 훈장, 곧 그가 양반의 자손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

이회창 후보 자신도 말했다. "김대중 정권 4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입만 열면 욕지거리와 악박에 남지 않는 천민정치"라고. 천민정치를 누가 했다는 건지 이 후보의 말만으로는 알아듣기 어렵다.

② 그러나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집회를 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막가파식 욕설을 퍼부어 온 것은 이회창씨의 한나라당이었다. '천민정치'를 해온 집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한나라당 자신이다.

이회창 후보에게 '귀족'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뜻에서건 부정적인 뜻에서건 어울리지 않는다. 귀족티와 거드름은 종이 한 장 차이이다.

③ 언론은 검찰이 기소한 액수만 166억 7천

만원에 이르는, 국세청 모금이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법과 원칙'을 세우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야 했다.

④ 해산을 불과 두세달 앞둔 며느리가 하와이로 건너가 아이를 낳았는데 "원정 출산이 아니었다"는 변명을 누가 믿겠느냐고 물어야 했다.

'귀족'과 '천민'

⑤ 국세청을 '사유화'해서 선거자금을 갈취 질한 반세기 정치사상 초유의 파렴치한 권력형 비리이다.

⑥ 천문학적인 액수의 언론사 탈세를 '언론자유'의 미명 아래 비호했는데 언제 또 다시 국민의 혈세가 도둑맞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어야 했다.

또 그보다 더 '부패한 정치'가 있는지 물어야 했다.

⑦ 100평짜리 빌라 3개층을 쓰다가 갑자기 점퍼차림으로 시장바닥을 누빈다고 '서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물어야 했다.

과점 신문들이 주도하는 이 나라의 언론은 이런 의문에 눈을 감고 있다. '공명선거'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 밑줄과 번호는 원문에는 없는 것을 판단의 편의상 붙인 것이다. □

일본 판결

원고 부부의 사생활상의 사실을 소송기록에 근거해 작성한
흥미위주의 기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원고 : 甲野太郎

피고 : 주식회사 문예춘추, 동사 대표 白石 勝

동경지방법원 1999 (가) 5677호, 2001. 10. 5. 민사10부 판결

일부 인용, 일부 기각 (항소<항소기각>)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해 100만엔(약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9년 3월 20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 이자를 지급하라.
2. 원고의 그 밖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사실 및 이유

청 구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지1 기재의 내용과 같은 사죄광고를 별지1 기재의 요령에 의해 1회 게재하라.

사안의 개요

본 건은 피고가 그가 발행하는 주간지 『週刊文春』 1999년 2월 11일호에 원고와 그의 처와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위자료 100만엔(약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1. 전제사실(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60년 주식회사 리쿠르트(이하 '리쿠르트'라고 한다. 설립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대학광고'였다)를 설립, 1988년 7월까지 동사 및 그 그룹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자이

며 현재 재단법인 甲野육영회의 이사장과 리쿠르트그룹의 특별고문으로 있다.

원고는 1964년 6월 처 花子와 결혼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리쿠르트의 관련회사인 리쿠르트코스모스사의 미공개주식을 양도하기도 하고, 거액의 정치헌금을 한 이른바 리쿠르트사건으로 1987년 2월 중회(贈賄) 혐의로 체포되었다.

원고는 그 후 동 혐의로 동경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도 피고인으로 심리를 받고 있다.

피고는 잡지, 도서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주간지 『週刊文春』을 발행하고 있다.

(2) 원고는 1998년 2월 花子 외 1인을 피고로 하여 東京都港區南麻布에 있는 자택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자기의 점유권 확인, 본건 건물의 해체금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주거로 사용하는데 대한 방해의 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동경지방법원에 제기했다(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

별건 소송의 소장에는 별지2의 동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며 또한 이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고서 및 원고의 진술서에는 별지3 '필사(筆寫) 부분'란 기재의 기술이 있다.

(3) 피고는 『週刊文春』 1999년 2월 11일호에 "甲野太郎 리쿠르트 전 회장이 법정에서 부인과 진흙탕 소송싸움 '처에게 빼앗긴 재산목록 1만3천점'"이라는 큰 제목의 특집기사(이하 '본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여 동월 4일 이를 발매했다.

본건 기사의 내용은 별지3 '본건 기사'란 기재와 같다.

2. 쟁점

- (1) 본건 기사의 위법성의 유무
- (2) 사죄광고 게재청구의 가부

당 재판소의 판단

1. 전기전제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1960년에 창업한 리쿠르트는 원고의 지배 하에서 각종 취업정보지 등을 발행하는 등 정보산업분야에서 급성장했다.

원고는 1985년 정부세제조사회 특별위원으로 취임했으나 리쿠르트사건의 발각을 계기로 1988년 7월 리쿠르트그룹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시에 종전에 취임하고 있었던 정부의 위원, 각종경제단체의 위원·임원직으로부터도 물러났다.

원고는 1988년 2월 리쿠르트사건으로 기소되어 매스컴과 세간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원고는 1992년 7월에는 자기소유의 리쿠르트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리쿠르트의 오너로서의 위치도 잃고 본건 기사 게재당시에는 재단법인 甲野육영회의 이사장과 리쿠르트그룹의 특별고문을 맡고 있었으나 리쿠르트그룹에 대한 경영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2) 원고가 1998년 2월 처 花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와 花子は 1987년부터 별거하고 있다. 花子は 동년 비과세의 한도를 넘는 많은 회수의 주식거래를 했음이 국세청조사에서 발각되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거래 가운데에는 원고가 花子에게 요청하여 花子소유의 리쿠르트주식을 동사의 사원에게 매각하게 한 거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花子は 원고에 대해 이 추징금의 부담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는 리쿠르트사

건의 발각에 의한 원고에 대한 각 방면으로부터의 추궁에 편승하여 한층 더 격렬해졌다.

원고는 어떻게든 부부관계만이라도 원만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추정금 지불을 위해 1억8천만엔(약 18억원)을 花子에게 대부금 형식으로 건넸다.

또한 본건 건물과 그 부지는 원고부부가 공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장차 이혼할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본건 건물과 그 부지의 원고지분을 花子에게 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원고와 花子는 1988년 9월 1일 원고의 지분을 花子에 대해 대물변제 해주는 한편 花子는 원고가 본건 건물을 주거(住居)로 점유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대물변제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했다.

원고가 이 계약에 근거하여 본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물을 비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花子는 건축업자에게 본건 건물의 해체공사와 재건축공사를 의뢰했으며 원고의 사물을 밖으로 끌어내고는 본건 건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했다.

때문에 원고는 본건 건물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기의 점유권을 침해당했다.

원고는 본건 건물의 점유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본건 건물에 비치돼 있었던 자기의 사물목록(별지2)을 소장에 첨부했다.

원고는 또한 20년 이상 사용하여 애착이 깊은 침대와 스피커 등의 오디오기기 등을 반출당한 분한 생각, 건축업자에게 중요서류(리쿠르트사건의 진술조서, 가옥의 등기등본, 유가증권, 현금 등)와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했던 일, 부부의 불화로 건강을 해쳐 “아버지, 도와줘요, 부탁이에요”라고 애원해 왔던 딸을 가엾게 생각했던 일 등도 기재했다.

(3) 『週刊文春』 편집부의 乙山松夫 기자 (이

하 ‘乙山’이라 한다)는 1998년 12월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자유기고가로부터 별건 소송의 이야기를 듣고 편집부회의에 올려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했다.

1999년 1월 28일 편집회의에서 취재방침이 결정되어 乙山 외에 편집부의 丙川竹夫, 丁原梅夫 기자가 취재에 합세하도록 했다.

乙山은 동일 동경지방법원에서 별건 소송의 기록을 열람, 개요를 파악하고는 그 일부를 필사(筆寫)했다. 또 乙山은 원고부부를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리쿠르트 창업당시의 원고부부의 관계 등에 관해 취재했다.

乙山은 동월 30일부터 2월 1일에 걸쳐 花子 본인과 그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취재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丙川도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3명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丁原은 동년 1월 31일 花子の 백부(伯父)와 면담, 대물변제계약 체결당시의 원고와 花子の 부부관계 등에 관해 취재했다. 또 丙川은 동년 2월 1일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그 내용을 필사했다.

丙川과 乙山은 기사원고 마감날인 동년 2월 1일 별건 소송에 관해 원고에게 취재를 요청하는 서면을 甲野육영회 앞으로 팩시밀리로 송부했다. 이 서면에서 乙山 등은 “甲野 씨와 부인 花子 씨의 자택 재건축을 둘러싼 소송에 관해 취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자택에 있었던 동산, 1988년 당시의 주식, 국세당국의 추정과세 등과 관련하여 부인을 심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부인 측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서로가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고의 말을 듣고 싶다”고 기재했다.

乙山은 이날 바로 동 육영회에 전화를 걸어 취재요청의 취지가 원고본인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했으나 끝내 원고로부터는 직접 취재할 수

없었다.

乙山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에 걸쳐 취재결과를 토대로 본건 기사의 본문을 집필하면서 소송기록에서 필사한 별지3 '필사부분'란 기재의 기술을 그대로 본건 기사에 인용했다. 그리고 편집장 등이 제목과 리드기사를 작성하여 본건 기사를 완성했다.

2. 쟁점 (1)에 관하여

(1) 본건 기사는 별거 중인 원고부부가 그들의 자택이었던 본건 건물을 둘러싸고 다투는 별건 소송의 개요와 당사자의 주장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까지의 원고부부의 긴 세월에 걸친 불화와 이로 인해 원고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본건 기사는 또한 별건 소송에서 원고가 花子에 의해 본건 건물로부터 반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1만3천점에 달하는 사물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들 사항은 원고 개인의 사생활상의 영역에 속하며,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임은 명백하다. 그리고 '증거략(略)'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본건 기사의 게재당시까지 아직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소송이 공개법정에서 진행되고 소송기록의 열람이 제도상 허용된다고 해서 본건 기사의 내용이 당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부부내부의 분쟁에 있어서 한쪽의 언동은 다른 한쪽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가 본건 기사로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매스미디어의 보도에 의해 개인의 프라

이버시가 침해되었을 경우 관련기사의 게재가 위법인지의 여부는 보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 침해된 프라이버시의 내용이나 침해의 정도, 당해 개인의 사회적 입장이나 사회공공에 미치는 영향력, 기사의 내용과 표현·체제, 기사를 보도한 의도·목적이나 보도의 의의 및 필요성, 취재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라이버시의 이익과 이를 공표하는 이익의 어느 쪽이 우월한 것인지 비교하는 관점에서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이나 그와 관련된 부부간의 사생활상의 분쟁에 관한 사실은 프라이버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당사자가 비닉(秘匿)을 바라는 정도는 높다.

본건 기사는 앞의 (1)과 같이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원고부부에 관한 이러한 사생활상의 사실을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특히 원고에게 있어서는 사물을 상세하게 보도 당함으로써 사생활을 엿보이게 한 것 같아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 1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리쿠르트 창업자이고, 정부의 세제조사특별위원을 지낸 일도 있었으나 리쿠르트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직책들에서 모두 물러나고 있어, 본건 기사 게재당시는 경제인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정부의 위원 등 공적 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

더구나 "이 '동산목록'에 있는 리쿠르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고급브랜드 품목이 가득했다"고 기술한 다음 "계 약 1만3천점! 도저히 금액 '감정'은 불가능하다"고 맺고 있다. 동산목록에는 '리쿠르트사건의 검찰관조서 약 20권'이라는 기재도 있었으나 본건 기사에는 게재되지 않았다.

또 별건 소송에 제출한 서증에 본건 건물의 점유를 입증할 한 자료로써 “甲野花子는 ‘당신을 위한 식사는 만들지 않겠다’고 나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본건 건물의 주방을 원고자신이 사용해왔다는 기재가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의 식사는 만들지 않겠다’는 소재목을 붙임으로써 원고부부간의 불화를 보도했다.

본건 기사의 태반은 별건 소송기록의 열람에 의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민사소송기록의 열람은 허용되나 등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기사는 별건 소송기록중의 소장과 서증내용을 열람 시 필사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본건 기사를 집필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취재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본건 기사를 집필. 공표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승낙이나 확인을 얻지 않고 있다.

본건 기사의 의도·목적에 대해서는, 그 내용 자체나 전기 ㉔의 점, “부인과의 진흙탕 소송싸움”, “처에게 빼앗긴 재산목록 1만3천점”, “진흙탕 재판극”, “한 시대의 총아가 이 지경에까지 퇴색했다”, “8왕자(王子)의 ‘신흥종교교조(敎祖)’”, “슈트 1백점에 캐시미어 속옷”, “당신의 식사는 만들지 않아”라는 제목 등, 전기 (3)에서 인정한 취재의 경위나 원고에 대한 취재요청의 내용으로 보아, 리쿠르트사건으로 일찍이 세간의 주목을 받아 일반독자도 이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원고가 처와의 사이에 심각한 대립관계를 넘어 소송에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원고가 수많은 고급브랜드품을 소유하고 있음을 곁들여 흥미위주로 소개하여 일반독자의 호기심을 끌려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건 기사의 의도는 정부 세계조사회사의 특별위원이었던 원고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보도하는데 있었다고 하는 취지의 ‘증거략(略)’은 채용할 수 없다.

(3) 피고는, 본건 기사는 원고의 위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보도한 것이며, 그 내용은 시민의 정당한 관심사라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전기(2)에서 실시한 그대로이다.

피고는, 본건 기사는 별건 소송의 소장과 서증에 기재된 내용을 충실하게 보도했으며 재판이 공개되고 소송기록의 열람이 허용되고있는 이상 그 게재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그 밖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보도한 경우 그 정보원의 여하가 당연히 위법성의 유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공개되어 소송기록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도 실제로 재판을 방청하거나 소송기록의 열람을 하는 경우는 그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갖고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있다.

정보공개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공개정보를 입수하여 보도함으로써 당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공표하는 것과는 엄연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판이나 소송기록의 공개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입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가 당연히 위법성을 결여한다고는 할 수 없다.

공개된 재판에 관한 보도가운데 범죄보도, 사회공공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보도 등, 보도내용이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이고 정당한 관심사를 보도할 의도·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본건 기사가 그러한 보도가 아니라는 것은 전기(2)에서 인정한 대로이다.

더구나 원고가 처와의 분쟁해결을 위해 공개

재판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원고가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처와의 분쟁의 존재나 소송에서의 주장입증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고가 각오하고 용인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는 소송기록의 열람제한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건 소송이나 원고의 주장입증의 내용자체로 보아 그 내용들은 어느 누구도 본인이라면 함부로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그리고 원고가, 별건 소송기록을 보도관계자가 열람하여 얻은 정보를 기사화 한다는 사태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나, 소송기록의 열람제한제도는 별건 소송 제기당시 처음으로 시행되어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진 제도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은 재판의 공개취지에 따라 극히 한정적이며 부부간의 사생활상의 분쟁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열람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원고가 열람제한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별건 소송의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용인했다던가 프라이버시의 이익을 포기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이상에 의하면 본건 기사는 원고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며 그 침해의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 한편 원고는 이미 공적인 입장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으므로 그 사생활상의 행상(行狀)은 사회일반의 정당한 관심사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를 공표하는 이유와 필요성은 찾아내기 어렵다.

이러한 점과 본건 기사의 의도·목적을 생각해 보면 원고의 프라이버시의 이익이 이를 공표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본건 기사에 의해 원고의 프

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은 위법이다.

3. 쟁점(2)에 관하여

(1) 위자료에 관하여

‘증거력’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기사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본건 기사를 계기로 花子와의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된 점, 원고부부의 불화에 마음이 상해있던 딸이 본건 기사에 충격을 받고 소식이 끊겨 이것이 원고에게 큰 정신적 타격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100만엔 보다 적어질 수 없다.

(2) 사죄광고의 게재에 관하여

민법 제723조가 명예훼손의 구제방법으로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인정한 취지는 피해자에게 주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補填)될 수 없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객관적인 평가자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로서의 사죄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침해전의 상태, 즉 사생활상의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 침해는 그 성질상 피해의 정도가 크더라도 사죄광고에 의해 피해의 회복을 할 수 없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 동조를 유추 적용하여 사죄광고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판례시보』, 1790호 pp131~137.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미국 판결

공적 인물인 원고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판성 기사와 사설에는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Worrell-Payne v. Gannett Co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

판결요지

전직 주택 담당 관리자(housing authority administrator)가 족벌주의, 정실주의 그리고 잘못된 업무처리를 이유로 비난받았다는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와 사설에는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이 비공개된 의견에서 확인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에 관하여 원고가 공개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사실이 기초적인 사실, 그 보도 내용 자체 또는 보도가 주는 인상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판결이유

1. 명예훼손 및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Defamation by Implication) 청구

Worrell-Payne이 보도 당시 공무원(public official)이었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은 정당하였다. 당국의 관리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Worrell-Payne이 대표자로서 행동하였고, 그 예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그 직원들을 관리하였고, 사적인 자금 및 공적인 자금을 신청하였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를 감시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Worrell-Payne 역시 스스로 그녀가 공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Worrell-Payne은 문제된 보도가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 즉 그 허위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또는 그 진실성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Harte Hanks Communications, Inc. v. Connaughton, 491 U.S. 657, 659). 약식 재판에서 적절한 질문은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Worrell-Payne이 Gannett측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이다(Kaelin v. Globe Communications Corp., 162 F.3d 1036, 1039). 그러한 악의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약식 재판이 내려질 수 있다(Solano v. Playgirl, Inc., 292 F.3d 1078, 1084).

Worrell-Payne은 또한 여러 가지 기사들의 암시하는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Idaho 주에서 "암시(implication)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Worrell-Payne은 (1) 피고가 발행한 The

Idaho Statesman지의 기사 내용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허위의 사실과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2)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The Idaho Statesman지가 그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암시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Dodds v. Am. Broad. Co., 145 F.3d 1053, 1063-64). 위 두 번째 기준은 유명한 New York Times 사건에서의 '현실적 악의' 요건에 해당한다 (Metabolife Int'l, Inc. v. Wornick, 264 F.3d 832, 848).

Worrell-Payne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및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대부분은 그녀가 족벌주의, 빈번한 장기 부재 그리고 잘못된 업무처리를 이유로 비난받았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문책에 직면하였다고, 그러한 논란 속에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The Idaho Statesman지의 보도 기사 및 사실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주된 주장은,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그녀가 기자들에게 제공한 반박 자료의 내용, 그리고 그녀가 The Idaho Statesman지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답변들에 의할 때, The Idaho Statesman지의 기자들에게는 그녀에 관한 위 문제된 기사나 사실의 내용이 허위임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Gannett가 그러한 비난에 관한 보도를 계속한 행위는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Worrell-Payne이 어떠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부인하고 있고 그녀가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할지라도, 명예훼손이나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The Idaho Statesman지는 족벌주의, 정실주의 그리고 잘못된 업무처리와 같은 보도된 비난 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The Idaho Statesman지가 위 비난 내용에 관한 Worrell-Payne의 답변을 무시하거나 그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Eastwood v. Nat'l Enquirer, Inc., 123 F.3d 1249, 1251).

실제로, 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는 절차를 제대로 따랐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었으며, 친구나 가족에게 혜택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등 Worrell-Payne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부인하면서 주장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다. Worrell-Payne의 부인행위가 기사의 기초가 된 사실, 그 기사 자체 또는 보도된 인상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Worrell-Payne은 The Idaho Statesman지가 그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고도의 인식을 가진 채 행동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Worrell-Payne은 또한, 비록 자신이 자주 사무실을 벗어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빈번한 장기 부재(frequent absenteeism)', '과다한 장기 부재(excessive absenteeism)', '빈번한 부재(frequent absences)'로 비난받았다고 The Idaho Statesman지가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의 인상을 전달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사 내용이 항상 '장기 부재'라는 표현을 한 근거를 매번 밝히지는 않았지만, Worrell-Payne은 이 대목에서도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현실적 악의'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Worrell-Payne이 다른 도시의 주택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할 때에 Boise 사무실을 자주 비웠는데, 그녀

자신은 이것이 자신의 직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비판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묘사함에 있어서 '장기 부재(absenteeism)'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명백히 허위의 표현이거나 오도하는 방식의 표현이 아니었다. 게다가 일부 기사들은 '장기 부재(absenteeism)'라는 표현의 의미를 다른 도시에서의 일로 인하여 주중에 Boise 사무실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Gannett은 또한 명예훼손 청구에 대하여 보도 내용의 요지(substance or gist)가 진실이었다는 항변도 가능하다(Baker v. Burlington North, Inc., 587 P.2d 829, 831 참조.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보도 내용이 모든 부분에서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가 진실한 것으로 충분하다"). 끝으로 Worrell-Payne의 나머지 명예훼손 내지는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은, 비록 사소한 과실로 인하여 일부 사실에 관하여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Gannett의 약식 재판의 신청을 기각할 만한 '현실적 악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다(Masson v. New Yorker Magazine, Inc., 501 U.S. 496, 510 참조. "단순한 과실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다른 불법행위 청구

Worrell-Payne은 신문 기사 및 사실이 '현실적 악의'로써 행하여진 허위의 사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정상의 고통을 가하는 고의적인 행위(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Hustler Magazine v. Falwell, 485 U.S. 46, 56). Worrell-Payne의 허위에 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Leidholdt v. L.F.P. Inc., 860 F.2d 890, 893). 게다가 Worrell-Payne이 '공적인 인물'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공개된 사실이 그녀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Gannett가 사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장래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의적인 방해(intentional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advantage)'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청구는, 피고가 저질렀다는 방해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방해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즉, 피고가 잘못된 목적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가능하다(Highland Enters., Inc. v. Barker, 986 P.2d 996, 1004). Worrell-Payne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녀는 방해행위가 계약위반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국은 Worrell-Payne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그녀를 해고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전문가 증언의 배척

마지막으로, Worrell-Payne은 전문가의 공증 진술서 및 의견서를 배척한 결정에 대한 자신의 불복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설사 지방법원이 언론 관계 전문가의 공증 진술서 및 의견서를 배척하기로 함에 있어 그 재량을 남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료는 '현실적 악의'에 관한 쟁점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Worrell-Payn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

에 차이가 없고, 지방법원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

을 받아들인 지방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약식재판 신청

출처 : Media Law Reporter 30권 pp 2593-2598

번역 : 장상균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독일 판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에 대한 사진은 사전동의 없이도 ‘신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전파될 수 있다

2002년 5월 14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 VI ZR 220/01 (뮌헨 지방상급법원)
 해당조문 : 민법 제823조, 제1004조; 기본법 제1조 1항, 제2조 1항,
 제5조 1항 ;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판결요지

1. 기본법 제5조 1항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의 자유는 인쇄물의 광고에도 해당한다.
2.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에 대해 보도하는 인쇄물에서는 그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해도 된다.
3. 이러한 사진은 본래 보도의 범주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동일한 사진일 필요는 없다. 다만 당사자는 그의 인격권이 다른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개별적 사례에서 부수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사진이 사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5월 6일에 사망한 배우 Marlene Dietrich의 외동딸이며 상속녀이다. 피고는 빌트-신문의 발행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TV 프로에서 원고의 어머니 사진을 방영하는 것에 대한 금지와 정보제공을 할 것을 청구하였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1999년 2월에 빌트-신문의 특별판에서 “50년 독일”이라는 제목 하에 시대적 사건을 대표하는 자료와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1960년에 대해서는 짤막한 본문과 함께 1960년 5월 27일에 Marlene Dietrich가 뮌헨을 방문한 것에 대해 보도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9년 2월 15일에 RTL과 SAT 1의 TV에 18초 동안의 광고를 내 보냈는데 이 광고는 약 1초

동안 Marlene Dietrich와 Hildegard Knef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1959년의 독일의 주말쇼 촬영분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이 광고의 시작과 끝에는 빌트-신문의 로고가 나타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낭독된다 : “50년 간의 독일을 경험하시오. 최초로 묶어 놓은 독일의 독일 역사책: 빌트와 함께 매 화요일과 토요일을. 1959년 아침: 독일은 시작한다. 빌트는 당신에게 당신의 견해를 (갖도록 한다).”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필름의 방영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의 어머니 사진이 문제의 광고에서는 빌트-신문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사진이 인쇄물의 광고판에 있는 사진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상고심에서 청구기각을 구하였다.

판시이유

1. 항소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Marlene Dietrich의 상속녀인 원고는 Marlene Dietrich의 사진이 광고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

Marlene Dietrich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그의 사진은 동의 없이도 전파될 수 있다. 물론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도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그의 사진을 광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의가 제기되었던 필름은 광고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생산품에 대해 행해지는 광고는 신문의 자유의 기본권을 요구할 수 있고, 광고는 이 기본권의 “작용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Marlene Dietrich의 사망한 후의 인격적 이해와 형량하여 볼 때 피고가 발간한 시대적 작품의 발간이 일반에게 전달되는 것을 포함하여 방해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의 대상이 된 필름이 광고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정당한 이해는 그 사진의 발간과 더불어 그 사진이 신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이는, 인쇄물이 그와 같은 사진을 담고 있지 않거나 인쇄물이 의미를 전달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도 달리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위와 같은 고려가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타당하게도 Marlene Dietrich의 딸이며 유일한 상속녀인 원고가 그의 어머니의 인격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격권은 초상권이라는 특별한 발현형태로 사망한 후에도 작용하고, 사망자의 가까운 유족에게 존엄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1974. 6. 4일자 Senatsurteil - VI ZR 68/73 - VersR 1974 S. 1080 - Fiete Schulze: BGHZ 15 S. 249[259] - Cosima Wagner: 50 S. 133 [136 f.] - Mephisto: BVerfGE 30 S. 173 [194]과 비교하시오.). 인격권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권리주체가 사망한 후에는 비재산적 이해가 아직도 보호되고 있는 범위에서 존재하게 된다. 해당되는 권한은 인격권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상속인이 망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BGHZ 143 S. 214[223] - Marlene Dietrich).

상고가 적절히 이루어진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곳에서 문제가 된 광고의 범위에서 필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원고의 어머니의 당해 필름에 있어서는, 피고가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제23조 제1항 1번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전파할 권리가 있는 시사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진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시사적 범위 안에 있는 사진은 본래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제22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동의 없이 전파할 수 있다. 소위 시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사진은 특정한 시사적 사건과 관계없이 동의와는 무관하게 공표될 수 있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Marlene Dietrich가 이 범주 안에 속하는 인물임을 인정하고 있다(BGHZ 143 S. 214[229]과 비교하시오).

물론 사진의 공표로써 일반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의 이해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광고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적 이해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자는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제23조 제1항 제1번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지속적인 판례의 견해임, BGHZ 20 S. 345 [350] - Paul Dahlke: 1996년 10월 1일자의 Senatsurteil - VI ZR 206/95 - NJW 1997 S. 1152 - Bob Dylan, m. w. N.).

피고가 분쟁의 대상이 된 필름을 광고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고심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에 관해 상고심이 적절히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Marlene Dietrich의 사진이 이곳에서 오로지 광고목적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소법원은 광고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중요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고

심은 그 광고란 "50년 독일"의 시대적 범주에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일별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TV 방영이 독자의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빌트-신문의 특별판을 선전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필름에서와 같이 극단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정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한 그 정보의 가치는, 이곳에서는 물론 광고목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상고심이 의심하여 인정하지 않은 그 광고목적에 대하여 뒤로 물러 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판매촉진을 겨냥한 것이고 소비자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에 합치한 것이다. 사진이 사용된 관계에 있어서 일반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내용도 제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의 것과 상반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실 현저한 정도로- 동시에 광고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1996년 10월 1일자 Senatsurteil과 비교하시오 - VI ZR 206/95 -a.a.O.).

항소법원은 다른 한편으로 인쇄물에 대한 광고가 인쇄물 자체와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5조 1항 후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기본권으로서 신문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는 정보의 생산부터 뉴스 및 견해의 전파에까지 해당한다(BVerfGE 77 S. 346 [354]). 광고는 인쇄물 자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일반에게 제시됨에 따라 대화의 수단으로서 기여하고, 일반은 그 보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보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도의 종류 및 목적이 널리 알리고 있다(OLG Frankfurt, ZIP 1987 S. 132 [133]과 비교하시오). 따라서 언론

스스로의 광고는 그 광고가 해당 언론기관의 발간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의 전파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본법 제5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헌법이 부여한 신문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행한 사진의 재공표에서는 처음부터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KUG)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타당하게도 항소법원은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함께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초상권으로 표출된 Marlene Dietrich의 일반적 인격권과 기본법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신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간의 개별 사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소(訴)로서 주장하고 있는 청구권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상고심은 항소법원이 이 형량에서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물론 자신 있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법원이 형량에 포함시킨 상황과 이것으로부터 도출한 Marlene Dietrich의 인격권의 중요함을 인정함에 있어서 행한 선택과 무게 중심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항소법원이 행한 가치평가는 -항소판결이 공표된 후에 행하여진 - 2001년 4월 26일자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하고 있는 바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NJW 2001 S. 1921 [1923 f.] - Prinz Ernst August von Hannover).

항소법원은 형식적인 고찰방법으로, 특별판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Marlene Dietrich의 문제가 된 사진이 광고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결정적인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광고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편집할 때 찍은 사진이 사용되었

어야만 했을 것이고, 따라서 필름의 사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사용은 초상자의 허용되지 않는 인격권의 침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의 견해와는 달리, 이는 이곳에서 다른 사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것은 항소법원의 견해에 의하여서도 그 공표가 허용되는 그와 같은 사진 외의 다른 사진의 사용이 초상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본래 특정한 사진이 어떤 동기로 완성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언론은 예컨대, 행해진 촬영이 다른 사건에서 행해진 것이고 시대적 사건 자체가 사진에서 표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대적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독자에게 중립적인 초상사진의 형태로 된 사진으로 게재해도 된다.

구체적인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해 공표를 제한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헌법이 명한 최소화의 정도로 되고, 동시에 신문의 자유의 정당한 이해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정당할 것이다. 한편으론 인격의 보호와 다른 한편으론 신문의 자유간의 요구되는 형량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닌 사진의 공표가 금지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다른 사진이 특별히 불행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를 또는 특별히 해가 되게 당사자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상황은 이곳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해지지도 않았다.

인격권은 공표를 포함하여, 사용된 사진이 관계 속에서 왜곡되고 다른 관계에 놓임으로써

문맥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진의 의미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 보호된다. 항소법원은 이와 같이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경은 상고를 부정하는 측이 행한 인쇄된 사진과 광고에서 보여진 필름간의 구별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Marlene Dietrich의 사진에 대한 구별에 있어서 1960년이 아니라 1959년에 찍은 것이라는 상황은 그의 인격권이 부가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인쇄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여 방영하였을 경우보다 인격권이 필름의 공표로 인하여 더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항소법원의 견해에 의해서도 허용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사진이 광고목적으로 사용된 종류와 방법은 인격권을 부가적으로 침해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Marlene Dietrich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모델로 세워졌다면 다른 고려가 행해졌을 것이다. 이는 광고초점이, 초상자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상품을 추천

하고 그것을 칭찬하여, 선전하고 있는 상품과 그가 동일시되고 있는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1995년 3월 14일자 Senat-surteile - VI ZR 52/94 - VersR 1995 S. 667 [668]; 1996년 10월 1일 VI ZR 206/95 - NJW 1997 S. 1152 [1154]; BGHZ 20 S. 345 [352]). 광고에서는 -이러한 범위에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문헌(MuenchKomm-BGB/Rixe-cker, 4. Aufl., Anhang zu 12 Rdn. 50) - 광고가 된 인쇄물의 내용에 있어서 Marlene Dietrich가 한 시대의 인물로 이해하고 있음을 단지 강조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초상자의 의도와는 다른 잘못된 인상은 광고를 통하여 야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진의 공표가 위법하게 행해지지 않았다면, 정보 및 확인청구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AfP 33. Jahrgang Heft 5 - 2002, SS.435-437

번역 : 손원선 (한국디지털 대학교 법학과 교수) □

영국사례 1

**개인의 사생활이 공공의 영역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잘못**

불만신청

Schilling 변호인단은 신청인 Bernie Ecclestone 씨, 그의 아내 Slavica, 그리고 그의 딸 Tamara Ecclestone을 대신해 2002년 8월 25일자 the Mail on Sunday에 실린 "망가진 Ecclestone 일가"란 제하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를 위배했다며 PCC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Tamara Ecclestone이 제기한 불만신청은 일부 수용됐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만신청은 기각됐다.

문제의 기사는 Formula One의 대표인 Bernie Ecclestone 씨의 딸 Tamara의 전 남자친구인 John ke-

terman과의 인터뷰에 근거를 하고 있다. 신청인 변호인단은 그 기사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첫 번째, Ecclestone 씨와 그의 아내 Slavica 간의 부부관계 : 두 번째, 가정 내부문제 : 세 번째, 가정사의 보안문제 : 네 번째, Ecclestone 양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와의 상세한 관계에 대한 내용.

신청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공적으로 밝혀질 만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삶이 공공의 영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Tamara 양은 공적인 인물도 아니고 공인이 되려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보도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권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기사는 부와 권력을 지닌 가족과 연관된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배척 당한 어느 비천한 신분의 남자에 관한 기사로서 신문사는 이 남자가 그의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cclestone 가족은 공적인 인물들이며 부부관계를 포함해 사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예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으며, Tamara 양 또한 예전에 그녀의 사회생활에 관해 글을 기고한 바 있으므로 이 기사는 표현의 자유의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공공의 관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사생활을 보호할만한 예외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져야하지만 이 경우는 사생활 침해의 수준이 신문사가 보도할 권리와 그 남자친구의 표현의 자유권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청인 변호인단은 Ecclestone 일가의 사회적 위상이 사생활의 침해로 정당화하지 못하고, Ecclestone 양의 전 남자친구가 그의 이야기를 할 권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기사는 공공의 관심보다 더 많이 나아갔고, 보도실천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의 삶을 침해했으며 또한 Ecclestone 양이 글을 게재했다는 점이 그녀가 사적인 삶의 자세한 부분까지 게재할 권리를 신문사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Tamara 양이 17세이고 아직 학생이므로 보도실천강령 제6조 청소년 보호에 의해 보호받을 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Ecclestone 씨가 인기 스포츠인 카레이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으로써 그의 삶은 공공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노동당의 자금 모음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그 가족 또한 상류층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으로써 언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었으므로 불만을 제기한 기사는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 게재가 되었던 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

른 한편으로 기사내용은 Ecclestone 양에 대해서는 종종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예전의 기사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회적 활동에 관해 주로 다뤄졌고, 또한 기사가 나왔을 때, Ecclestone 양은 18세가 되었고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보도실천강령 6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평 결

PCC는 Ecclestone 양의 전 남자친구-기사는 그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가 Ecclestone 일가에 관한 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권리-표현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 원칙에 관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신문사가 Kertman 씨의 표현의 자유와 Ecclestone 가족의 사생활 보호권의 상충점을 적절히 다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PCC는 Ecclestone 양과 관련된 불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Ecclestone 양이 과거에 매우 부유한 집안의 딸로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공공 영역에서 이야기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신문사는 사생활침해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지 고려해야만 했다.

또한 PCC는 Ecclestone 양의 기사에서처럼 예전에 개인의 사생활이 공공의 영역에서 게재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개인적인 문제들을 보도하는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사의 사소한 부분이었던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개인적인 관계들에 관한 언급은 강령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의 다른 주요한 부분인 Bernie Ecclestone 씨와 그의 아내 Slavica의 부부관계를 언급했던 기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기사는 Ecclestone 씨와 그의 아내가 이전에 유사한 문제로 논의했던 부분과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해왔던 부부관계의 수준에서만 보도했다. 기사에는 Ecclestone 씨가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인터뷰를 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Ecclestone 씨가 공공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사실 신문사는 Ecclestone 씨가 자발적으로 그의 아내와의 격한 관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고, 더 나아가 Ecclestone 부인도 유사하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혹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인정

한다고 볼 수 있다. Ecclestone 씨는 그의 관점에서 쓰여진 유사한 문제들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이전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게재된 소재가 공적인 영역을 넘어섰거나, Ketterman 씨 자신의 표현의 자유권을 포함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기사가 보도실천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PCC는 다른 부분에서의 불만신청 즉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Ecclestone 가족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피상적인 내용의 기사나 다양한 가족 내부문제들의 논쟁에 관한 기사는 보도실천강령 3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강령 6조(청소년 보호)에 관한 불만신청에 대해서는 Ecclestone 양이 16세 이상이고 기사가 게재됐을 때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Ecclestone 양이 위 평결이 있을 때에 어린 나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PCC는 불만신청에 대한 평결에 있어서 이 조항을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덧붙였다. □

신청인은 작년에 유산-이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알린 바 있다-으로 고통받았고, 특히 당시에 매우 슬퍼했다는 보도내용에 의해 더욱 격분했다. 신문사는 또한 계속 그녀의 진술을 듣기 위해 신청인을 괴롭혔다. 담당 기사는 7월 18일 목요일에 그녀의 집에 접근했고 그녀는 취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기사는 다음날 Tonner 씨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BBC 대변인에게 취재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자세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녀를 찾았다.

신문사는 Tonner 씨의 임신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육체적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로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맞게 구성됐고 문제의 기사는 음란한 내용도 아니며 경멸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성적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Tonner 씨가 전국신문에서 다른 어머니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기꺼이 포즈를 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으로 Tonner 씨는 화요일에는 기자에게 취재거부를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BBC 대변인이 7월 19일 금요일에 Tonner 씨가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취재하지 말 것을 신문사에 알

영국사례 2

신청인이 이전에 유산을 한 적이 있다는 보도는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로서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불만신청

Judith Tonner 씨는 BBC Scotland 변호인단을 통해 the Scottish News of the World의 2002년 7월 21일자 “동성애자인 BBC 기상 캐스터가 아이를 가졌다”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3조(사생활), 5조(슬픔과 충격) 그리고 13조(차별)를 위배했다며 PCC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문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으므로 신문사는 보도실천강령 제4조(괴롭힘)도 위배했

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강령 4조와 부분적으로 3조에 관한 불만신청은 수용되었지만, 강령 5조 및 13조는 기각됐다.

문제의 기사는 ‘DIY(자가)’ 임신을 한 BBC 라디오의 캐스터 Judith Tonner 씨에 관해 그녀의 여성 동료와의 인터뷰를 게재한 내용이었는데 Tonner 씨는 BBC Scotland를 통해 신문사 측이 그녀의 임신을 밀착취재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녀의 성적 취향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도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산한 사실을 포함해 그녀에 관한 상세한 보도는 전적으로 사적인 문제이며 또한 임신에 관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평 결

불만신청은 강령 4조(괴롭힘), 그리고 부분적으로 강령 3조(사생활) 위반을 이유로 수용되었다.

PCC는 동성 부모에 관한 기사는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 대해 우선 동의를 했고, 특히 이 주제에 관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야 하며 기사내용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침해하지 않고서도 그 주제에 관한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밝혔다.

PCC는 신문사가 신청인의 임신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언급-임신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라든지, 그녀가 신문에 유산한 사실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밝혔음이 명백한데

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전에 유산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점(이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다) 등-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은 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강령 4조는 '기자는 취재원이 취재거부를 요구하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처음에 기자에게 취재거부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그녀가 진술한 바대로 기자가 계속 그녀에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보도실천강령 4조(괴롭힘)를 위배했다고 판단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을 대신해 BBC 대변인이 기자에게 그녀가 취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 방문 하루 전에 알려줬다는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적어도 기자가 마지막으로 접근하기 전

에 한번은 신청인의 입장을 들었으므로 보도실천강령의 위배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불만신청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PCC는 보도실천강령 5조(슬픔과 충격), 13조(차별)에 대한 불만신청은 기각했다. 강령 5조의 취지는 슬픈 일에 관한 보도에 대해 무감각하게 보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령 5조가 신청인의 상황에 적용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차별에 관한 보도실천강령 13조는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멸시적인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가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사는 신청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벗어나서 언급하지는 않았고, 또한 신청인의 성적 취향에 관한 부분에 있어 다른 동성 커플의 임신과 비교한 기사내용은 타당하므로 강령 13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 □

호주사례 1

문제된 사실은 의견의 표현으로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호주신문평의회는 토착민의 공연한 폭력위협에 관한 사실을 게재한 Cairns Post지에 대해 제기된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사실

은 토착민 운동가이자 ATSIC의 멤버인 Murrandoo Yanner의 연설을 보도한 기사가 실린 다음날 게재되었다.

사설과 연설문의 내용은 둘 다 절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사설에서 토착민에 대해 주장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러므로, 역사적 과정이 토착민을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회한은 있어라. 다른 어떤 사람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한편 Yanner 씨는 Brisbane의 대규모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Munis라는 젊은이가 자살폭파범이 되어 경찰서에 걸어 들어갔지만, 우리는 아직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권을 잃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나의 가족 중 누구도 경찰에 의해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죽는다면, 내 가족 한 명당 두 명의 경찰이 죽게 될 것이다.”

신문평의회는 상기에 인용한 글이 양측의 신랄한 정황을 충분히 옮기진 못할지라도 사설은 “폭력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서두에 “‘자살폭파범’ Murandoo Yanner”라고 시작했고, 그는 “독설을 내뿜고 있다”라고 비난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메시지는 토착민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Yanner 씨와 같은 사람들이 조장한 피해 의식에 얽매이지 않기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보았다.

한편 신문평의회는 Yanner 씨의 연설 원고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그가 한 유사한 연설을 녹취한 테이프를 입수했다. 이 연설은 경찰

에 대한 자살폭파 경고나 위협을 담고 있진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신청인이나 Yanner 씨 모두 신문사가 이런 논점에 대한 Yanner 씨의 연설을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신문평의회는 “연설은 토착민의 고달픈 생계에 대한 분노 어린 표현이었지만 연설의 전체 메시지는 명백히 자존(自存)의 선언이며 공조 정신의 거부였다. 분노에 찬 Yanner 씨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신문기사와 사설에서는 그가 언급한 단어들을 인용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아마도 연설의 전체 맥락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신청인은 “사설은 모욕적이고, 가증스럽고, 기만적이고 선동적이고...지역 사회의 대부분을 치유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그런

격렬한 극단주의는 공격적이고 불필요하며,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대다수의 호주인이 이 견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나에게 심히 모욕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논점에 대한 Yanner 씨의 입장을 사설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사설이 게재되고 나서 한달 후 그가 신문사에 보낸 편지가 게재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는 논쟁의 모든 측면을 상세히 조사하면서, 이미 사설게재 후 첫째 주에 도착한 약 20통의 편지를 게재한 바 있었다.

신문평의회는 결국 사설은 의견의 표현으로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었고, 또한 신문사가 사건발생 한달 후에 보낸 편지의 게재를 거절한 것은, 특히 다른 편지들이 이미 게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호주사례 2

사건을 충실히 보도해야 할 신문사가 보도자료의 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불만신청 수용

호주신문평의회는 “Rally protests against newspaper”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신이 조직한 시위활동에 대해 보도한 Cairns Post지를 상대로 한 Bryan Law의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Law 씨는, 몇몇 홍보 전단지과 사전에 편집자에게 보내진 전단지 사본에서 나타났듯이 신문사

에 반대하는 집회의 진정한 목적은 신문사의 인종주의적 경향의 단면을 설명해서 “Cairns Post 신문사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회의 목적을 보도함에 있어 신문사의 기사는 부적절했고 그에 관한 부정확한 설명을 게재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Cairns Post사

의 인종주의 비난"이라는 집회의 목적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신 집회를 신문사의 "토착민 권리 입법안에 대한 반대와 도시의 공원 장기노숙자 문제 처리를 위한 조치 요구"에 반대하는 저항으로만 묘사했다고 밝혔다.

Law 씨가 배포한 홍보전단지와 보도자료는 토착민 권리, Munro Martin 공원의 토착민들, ATSIC 위원인 Murandoo Yanner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Cairns Post의 취재 기사의 반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신문평의회는 신문 기사 내용이 그런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부정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평의회는 신문사가 집회에 대해 비판하면서 Law 씨의 보도자료와 전단지의 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건을 충실히 보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Law 씨는 자신을 자유언론 옹호자라고 칭하면서 "그가 강력히 부인하는 어떤 의견도 Cairns Post사는 자체적으로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게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신문의 거짓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결코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airns Post사는 Law 씨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당신의 신문사가 우리 지역의 고결함과 단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짓정보 게재와 인종주의적 비방 선동을 삼갈 것을 기대한다."라는 한 문장을 지적하면서 그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평의회는 Law 씨 편지의 이 문장이 Law 씨가 부인하는 의견을 게재하지 말라고 신문사에 요구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다. 그것은 우리에게 혜택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는 또한 수많은 인종주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열거했다.

과거에 신문평의회에 유사한 불만을 신청했다고 말한 Dr. Saleam은, Palmer 씨와 그의 조직들 그리고 활동에 관해 게재된 내용에서 신문사는 그 정확성을 점검하지 않았으므로 신문평의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기사내용은 해를 가할 정도로 부정확했고, 또한 불확실한 기사내용을 게재했으며 관련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Dr. Saleam이 그의 불만신청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에는 Palmer와 그의 활동에 대해 기사에서 사용한 것들과 유사한 언어로 묘사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New Idea사는 기사의 목적은 위험집단이 인원확보와 선전을 위한 방법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폐해를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David Palmer와 그의 집단의 인터넷 사용을 거론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신문평의회는 기사내용에서 신문사는 David Palmer에 대한 정보의 출처로서 적절하게 신원을 공개했고, 인터넷이 인종주의자 집단의 인원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는 기사의 주장과 Palmer 씨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

호주사례 3

신청인의 제출자료와 비교해 볼 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는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호주신문평의회는 New Idea사의 3월 23일자 "Debi Marshall의 'Special Report'" 제하의 기사에 대해 Dr. James Saleam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신문사는 National Socialist Defenders Aryan People의 의장이며, KKK단 호주 총회의 "마법사"로 묘사된 David Palmer의 활동과 그의 조직의 신규인원 확충을

위한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해 기사화 했다.

기사는 피난민과 동성애자를 포함해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Palmer 씨의 수많은 선동적인 진술을 게재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는 "그는 또한 신규인원 확보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오마이뉴스 '인터뷰'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27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정간법과 방송법상 허가받은 보도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가 대선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금지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인터뷰 현장을 저지한 행위 역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작년 2월 대선 출마의

사가 있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7명을 대상으로 연쇄 인터뷰를 기획했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며 인터뷰 중지촉구 공문을 보내고 선관위 직원을 보내 인터뷰를 저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2003. 2. 27.

건설업체서 금품 뜯은 특수지 기자 징역 1년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문방진 판사는 21일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기자 이모(47. 전남 무안군 무안읍)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호수 준설공사를 하는 건설회사 대표를 만나 환경오염 문제를 신문에 게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10여 차례에 걸쳐 2천3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남 무안

군 청계면 유당호 준설공사를 수주한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48.여)씨를 만나 '공사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신문에 보도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2천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003. 2. 21.

정통부, < PD수첩 > 상대로 반론보도청구서 내

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디지털TV 전송방식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반론보도심판청구를 법원에 내 16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 법원이 정통부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기관 취재에 있어 서약서 요구가 관례화 될 수 있어 취재활동과 언론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TV, 소비자가 봉인'을 통해 현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을 고수할 경우 유럽식에 비해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0조원이 발생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전송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정통부는 당시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앞서 "인터뷰 내용을 편집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정통부는 이번 청구서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켰고, 정통부에 민원이 폭주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진들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 정책을 검증하는 언론에 각종 제약조건과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신보도지침"

이라며 또 "정부기관이 취재요청 때는 반론에 응하지 않다가 방송 후에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반론권 포기며 이것이 관행화 된다면 국민의 알권리가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반론권 포기라는 MBC 주장에 대해 "인터뷰의 자의적 편집에 의한 사실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완전한 반론권의 요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조봉희 PD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기관에 굴하지 않고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D연합회보, 2003. 1. 15.

호화빌라 구입 명예훼손 소(訴) 김홍일 의원 패소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민주당 김홍일 의원 등이 “LA 호화빌라 구입설”을 유포,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이 ‘김 의원이 대통령 처남 명의로 LA에 호화빌라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 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며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진실확인노력을 한나라당이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의혹을 최초 제기한 LA소재 한인 언론사들의 보도가 취재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점, 특히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에 따른 개연성이 있다면 정확한 논증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문제제기를 해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과장·비약이 포함돼 있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나라당이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LA소재 호화빌라를 대통령 처남 이성호 씨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자 “문제의 빌라는 이씨가 자비 및 은행대출로 산 것으로 나오는 무관하다”며 이씨와 함께 한나라당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문화일보, 2003. 2. 17.

동양일보 조철호대표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인석 판사는 22일 자동차 전용국장 운영권을 따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충청지역 일간지 <동양일보> 조철호

(58) 대표에게 징역 4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대표는 1998년 충북 청원군 문의 자동차극장 사업허가와 터 확보 등을

도와달라는 홍씨의 부탁을 받고 사업 대가로 주식 5500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11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한겨레, 2003. 1. 23.

스포츠지3사, 인터넷사 기사도용' 제소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3개 스포츠지는 7일 “자사의 연예 스포츠 기사와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며 L사 등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스포츠 신문의

연예관련 기사는 취재원 및 취재과정의 특성상 사실보도에 기자의 감정·평가 등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연예인들의 사진은 사진기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개입된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상에 게재된 디지털 콘텐츠는 손쉽게 복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무단도용으로 원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에 큰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 2. 7.

대선후보 비판칼럼은 공식목적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는 6일 한나라당이 “허위 칼럼으로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를 비방했다”며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 정경희(7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대선

이전 자신의 칼럼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해 국세청 모금사건, 빌라 사건 등을 거론한 것은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되나 이는 국가적 영향력이 큰 정당과 대선후보에 관련된 것으로 게재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씨가 지난해 6월 3일자 한겨레 ‘죽비소리’ 칼럼에서 “언론이 국세청 모금사건, 언론사 탈세 비호 등이 후보의 잘못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정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3. 2. 6.

월간조선, '말'지 상대 패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7일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과 관련, 본인을 비하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 우모 기자가 월간 ‘말’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도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의 편향성이 사회적 논쟁대상이 됐었고 ‘말’지는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 기자는 ‘말’지가 지난 98년 12월호 “‘진보인사 죽이기’ 뿌리는 친일 콤

플렉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던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 논쟁과 관련, ‘우 기자에게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며 우 기자의 글에서 살의가 느껴진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2003. 1. 17.

재해방송 비판 보도 손해책임 없어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4일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폭우가 쏟아진 지난 2001년 7월 조선일보 진모 기자가 ‘잠깐 재해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사의 재해방송 보도를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한국방송(KBS)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KBS가 재해의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고 신속히 재해방송을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므로 이것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서울·경기지방에 집중폭우가 내린 지난 2001년 7월 14·15일 재해방송을 담당하 KBS와 MBC가 재해 상황에 비춰 적절히 보도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고 이에 KBS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3. 2. 14.

전북경찰, 새전북신문 상대 손해소 제기

전북 전주북부경찰서(서장 신상채)는 이달 초 ‘경찰관 피살 및 총기 탈취 용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하는 등 강압수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새전북신문을 상대로 19일 전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 북부서는 소장에서 ‘새전북신문의 근거 없는 보도로 경찰서 및 직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 사회부 팀장, 취재기자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억6천만원은 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2명이 500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한 액수다.

이에 대해 새전북신문은 “경찰이 뚜렷한 물증이 없어 용의자들을 살인혐의로 기소도 못하고 있고 용의자 가족들과 변호사를 통해 일부 구타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면서 “소장을 검토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들도 “용의자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들만을 보도했다”면서 “경찰

이 ‘보도로 수사에 지장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새전북신문의 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으나 반론보도 결정이 나자 이를 거부, 이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2003. 2. 19.

‘타워팰리스’ 보도 내일신문 피소

서울 강남구청과 권문용 구청장은 15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내일신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신문사는 아

무런 근거도 없이 지난 13일 “서울 도곡동 삼성타워팰리스 특혜분양 의혹 검찰, 권문용 강남구청장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삼성물산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

았다는 내용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일신문은 “보도내용은 정통한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며 추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03. 1. 15.

신문 PR면에 실린 상품관련 기사는 광고

신문 PR면에 실린 신상품 출시 기사는 실질적으로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21일 신문에 담배광고를 게재한 혐의(국민건강증진법 위반)로 기소된 모 담배회사 직원 서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

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문 PR지면에 실린 상품 기사들은 지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신상품 출시에 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을 뿐 담배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1년 9월 모 스포츠신문에 신제품 담배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2003. 2. 21.

대법 "이념논쟁서 주사파 비뺀 위자표"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KBS '다큐멘터리극장' 연출 PD 남승우 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비방한 월간지 한국논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 당시(94년)로 봐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보수우파 입장에서 KBS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

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역사해석을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전체 기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 위자료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만큼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해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만 위자료 액수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한국논단이 98년 3월호에 자신이 연출한 다큐멘터리극장이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묘사하고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해 분석했다'는 내용을 담은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3. 1. 3.

조선일보 118억 과세 취소소송

조선일보사는 6일 '95년도분 법인세 등 118억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세무서가 지국 직원 모집 광고비 등 판매 부대비용과 퇴직급여 추계액에 근거해 예치한

단체퇴직 보험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2001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과 계열사 대주주 일가에 323억원의 추정세액을 부과하자,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원을 통해 14억원의 감액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사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추가로 감액받을 경우, 탈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이 선고된 방상훈 사장의 양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003. 1. 7.

서태지컴퍼니, 굿데이에 반론보도가처분 신청

연예기획사인 (주)서태지컴퍼니는 31일 “허위사실을 보도,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사업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며 스포츠지 ‘굿데이’에 대해 반론보도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굿데이는 지난

11월 ‘서태지 30억 피소, BMG재팬 이종계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태지가 일본의 음반회사인 (주)BMG재팬으로부터 30억원의 손배소에 휘말렸고 사실상 일본활동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서태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또 “굿데이 보도와 관련, BMG재팬 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서태지는 현재 BMG재팬과 음반 발매시기 등을 조율하며 일본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 12. 31.

위원회소식

2003년도 정기위원총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03년도 정기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위원과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

위원장, 송정제 부위원장, 조용구, 윤 기,
임연택, 이용근, 이연수, 김광옥, 장공자 위원

• 시정권고위원

위원장, 이병훈 부위원장, 이종욱, 이경일,
박영상, 노항기, 김재덕 위원



제16대 대통령선거기사심의 중 13건 처리

제16대 대통령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2002년 8월 21일~2003년 1월 18일) 동안 총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심의 12건과 시정요구 1건 등 모두 13건을 처리하였다. 자체심의 결과 주의 9건, 경고 3건을,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주의 1건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유형으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

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결과 보도요건 미비 5건,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조항 위반 1건이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요구한 시정요구 1건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월간조선에 상대로 시정을 요구한 사건으로 주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위원회 창립 22주년 기념식 개최

위원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3월 31일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위원장은 김일경 기획실 총무팀장, 이재범 중재심의실 심의2팀, 최숙희 강원사무

소 직원에게 유공직원표창을, 여종국 중재심의실 심의1팀 차장, 류석창 대구사무소장, 이진희 대전사무소 직원에게 장기근속상을 각각 수여하고 격려했다.

신임 중재위원 9명 위촉

법원의 인사이동(2월 12일자, 19일자)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위원 후임으로 9명의 위원이 지난 10일 새로 위촉됐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 서울제3중재위원 - 노 항 기 | · 서울제4중재부장 - 신 명 중 |
| · 부 산 중 재 부 장 - 권 오 봉 | · 대 전 중 재 부 장 - 한 상 곤 |
| · 경 기 중 재 부 장 - 조 해 현 | · 강 원 중 재 부 장 - 윤 경 |
| · 충 북 중 재 부 장 - 한 양 석 | · 경 남 중 재 부 장 - 박 성 철 |
| · 제 주 중 재 부 장 - 박 종 문 | |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지난 1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 | | | | |
|---------------|-------|---------------|-------|
| · 기획실장 | 임 병 국 | · 중재심의실장 | 김 용 주 |
| · 기획실 기획팀장 | 오 광 건 | · 기획실 총무팀장 | 김 일 경 |
| · 기획실 조사연구팀장 | 황 정 근 | · 중재심의실 심의1팀장 | 이 진 숙 |
| · 중재심의실 심의2팀장 | 장 원 상 | · 부산사무소장 | 권 우 동 |
| · 광주사무소장 | 조 준 원 | | |

200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지난 1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및 회계규칙 제40조에 의한 '2002년도 하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 감사'가 있었다.

신동식(서울제4중재위원), 최중현(경기중재위원)

감사는 사무처가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와 예산집행자료 등을 근거로 회계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행예산 모두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물품 및 사무실 예치보증금, 퇴직적립금 등 자산도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밝혔다.

2002년도 연차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2002년도 언론중재신청사례 및 시정 권고사례 등을 수록한 『2002년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2년도 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511건의 중재신청사례 및 시정권고 사례, 통계분석, 제16대 대통령선거가사심의 사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박주현 위원,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에 임명

박주현 위원(서울제3중재부)이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에 임명됨에 따라 2월 6일 언론중재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참여수석은 대통령직인수위의 국민참여센터가 해온 국민제안을 기본으로 부정부패 고발, 제도 개선, 국정 모니터 등 국민의 참여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기획하는 일들을 맡는다.

언론중재위원 명단

새로 구성된 각 중재부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는 새로 위촉된 위원)

◇위원장

박 영 식 변호사

◇부위원장

이 병 훈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송 정 제 전 부산일보 사장

◇감사

신 동 식, 최 중 현 위원

◇운영위원

위 원 장, 송 정 제 부위원장, 조 용 구,
윤 기, 임 연 택, 이 용 근, 이 연 수,
김 광 옥, 장 공 자 위원

◇시정권고위원

위 원 장, 이 병 훈 부위원장, 이 중 옥,
이 경 일, 박 영 상, 노 향 기,
김 재 덕 위원

◇서울제1중재부

조 용 구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 용 학 변호사
이 중 옥 전 한겨레 논설위원
최 선 열 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서울제2중재부

손 태 호 서울지법 부장판사
송 선 무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이 경 일 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박 동 섭 변호사
박 영 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제3중재부

윤 재 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최 광 일 전 대한매일 이사
윤 기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양 삼 승 변호사
노 향 기 전 월간 말 발행인

◇서울제4중재부

신 명 중 서울지법 부장판사
신 동 식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이 병 훈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박 용 배 전 한국일보 이사
이 건 웅 변호사

◇서울제5중재부

조 관 행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 재 덕 전 국민일보 부사장
임 연 택 전 KBS 국장
주 동 황 광운대 신방과 교수
조 수 정 변호사

◇부산중재부

권 오 봉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 정 제 전 부산일보 사장
오 장 희 변호사
이 성 해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이 의 자 경성대 신방과 교수

◇대구중재부

최 우 식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 용 근 대구 언론발전연구회 회장
박 기 성 경북대 신방과 교수
김 복 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정 한 영 변호사

◇광주중재부

장 광 환 광주지법 부장판사
허 광 욱 전 전남일보 논설주간
조 재 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이사
이 연 수 전남과학대 방송영상과 교수
곽 준 흙 변호사

◇대전중재부

한 상 곤 대전지법 부장판사
조 균 상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이 문 욱 전 대전광역시 가정복지국장
박 주 봉 변호사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경기중재부

조 해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 건 영 전 경인일보 대표이사
최 중 현 변호사
김 광 욱 수원대 신방과 교수
김 혜 숙 아주대 교수

◇강원중재부

윤 경 춘천지법 부장판사

한 영 달 전 강원도민일보 전무

김 중 식 변호사
지 규 현 전 춘천MBC 상무
부 경 희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충북중재부

한 양 석 청주지법 부장판사
우 중 인 전 청주MBC 보도국장
오 두 범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장 공 자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재 중 변호사

◇전북중재부

정 창 남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 영 조 전 전라북도 새마을 부녀회장
송 기 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장 협 변호사
신 환 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경남중재부

박 성 철 창원지법 부장판사
장 권 현 변호사
임 경 숙 전 대한YWCA 동부지역 위원장
박 춘 서 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이 병 섭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제주중재부

박 종 문 제주지법 부장판사
신 용 준 전 한라대학 학장
강 정 홍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현 순 도 변호사
한 립 화 제주대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방송위원회, 『(2003년)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 심의백서』,
방송위원회, 2003.
안병길, 『시민 속의 언론 공공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
스, 2003.
한국언론재단 편, 『언론수용자의식조사2002』, 한국언론재
단, 2002.
탐 덕승, 『전환기의 미디어 교육』, 나남, 2002.

강미은, “인터넷 위력 가시화, 매체의 세대교체 이뤄”,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강태영,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언론과 법』, 창간호,
2002.
김경호,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 침해”, 『언론
과 법』, 창간호, 2002.
김관명, “연예오락 뉴스와 폭로 선정주의”,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김광범, “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무현
정부와 언론정책 - 방송개혁〉,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개최 토론회, 2003. 1. 24.
김기태, “지방자치시대 언론과 취재원과의 바람직한 역
할 모색”, 『기자통신』, 2003년 1월호.
김동민, “다시 서는 방송위원회·위원 구성 어떻게 할 것
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위원회 노동
조합 개최 토론회, 2003. 1. 23.
김서중, “언론윤리, 구체적인 윤리강령에 엄격히 법 집행
해야”, 『신문과 방송』, 2002년 1월호.
김영욱, “미디어정책 수단으로서의 정간법과 정간법 개
정”,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언론
발전연구회 개최 토론회, 2003. 2. 20.
김은주, “16대 대선 신문보도 모니터”, 〈대선 보도 이대로
좋은가〉, 2002 대선미디어공정선거국민연대 선
거보도감시위원회 개최 토론회, 2003. 1. 16.
김재영, “인터넷 미디어, 새 숲은 새 부대에”, 『열린 미디

어 열린 사회』, 2002년 겨울호.
김재영, “인터넷언론 : 위상강화 위한 법제화 필요”, 『신
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김재형, “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방법”, 『신문과 방송』,
2002년 3월호.
김재형, “인용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과 방송』,
2002년 1월호.
김재형,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김종철, “인터넷 매체 법제화 시급”, 『기자통신』, 2003년 2
월호.
김지연, “여론조사조사거절 · 응답유보충 영향 적어 예측
결과 정확”,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김진웅, “매체간 균형발전에 관한 소고”, 『방송문화』, 2003
년 1월호.
김창룡, “지방언론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신문시장의 정
상화와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개최 토론회, 2003. 3. 7.
김창룡, “대통령 선거와 외신보도”, 『기자통신』, 2003년 1
월호.
김춘식, “정치광고부정적 캠페인보다 이미지 홍보가 공
감 얻어”,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김택수,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언론중
재』, 2002년 겨울호.
김평호, “방송의 공공성 강화방안”, 〈노무현 정부와 언론
정책 - 방송개혁〉,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개
최 토론회, 2003. 1. 24.
김형기, “사건기사와 폭로”,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박용상, “표현의 자유와 음란규제 및 청소년보호”, 『헌법
논총』, 제13집, 2002.
백선거, “16대 대선과 미디어, TV와 여론조사가 주도, 금
권 관련 악화”,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신명제, “정치보도의 음모론과 폭로”, 『관훈저널』, 2002년

- 겨울호.
- 심재철, “폭로 저널리즘의 빛과 그림자”,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자”, 『열린 미디어 열린 사회』, 2002년 겨울호.
- 양문석, “한국언론의 칼럼 인용보도”, 『기자통신』, 2003년 2월호.
- 양승찬, “16대 대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로 본 언론”, 〈16대 대선 미디어 영향력 변화와 매체별 발전 전략〉,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인터넷신문협회, 한국언론법학회 공동개최 토론회, 2003. 2. 6.
- 윤석홍,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보도 평가”,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 윤재운, “사실보도와 논평의 자유”, 『기자통신』, 2003년 2월호.
- 윤재운, “언론분쟁의 쟁송절차”, 『기자통신』 2002년 12월호.
- 윤재운, “인간의 말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기자통신』, 2003년 1월호.
- 이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미디어 선거”,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 이송지혜, “16대 대선 방송보도 모니터”, 〈대선 보도 이대로 좋은가〉, 2002 대선미디어공정선거국민연대 선거보도감시위원회 개최 토론회, 2003. 1. 16.
- 이영종, “국의 걸린 엠바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문과 방송』, 2002년 3월호.
- 이유현, “연예부 기자가 바라본 연예저널리즘”,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 이재진, “인터넷법제, 언론매체 인정, 사법 관할권이 쟁점”, 『신문과 방송』, 2002년 1월호.
- 이준웅, “신문, 신뢰부족으로 오히려 영향력 축소”,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 이화행, “독일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 ZDF의 온라인 저널리즘”, 『한국언론학보』, 2002년 겨울호(46-6).
- 장호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 〈지역언론 활성화 대안은 없는가?〉, 한국기자협회, 대전충남기자협회 개최 토론회, 2002. 12. 23.
- 정대철, “방송, 중심 역할 했지만 국민 입장은 빠져”,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
- 정대철, “제16대 대통령후보초청 합동토론회 평가와 과제”, 『방송문화』, 2003년 1월호.
- 정연규, “국제보도 현실과 처방”,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 조준원, “‘역사적 사실’ 보도와 인격권 침해 논란”, 『방송문화』, 2003년 2월호.
- 조준원, “반론보도청구의 예외사유관련 판결”, 『방송문화』, 2003년 1월호.
- 조준원, “초상의 승낙 범위와 관련한 판결”, 『방송문화』, 2002년 12월호.
- 차용범, “연예기사의 익명보도와 실명보도”,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 최경진, “지방언론 활성화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제언”,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개최 토론회, 2003. 3. 7.
- 최 영, “온라인신문에서의 시민저널리즘 가능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2년 겨울호(46-6).
- 한수웅, “헌법상의 인격권-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하여-”, 『헌법논총』, 제13집, 2002.
- 한영학,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④-인권옹호법안의 정립과 언론”, 『언론중재』, 2002년 겨울호.
- 허행량, “폭로 저널리즘과 상업주의”,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

On-Line 중재상당실



이런 기사는...

안녕하십니까? 일반국민들이 신문기자를 혼자 상대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면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속담이 생 각나는군요.

OO신문 기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지는 3개월 전쯤의 일로 생각 됩니다. 분명히 저는 상한 음식을 폐기 처분하였 는데, 상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 먹게 했다는 제 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 고 아니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기 자는 갑자기 방문하여 약 1분간 몇 마디만 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보 사실과 실제 상황은 달랐지만 제보자의 말만 믿으려고 할 뿐 저의 말 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제보자와 대면을 해보자고 제의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사 말처럼 제보자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이지요.

만약 기사가 보도될 경우 일일이 당사자들에게 해명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피해는 엄청날 것입 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였지 만 보도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만약 기사가 난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제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전에 기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사가 날 경우 사실과 관계없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입 니다.

기자의 행동과 말로 보아 제보자는 보수 문제 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종업원으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누구인지 물어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일로 온 가족은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 올린 정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 다. 좋은 방법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질문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립니다.

1.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직 신 문에 보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인 듯 합니 다. 만일 피해가 예상되는 보도를 미리 막 고자 한다면 법원에 해당 신문의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이며, 저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 보도된 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사 실과 다른 내용이 분명하거나 한쪽의 일방 적인 주장만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저 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언론중 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중재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 외에도 법원에 민·형사상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소송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 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제보자에 대 해 확인가능한지 등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판과정에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로 인한 피해

OO방송사의 광고 방송 하프플라자에 의해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방송으로 하프플라자의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하프플라자가 두 달도 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서 있습니다. 믿고 보고 있는 TV방송 광고에서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의 광고를 실어 방송함으로써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하였고.

지금 하프플라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사에서 광고를 내보낼 때 소비자 또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광고를 내 보내 달라는 요청만으로 돈을 받고 광고를 했으므로 같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고의 내용은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희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광고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공정거래위원회(504-416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6360-6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

2월 8일 방송된 OO프로그램 '로도 복권 인생역전 가능한가?'라는 방송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금요일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귀가 도중 복권방이 열려 있어 전주에 당첨된 복권을 교환하러 들어갔었는데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들어와 일련번구의 말도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람들을 찍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웠지만,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저를 찍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복권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출근하니 갑작스럽게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 방송사 OO프로그램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회사의 고객사는 물론 회사직원, 친구들에게 하루종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요즘 사업이 어려우냐? 그래서 복권 동호회에 가입한거냐?", "너 복권에 환장했냐." 등등. 방송을 보지 못한 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모 자이크 처리는 고사하고 제 얼굴이 클로즈업된 채 한곳을 주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안타까운 눈빛으로..." 등 마치 제가 복권에 환장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인양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막 시작한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입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저의 사회적인 명예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송에 얼굴을 내보내려면 본인의 동의는 물론 촬영 전 프로그램의 의도, 방영시간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촬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불법을 자행해가면서 무슨 시사고발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담당 PD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의하신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립니다.

1. 보도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본인의 초상을 보도내용과 연관시켜 방송한 것으로 인한 피해

이것은 보도내용과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귀하께서는 단지 지난주 당첨된 복권을 교환하러 갔을 뿐인데도 마치 귀하께서 복권열풍의 희생자인 것처럼 보도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십시오.

2. 본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촬영, 보도된 것으로 인한 피해

해당 방송사에서 귀하의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역시 동의가 없음에도 보도를 내보냈다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 자체는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법

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방송사에 대한 사과요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시는 내용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혹은 추후보도로서, 사과보도는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재를 신청하시는 분은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언론사가 이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중재위원회의 직권으로 언론사가 사과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보도를 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89헌마160 결정)이 있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 바랍니다.



부동산관련 허위기사에 관하여

○○일보 2월 12일자 E11면 부동산 관련 기사 중에 재건축 사업승인 아파트의 예상 추가 부담금이 나와있습니다. '조합예산치'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조합 측에서는 그런 수치를 예상한 적도 없고 기사를 쓴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제는 신문의 특성상 신문을 본 대다수의 조합원 및 일반인들이 마치 그것이 정해진 부담금으로 알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이 아직 어떠한 윤곽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신문에 보도가 되면 나중에 추가 부담금 확정시에 신문보도 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격렬한 항의가 예상되어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할 수 있어 결국 조합원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허위 기사를 쓴 기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지요.



해당 조합이 부담금 수치를 예상하여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합예산치'라고 보도되었다면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나 기자 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십시오.



피해를 호소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신문사 기자라는 분이 제게 전화로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신문에 저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저의 이름, 근무처, 나이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기재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기자가 타인에 대하여 기사화 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을 득한 후에 기사를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저는 근무처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 자신의 명예 회복과 보도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 등 상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정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귀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기사화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해당 매체가 대구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므로 저희 위원회 대구중재부에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님께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하여 발생한 피해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닌 보도과정의 문제이므로 저희 위원회가 직접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회 대구중재부(053-763-0020)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17일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3명의 우리 시청 노조 임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서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잇단 불법시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3명 구속"이라는 내용 아래 실명, 나이 및 소속 등을 거론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죄인 취급하듯 발표하고 실명 등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가 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도에 나온 분들이 '잇단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에서 밝힌 혐의사항만을 근거로 보도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보도되었으나, 무죄 또는 무혐의로 확정되어 혐의를 벗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무죄 또는 무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의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제외한 다른 사항(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보도를 한 것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저희 위원회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황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국 중 하나인 000가 적절한 확인도 없이 한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월 17일 방송분 중에 전학을 많이 갔다는 이유로 저희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참 억울합니다. 아무리 오락방송이지만 적절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해 저희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했습니다.

지금은 수능시험을 본 03학번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그런 부적절한 방송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저희 학교를 지원한 학생

들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적어봅니다. 그럼 조속히 답변 바랍니다



문제가 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전학을 많이 갔다는 이유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이 사실과 다른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학교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가 방송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3219-5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양해 없이 제 글을 독자투고에 실었습니다**

지방 모 신문사에서 제가 인터넷 특정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사전 양해(연락) 없이 독자투고란에 게재했습니다. 신문에 실렸다는 말을 듣고 제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 신문사에서는 독자투고란을 이런 식으로 채우는 지.

제가 실명으로 직장과 이름까지 밝힌 글이고, 신문에 직장과 이름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독자투고란은 글쓴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무 글이나 가져와서 실어도 되는 것입니까? 글 실어 줬으니까 고마워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지방신문사의 구시대적이고 안일한 비인격적 처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신문사의 일방적인 기사화가 바르고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고, 신문사로부터 어떤 해명을 들어야 할 지도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므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십시오.



기사 정정 요구

〇〇〇방송 12월 24일 뉴스 프로그램의 한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12월 24일 시청 앞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미선이 효순이 추모예배'로 보도를 했더군요. 시청 앞에서 있었던 이번 성탄예배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뜻에서 열린 성탄예배(!!!)였습니다. 그런 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자 피켓을 들고 명동으로 행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탄예배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알리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의도로 왜곡해서 방송한 사실에 화가 납니다.

시청 앞에서의 성탄예배와 추모촛불시위는 별개의 것이었는데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집회장면을 하나의 집회 장면으로 합쳐놓고선 '미선이 효순이 추모행렬'로 보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미선이 효순이 추모행사'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선이 효순이 추모행사'가 중요한 만큼이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 "성탄예배"도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고, 사실이 알려지기는커녕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행사의 취지와 내용이 잘못 보도되었다면 주최자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행사에 참석했던 개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곤란하며, 주최측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보도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사내용의 오보에 관해서

저는 서울 L피부과에서 근무 후 최근 6월말에 대구에서 〇〇〇〇피부과로 개업한 피부과 원장입니다. 〇〇〇〇 12월 16일 월요일자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1면 탑 기사로 보도된 '탈런트 C군의 성형수술 악몽'이란 기사내용에 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글을 올립니다.

이 글에서 해당 기사는 단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C

모 군의 주장만을 듣고서, 일방적으로 사실 여부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감히 신문이라는 공적인 매체에 무단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아무리 현대가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여도, 일방적인 개인의 의견만을 듣고서 아무 스스로없이, 또한 사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도 않은 기사를 함부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같은 피해를 겪는 억울한 대한민국의 시민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나아가 저희 의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행위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S피부과, S원장으로 보도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개업 당시 서울 L피부과 경력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유일한 병원으로 우리 병원의 선전문구를 한번이라도 본 사람이거나, 병원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든지, 저와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기사를 모두 알고 보고 전화나 문의가 쇄도해서 병원진료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탈런트 C군은 원래 있던 악성의 고질적인 기미로 서울 L피부과에서 계속 치료받던 중 본인이 해당 병원에서 재직 시 알게 된 환자입니다. 그 후 최근 떠오르고 있는 고가 최신 기미 치료기기(시가 2억 정도)인 아이피엘 치료가 고가(1회 100만원)인 관계로, 서울서 받지 못하고, 진분을 가장하면서 대구까지 내려와서 치료를 부탁하여 무료로 시술해주었습니다.

원래 5~6회의 치료가 필요하나 1~2회 치료로도 좋아지는 환자가 있어, 대구까지 찾아온 성의를 생각해서 무료로 시술해준 환자입니다. 이 기미치료를 그 특성상, 치료과정 중 간혹 기미가 좀더 짙어지는 수도 있으나, 여러번 시술로 결국은 탁월한 치료가 되는 최신기법입니다.

현재 환자는 최근 10월 26일까지 2회에 걸쳐 아이피엘 치료를 무료로 시술 받은 환자로 시술 후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려 그 후 관리에 대해선 다른 피부과를 방문치 않아 확인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시술 14일 후 기미가 더 짙어졌다는 말에 시술 후의 과색소침착상태로 보이니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 비타민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환자는 병원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피부관리소를 전전한 것으로 압니다.

몇 번을 내려오라고 한끝에 12월 초 내려왔을 때 좀

더 짙어진 상태를 보였지만, 비타민흡케어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치료과정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다른 병원의 아이피엘 치료 후기를 모두 모아 보여줬습니다. 환자는 감사하다며 올라가면서 더 이상 신세를 안 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연기자 노조라는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또 아는 기자가 도와주려고 기사화 하려는 걸 자신이 극구 말리고 있는데 힘이 든다고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저는 평소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치 않고 그냥 하소연하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이용하고, 선의를 악으로 갚는 행위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 말만 들으라고 했지만 공갈, 협박의 의도로서 기사화 되어버렸습니다. 불에 구멍이 났다는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 1면에 제일 크게 보도되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적, 물질 손해가 큰 상태입니다.

정정이나 시정보도가 저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올바른 중재신청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R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신문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병원(장)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정정 및 반론의 범위를 벗어난 사과보도 게재는 원칙적으로 저희 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실제 신문지면에 보도된 내용에 한해서 중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십시오.

Q 광고를 통한 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저는 사회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직 회장이 자신의 불명예 사임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저에 대한 공연한 사실들(허위사실 또는 불분명한 표현 등)을 광고문구로 하여 우리업계의 전문지(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잡

지사는 본인 및 우리 단체에 대한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광고의 경우 귀 위원회의 중재대상인지, 잡지사에는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보도)에 의해 입은 피해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관입니다. 광고의 내용은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잘못된 기사 바로잡을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내용 중에 베이비 사진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아이 돌사진 때문에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쥬제 나온 기자가 우리아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나오는지 물었더니 안나온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문에 사진이랑 기사가 나왔더군요. 근데 그 기사라는 것이 정말 황당한 내용이더군요. 200만원짜리 앨범이며, 아기모델 시키려는 엄마의 치맛바람이라는 등 정말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전 여기저기 전화로 해명을 해야했고 주위에서 아기모델 시키려 혈안이 되어있는 엄마로 낙인찍혔습니다. 항의를 했더니 인터넷 기사만을 삭제했어요. 오늘 저녁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본 사람들은 다들 기사내용처럼 우리를 생각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더군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재위원회에 보도내용과 아기의 사진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아기의 사진을 부모의 동의 없이 신문에 게재한 행위 자체는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

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합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

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함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을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

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

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①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 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Netscape: 언론중재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로 앞으로 다시 읽기 홈 검색 안내 이미지 인쇄 보안 중지

찾아가기: <http://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정정보도)
상담: (02)725-005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